

한말 수원
민사판결문 Ⅱ

SRI 수원시정연구원
1908~1910 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차례

136	염정鹽井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1월 7일 남양·남양	06
137	매장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8년 1월 17일 수원·수원	09
138	증표를 작성하고 차용한 돈에 관한 건 1908년 1월 20일 수원·안산	12
139	매장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8년 1월 23일 수원·용인	16
140	매장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8년 1월 29일 수원·수원	20
141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8년 1월 31일 수원·남양	24
142	송추松楸 환퇴還退에 관한 건 1908년 2월 15일 수원·한성	28
143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908년 3월 23일 수원·한성	31
144	투장偷葬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8년 4월 16일 수원·인천	36
145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8년 4월 29일 수원·수원	39
146	산송山訟 금장禁葬에 관한 건 1908년 4월 29일 남양·남양	44
147	배값[船價]에 관한 건 1908년 5월 7일 남양·수원	48
148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8년 5월 14일 수원·수원	52
149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8년 5월 14일 수원·수원	57
150	송추松楸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5월 14일 수원·경성	61
151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8년 7월 7일 수원·수원	66
152	매장 무덤[葬塚] 이장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7월 8일 인천·수원	73
153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7월 20일 수원·수원	76
154	송추松楸 범작犯斫에 관한 건 1908년 7월 25일 수원·수원	80
155	물건값[物價]에 관한 건 1908년 7월 30일 수원·용인	83
156	상품 대가代價에 관한 건 1908년 7월 31일 수원·수원	87
157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908년 7월 31일 한성·수원	90

차례

158 토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1908년 6월 1일 남양-고양	93	182 지단값(地段價金)에 관한 건 1909년 4월 10일 한성-수원	205
159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8년 9월 30일 수원-수원	97	183 사기로 빼앗긴 돈의 반환에 관한 건 1909년 4월 13일 수원-한성	209
160 소나무값(松楸價)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10월 6일 수원-수원	103	184 매장 무덤(入塚) 이장(掘移)에 관한 건 1909년 4월 17일 공주-수원	216
161 가옥 임대료(家賃) 청구에 관한 건 1908년 수원-한성	109	185 대여금 및 손해금에 관한 건 1909년 4월 29일 덕산-수원	222
162 중선(中船) 인도에 관한 건 1908년 10월 18일 수원-남양	112	186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6월 4일 수원-진위	228
163 상품 대가(代價)에 관한 건 1908년 10월 26일 수원-용인	118	187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6월 10일 인천-남양	232
164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8년 10월 31일 수원-용인	123	188 가옥 임대료(家賃)에 관한 건 1909년 6월 23일 인천-수원	237
165 송추(松楸)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11월 10일 한성-수원	128	189 가옥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6월 30일 한성-수원	240
166 담보 의무 이행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11월 17일 수원-수원	134	190 채무 이행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7월 8일 수원-남양	245
167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8년 12월 1일 수원-용인	138	191 외상 대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인천-수원	249
168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8년 12월 4일 남양-남양	143	192 약정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7월 14일 인천-수원	252
169 상품 대가(代價)에 관한 건 1908년 12월 14일 수원-용인	146	193 취하금(取下金) 계산 잔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7월 14일 수원-인천	261
170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8년 12월 14일 죽산-수원	151	194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7월 27일 수원-경성	266
171 중선(中船) 인도에 관한 건 1908년 12월 15일 수원-남양	155	195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8월 28일 수원-수원	270
172 담보 의무 이행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12월 17일 수원-수원	158	196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8월 31일 남양-남양	274
173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8년 12월 19일 수원-수원	163	197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9월 1일 수원-수원	279
174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8년 12월 26일 수원-수원	168	198 분묘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9년 9월 15일 남양-양성	283
175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9년 1월 28일 수원-천안	172	199 토지 대금 반환에 관한 건 1909년 9월 16일 수원-인천	288
176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9년 2월 9일 수원-수원	177	200 산관(山坂) 소유권 확인 및 손해 배상에 관한 건 1909년 9월 21일 수원-수원	292
177 입장총(入葬塚)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9년 3월 10일 수원-공주	182	201 약정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9월 27일 수원-인천	297
178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9년 3월 11일 죽산-수원	186	202 어선 등 인도에 관한 건 1909년 10월 23일 수원-통진	311
179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9년 3월 27일 용인-수원	191	203 가옥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12월 3일 한성-수원	315
180 대여금 및 손해 배상에 관한 건 1909년 4월 6일 덕산-수원	196	204 취하금(取下金) 계산 잔금 청구에 관한 건 1910년 1월 26일 수원-인천	321
181 해세(海稅) 손해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4월 9일 수원-한성	199		



염정^{鹽井} 소송에 관한 건

1908년 1월 7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1호

남양군^{南陽郡} 우정면^{雨井面} 1동^{一洞} 거주
원고 이덕수^{李德守} 대인인^{代理人} 이윤규^{李胤奎}

남양군^{南陽郡} 우정면^{雨井面} 동리^{同里} 거주
피고 박검동^{朴黔同}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卜}과 증사^{證查}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은 “저의 형 이덕삼^{李德三}이 피고의 아버지인 박경우^{朴敬友}에게 받아야 할 당오전^{當錢} 1,360냥^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경에 피고의 아버지가 소유한 염정^{鹽井}*을 돈으로 값을 계산하여 문권을 작성하여 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형이 올해 3월경에 불

* 염정^(鹽井) : 소금을 만들 바닷물을 모아 두는 염전^(鹽田)의 웅덩이, 또는 자염법^(煮鹽法)에서 바닷물을 에벌^(埃) 고아서 담아 두는 곳이다.

행하게도 죽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도 10월경에 작고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염정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방매^{放賣}하고자 하니 피고가 억지를 부리며 남양군^{南陽郡}에 거소^{舉訴}하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제가 패소하였기에 이렇게 상소^{申訴}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참고하고 우정면^{雨井面}의 보고를 열람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피고의 아버지가 동생의 빚을 대신하여 징수당하는 일을 면하고자하여 방매문권을 적당히 변통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임은 증인^{證人} 심덕재^{沈德哉}의 진술에서도 명확하다. 또 원고의 형이 진실로 매득하였다면 한치형^{韓致亨}에게 전매^{轉賣}할 때에는 어찌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질책한 말로 인하여 환퇴를 당하였는가? 그리고 피고의 아버지가 장차 죽어갈 때에 집강^{執綱}**을 대면하고 은밀한 말로 ‘염정! 염정!’이라고 한 것은, 임중할 때에 한을 품은 말을 확실하게 목격하는 것이다. 피고가 소지한 건기^{件記}***를 취하여 살펴보니 돈을 모두 받아 빚을 면하였는데도, 염정을 빼앗고자 한 것은 원고의 소행이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 남양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남양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8년 1월 7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一號

南陽郡 雨井面 一洞 居

** 집강^(執綱) : 조선시대 향약^(鄉約)에서 주현^(州縣) 밑에 있었던 면^(面), 방^(坊), 사^(社)의 소규모 동약^(洞約), 동계^(洞界)의 장^(長)이다. 또는 면^(面)·리^(里)의 행정사무를 맡아 보던 면장^(面長)·이장^(里長)을 일컫는다.

*** 건기^(件記) : 이두식^(李斗錫) 표현으로 ‘발기^(件記)’라 한다. 어떠한 일에 사용되는 물건의 이름과 수량을 죽^(竹) 벌여 적은 문서를 말한다. 또는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벌여 적은 문서이다. 유의어는 발기^(發記)·撥記이다.

原告 李德守 代言人 李胤奎

同郡 同面 同里 居

被告 朴黔同

判決要旨

原告에 申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卞과 證查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에 陳供은 矣兄李德三이 有所捧當錢一千三百六十兩於被告之父朴敬友하야 昨年四月分에 以被告父所有鹽井으로 以其錢計價成券買得矣러니 矣兄은 今年三月分에 不幸身死하고 被告父는 十月分에 亦爲作故이온바 該鹽井을 今欲放賣於他人則 被告가 生臆舉訴於南陽郡하야 抑冤見屈이옵기 至此申訴라 하나 參互衆供하고 考閱面報 則被告之父가 欲免弟債之替徵하야 放賣文券을 從權假成하 證人沈德哉에 所供이 確的하고 且原告에 兄이 眞若買得이 면 韓致亨處轉賣時 胡因被告父之詰言而見退이며 被告父가 將死時 對執綱而微言鹽井鹽井云者는 確目臨終抱恨之言이고 取閱被告에 所持件記 則債免盡捧이거늘 欲奪鹽井코자함은 原告에 所爲가 萬萬無理하리라 本郡判決이 妥當하기로 繳還該郡하노라

隆熙元年 一月 七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1908년 1월 17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수원군水原郡 숙성면宿城面 겸당리謙堂里 거주

원고 정범기鄭範基

수원군水原郡 숙성면宿城面 대죽동大竹洞 거주

피고 조문희趙文熙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卞)과 증권(證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선산(先山)이 숙성면(宿城面) 겸당리(謙堂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01년에 저의 4촌 정택기(鄭宅記)가 종손으로서 뒷자리(曠地) 하나를 방매(放賣)하였습니다. 피고가 저의 6·7대조 무덤의 압뇌(壓腦)에 입장(入葬)하여 시간 간격을 두어 거소(擧訴)하였으나 판결

*압뇌(壓腦) : 뇌 부분을 누른다는 뜻으로, 남의 묘 뒤쪽, 또는 그곳 가까이에서 다시 묘를 썼을 때 일컫는 말이다.

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피고의 친척 조덕재趙德在가 또 투장
偷葬하였으므로 그 자리에서 금지시키고, 피고의 무덤을 그대로 사굴私掘**
한 후에 수원군水原郡에 나아가 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원군)에서 심
사審査한 후에 피고의 무덤을 그 땅에 다시 입장하라는 뜻으로 판결하였
기에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상소하였습니다.”라고 하
였다.

중손 정택기가 방해한 문권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지 지금까지 오래되었
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수원군의 재판정에서 대질하고 조사할 때에 정택
기 역시 방해하여 문권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조덕
재의 투장과 연결시켜서 지금 갑자기 사굴하는 것이 매우 이치에 맞지 않
다. 피고의 사굴 당한 무덤을 그 땅에 다시 입장하는 것은 수원군의 판결
이 타당하기에 수원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8년 1월 17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水原郡 宿城面 謙堂里 居

原告 鄭範基

同郡 同面 大竹洞 居

** 사굴(私掘) : 남의 무덤을 허가(許可) 없이 함부로 파내는 것을 말한다. 사굴은 전통시대부터 엄하게 다
스렸는데, 당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에 의하면 “人的 塚을 私掘하여 棺槨에 未至한 者는 懲役1
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者 屍를 露한 者는 懲役3年이며 棺을 開하여 屍를 露하거나 屍骸를 棄毀或藏匿
한 者는 懲役10年이며 屍骸를 遺失或混雜한 者는 懲役終身에 處호되 步限外에나 自來同山守護호듯 墳塚
을 私掘한 者는 各히 一等을 加호고 該塚은 還封함이다.”고 하였다.

被告 趙文熙

判決要旨

原告의 伸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한 事 訴訟
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券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原告의 陳供은
矣先山이 在於本面謙堂里이온바 去辛丑年에 矣四寸宅基가 以宗孫으로
放賣一曠地호야 被告가 入葬於矣六七代祖塚壓腦이옴기 間有舉訴이오나
未得歸決이옴더니 本年十月에 被告族人趙德在가 又爲偷葬 故로 卽地禁
止호옴고 被告塚을 仍爲私掘後 就告于本郡이옴더니 審査之後에 被告塚을
還葬其地호일 意로 判決이옴기 不勝冤抑호야 有此伸訴라호나 其宗孫鄭宅基
의 放賣호인 文券이 自在호야 今爲年久뿐더러 已於郡庭質查에 宅基가 亦以
放賣成券으로 納供이 分明인디 趙德在偷葬에 夤緣호야 今忽私掘이 極涉
無理라 被告의 被掘塚을 還葬其地호은 郡決妥當이호기 繳還該郡호노라

隆熙二年 一月 十七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1908년 1월 20 수원-안산

역문

판결서 제4호

수원군水原郡 군내郡內 보시동普施洞 거주

원고 차동린車東麟 대인인代言人 차기형車機衡

안산군安山郡 와리면瓦里面 시우동時雨洞 거주

피고 홍군선洪君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폐기廢棄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증서[標]를 작성하고 빌려 썼던 당오전[當枵]* 10,000냥兩을 이식조례利殖條例의 1년간 4할에 의거하여** 빌려 쓴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와 본전을 모두 계산하여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당평(當坪) : 당오전(當五錢)으로 치는 섯평 즉 당오평(當五坪)을 말한다. 당오평은 고종 때 발행한 당오전의 가치가 떨어져 엽전 1냥과 당오전 5냥을 같은으로 셈하게 된 계산을 의미한다.

** 1906년(광무 10) 9월에 법률 제5호로 반포된 「이식규례(利息規例)」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계약상 이자는 1년에 10분의 4로 하였고, 계약이 없는 경우의 이자는 1년에 10분의 2로 하였다. 또한 이자의 총액은 원금의 액수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였으며, 이자를 원금의 액수에 포함시키는 것도 금지하였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과 증서[標證]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음력 올해 2월에 한금삼韓今三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수원군水原郡 읍내의 차동린車東麟에게 빚을 얻기로 했다.’고 하며 함께 찾으러 가자고 요청하기에, 한금삼의 말대로 함께 가서 당오전[當枵] 10,000냥을 5푼의 이자로 빚을 얻었습니다. 한금삼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미 여기에 왔으니, 채용증서[價票]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그 표지標紙를 작성해 주었기에 제가 과연 서압署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돈으로 한금삼의 형 한선오韓善五가 손치수孫致守, 김천일金千一 등과 함께 조기[石魚] 잡을 중선中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가져다 쓰고, 조기를 그물로 잡아서 경강京江에 발송하여 방매放賣한 돈이 10,900냥입니다. 그런데 손치수가 모두 가지고 갔기에, 제가 차동린의 전평錢坪을 어떻게 구획區劃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치삼이 말하기를 ‘해당 돈은 바로 한선오가 출자出資한 것이지만 나 또한 출자한 것이 있다.’라고 하여 원고에게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산군安山郡에서 한선오와 손치수가 함께 대질對質한 후에 한선오가 맡아서 빚을 갚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초에 원고가 빚을 놓은 것은 피고의 증표로서 확신한 것인데, 해당 돈을 한선오가 설령 모두 가져다가 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債務者は 곧 피고이니, 한선오가 가져다 쓴 여부는 실로 채권자債權者가 알 바는 아니다. 해당 돈 10,000냥을 이식조례利殖條例에 의거하여 4푼[分]의 이자로 계산해서 피고가 즉시 빚을 갚는 것이 정당하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1908년 1월 20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四號

水原郡 郡內 普施洞 居
原告 車東麟 代言人 車璣衡

安山郡 瓦里面 時雨洞 居
被告 洪君先

判決要旨

第一審判決은 廢棄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成標價用호 當秤一萬兩을 利殖條例一年間十分四에 比准호야 自價用日노 完濟日까지 并利本計算辦償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標證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의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陰曆本年二月에 韓今三이 言於矣身曰 吾爲得價於水原郡邑內車東麟處라호며 要以同往推尋이옵기 依所言同往호야 當錢一萬兩을 以五分邊得債이온바 韓今三曰 君旣來此호니 君須成給債標가 可也라 호며 原告가 書其標紙이옵기 矣身이 果爲署押이오나 該錢則 韓今三의 兄善五가 與孫致守金千一等으로 設石魚中船 故로 盡數取用호고 及其綱取石魚호야 發送京江而放賣錢이 爲一萬九百兩이온디 孫致守沒數持去이옵기 矣身言以車東麟錢秤을 何以區劃則 孫致三曰 該錢은 是韓善五의 出資나 吾亦有出資라호야 原告債錢을 尙未得報償이옵더니 安山郡에서 韓善五와 孫致守로 同爲對質後 韓善五의 擔着備報로 得蒙判決이라호나 當初原告의 放債는 以被告證標로 爲確信者어늘 該錢을 韓善五가 設有韓取以用이라도 債務者는 卽被告인즉 韓善五의 取用與否는 實非債權者에 所知니 該錢一萬兩을 依利殖條例호야 以四分邊으로 計算호야 被告가 卽爲備報호미 正當호지라 是로 以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隆熙二年 一月 二十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1908년 1월 23일 수원-용인

역문

판결서 제5호

수원군水原郡 가사면佳士面 안중리安仲里 거주

원고 정겸수鄭謙秀

용인군龍仁郡 상동면上東面 덕성동德成洞 거주

피고 정운상鄭雲祥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伸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卜)과 증명서와 구천리면九川里面의 보고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지난 1900년 경에 아내를 양성군陽城郡 구천리면 성현城峴에 과장過葬*하였습니다. 해당 산록山麓은 이李·정鄭·박박·오오·김金씨가 서로 입장入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선산의 뇌후腦後라고 칭하고 연이어 굴이掘移를 독촉

*과장(過葬) : ① 일정한 기일(期日)이 지난 뒤에 장사(葬事)를 지내거나 그 장사를 의미한다. 계급(階級) 신분(身分)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져 있다 ② 경제적인 이유로 일정한 기일을 넘겨 지내는 장례이다.

하였습니다. 그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굴이하겠다는 증서(標)를 작성해 주고 여러 차례 기한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이 결국 피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굴이하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음력 10월에 피고가 양성군에 거소舉訴하여 양성군에서 도형圖形하고 직간摘奸한 후에 이장移葬하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형세상 부득이 내년 봄에 이장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올해 봄에 이르러서 피고가 또 거소하여 양성군에서 저에게 초체招帖**를 발송하였습니다. 마침 사고事故가 있어서 때맞추어 나아가 대질하지 못했더니, 양성군에서 결석 판결하고 저의 아내 무덤을 관에서 굴이하라고 하였으니, 일이 매우 억울하고 원통합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산이 진실로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면 굴이하겠다는 증서를 애초에 왜 작성해 준 것인가? 그간 여러 차례 편지에서조차 역시 굴이하여 사죄謝罪하겠다고 말한 것이 분명하다. 또 굴이하겠다고 양성군의 재판정에서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초체를 (발송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있다고 빙자하며 그대로 변론하는 데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결석판결에 이른 것이 이치가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저절로 결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산이 피고의 선산인 것은 산이 소재한 마을의 이장과 연로한 동민의 증명서에서도 명확하니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양성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양성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8년 1월 23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 초체(招帖) : 갑오개혁 이후 재판에서 소송 관계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한 문서이다. 1895년 정리규칙(廷吏規則) 제5조와 제6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5. 原告 又 被告者를 招來할 時에 當該裁判所 招帖을 持호고 往호야 原告 又 被告에게 傳호되 原告 又 被告가 頑諉不從호거나 躲避不現호거나 拿捕를 直行호미 可호니 如此境遇에는 或從 近巡檢所에 通奇호야 并力拿捕호. 제6. 招來에 被호 者가 在家지 아니호 時에는 其家人에게 招帖을 傳호야 知委來待케호되 所往地方과 里數와 事件을 詳錄호야 當該裁判所에 歸호호며 左開期限을 被호호 家人의게 詳告호되 左期限을 逾越호는 時에는 缺席裁判을 直行호由를 曉知호미 可호. 缺席裁判期限 原告 又 被告가 來待호라는 通報를 見호 後 七日(但所在地로서 裁判所까지 距離는 每八十里一日式 京內則 半日式定給호되 七日外로 計算호.”

원문

判決書 第五號

水原郡 佳士面 安仲里 居

原告 鄭謙秀

龍仁郡 上東面 德成洞 居

被告 鄭雲祥

判決要旨

原告의 伸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明面報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去庚子年分에 妻塚을 過葬於陽城郡九川里面城峴이온바 該山麓은 李鄭朴吳金互葬之地이온디 被告가 稱以先山腦后하고 連督掘移이읍기 不耐其督하야 成給掘移之標하고 屢次寬限이오나 該山이 果非被告의 所有故로 延拖不掘이읍더니 陰曆昨年十月에 被告가 舉訴於本郡하야 自郡으로 圖形摘奸後 嚴飭移葬이읍기 勢不得已 以明春移葬으로 納供이읍더니 至于今春하야 被告가 又爲舉訴하야 自郡으로 原告의 招帖를 發送하얏스오나 適有事故하야 趁未得就下이읍더니 該郡에서 缺席判決하고 矣妻塚을 官掘하오니 事甚冤抑이라하나 該山이 苟非被告所有면 掘移之標를 初何成給이며 這間屢次書信에도 亦以掘移로 謝罪爲辭가 分明하고 且以掘移로 郡庭納供이고 其後招帖에 托以有故하고 仍不就下하야 以至缺席判決이 自歸理曲은러 該山이 被告의 先山이라함은 山在洞里長과 年老民의 證明書가 明確하니 原告의 訴求를 正當이라고 謂치 못할지라 該郡判決이 妥當이기 繳還該郡하노라

隆熙二年 一月 廿三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1908년 1월 29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3호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 도동島洞 거주

원고 최국희崔國喜 대리인代理人 경훈慶勳

수원군水原郡 어탄면漁灘面 신암동新菴洞 거주

피고 이원협李源協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伸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고조부高祖父 산소는 수원군水原郡 초평면楚坪面 오강동五綱洞 북쪽北麓에 있습니다. 해당 산을 1815년에 저의 증조부가 장위운張衛韻에게 매수買收했던 문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후에 저의 고조모高祖母 무덤 뇌후腦後에서 20보步의 땅을 장위운이 오씨吳氏 종손에게 이증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일으켜서 (입장을) 금지시키는 데 이르렀고, 소송문서(訴狀)를 근거로 삼을 수 있어 폐단 없이 수호하였습

니다. 그 후 1881년에 조종서趙鍾緒가 투장偷葬한 바가 있으나 저의 아버지가 기어이 금지시키므로, 조종서가 이장할 뜻으로 증서(標)를 작성하여 주었고, 여러 해 기한을 끝다가 비로소 작년 겨울에 조종서 집안에서 해당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뜻하지 않게 올해 8월경에 피고가 그의 어머니를 조종서가 파 간 땅에 투장하였습다. 그래서 수원군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로 수호하라는 판결(處辦)이 있었으니 일이 매우 원통하고 억울합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답변答下은 “해당 산은 저의 11대조 이하부터 금양禁養하였던 땅이므로 원고가 산을 샀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종서가 1881년에 해당 땅에 투장하였는데 비록 법정에서 다투지(爭持) 않았으나 무수하게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작년 봄에 이르러 조종서 집안에서 사초(莎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문중에서 조종서 집안의 무덤을 비록 굴이掘移하지 않더라도 사초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조종서에게 증서(標紙)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증조부가 살아 계실 때에 수원군에 사는 심沈 진사進士가 경기도 감영監營의 비장裨將으로 저희가 새롭게 입장하는 곳 근처의 땅에 능장勒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증조부가 사굴私掘하여 스스로 다스리고 (그 죄로) 찬배(竈配)**되었다가 끝내 유배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금양했던 것은 다시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의 국내局內에 저희들이 입장하는 것이 어떻게 불가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참고하고 해당 산의 도형(圖形)을 열람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니, 동쪽과 서쪽의 양국兩局 사이에 골짜기를 경계로 삼아서 각각 서로 산국을 이루었다. 골짜기의 윗 산록은 좌우가 평탄하여 가운데에 주인 없는 무덤이 있다. 동쪽의 투장한 곳에는 심씨의 무덤을 사굴한 곳이 있는데 서쪽의 투장한 곳은 조종서 어머니 무덤의 옛 뒷자리이고, 피고가 새롭게 입장한 곳이다. 골짜기의 동·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경계를 정한 곳이다. 그렇지만 피고가 새롭게 입장하여 서로 소송한 곳은 확실하게

*사초(莎草) : 무덤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 또는 무덤 떼 그 자체를 말한다.

**찬배(竈配) : 죄인을 지방이나 섬 등으로 귀양 보내는 형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단독으로 수호하는 땅이다. 다만 보수步數가 서로 소송할 만하다. 그렇지만 원고의 고조부 무덤에서 피고가 새로 입장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26보步 6촌寸이 된다. 원고의 고조부가 관직과 작위가 없었으니 피고의 무덤을 굴이掘移할 이유가 없다. 이로써 수원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수원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8년 1월 2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三號

水原郡 文市面 島洞 居

原告 崔國喜 代理人 慶勳

同郡 漁灘面 新菴洞 居

被告 李源協

判決要旨

原告의 伸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矣高祖山 在於水原郡楚坪面五綱洞北麓이온바 淸嘉慶乙亥年에 該山을 原告曾祖가 買收於張衛韻하야 文券이 昭在이온디 其後에 原告高祖母墳墓腦後二十步之地를 張衛韻이 重賣於吳宗孫 故로 以至起訟禁止하야 亦有訴狀

可據에 無弊守護矣러니 厥後辛巳年에 趙鍾緒가 有所偷葬이오나 原告父가 期欲禁止則 趙鍾緒가 以移葬之意로 成標以給이고 拖過多年타가 始於昨冬에 自趙家로 移去該塚이온바 不意今年八月分에 被告가 偷葬其母塚於趙塚掘去地이옵기 起訴於本郡이옵디니 互相守護하라 有所處辦이오니 事甚冤抑이라하나 被告의 答下은 該山이 矣身十一代祖以下禁養之地則 原告의 買山之說은 語不近理이옵고 趙鍾緒가 辛巳年에 偷葬於該地이온디 雖不法庭爭下이오나 無數詰責이옵다가 至於昨年春에 趙家에서 欲爲莎草 故로 矣家門中이 該塚을 雖不掘移나 任他莎草는 不可라하야 至捧趙鍾緒標紙하얏스오며 矣曾祖生時에 水原居沈進士가 以畿營裨將으로 勒葬於矣身新葬處至近之地 故로 矣曾祖가 私掘自理하야 以至竄配하얏다가 竟死於配所하얏스오니 矣身의 所有禁養은 無容更議이온즉 矣身局內에 矣身葬之가 有何不可라하야 參互兩供하고 考閱該山圖形則 東西兩局之間에 以壑爲界하야 各相成局인바 壑之上麓은 左右平坦하야 中有無主塚하고 東偷에 有沈塚私掘處인디 西偷은 卽趙鍾緒母塚舊墟地요 被告新葬處也라 壑之東西는 原被告가 各有定界이나 被告新葬相訟處는 確非原被間 獨全守護之地也라 但可以步數相訟이나 自原告高祖塚으로 至被告新葬地가 爲二十六步六寸인바 原告高祖가 旣無官爵則 被告塚을 掘移할 理由가 無흔 지라 是로 以하야 該郡判決이 妥當이기 繳還該郡하노라

隆熙二年 一月 二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8년 1월 31일 수원-남양

역문

판결서 제7호

수원군水原郡 삼봉면三峰面 청근리靑斤里 거주

원고 이대년李大年

남양군南陽郡 읍내邑內 거주

피고 강문겸姜文兼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牒)과 증서(證標)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방계 5대조 고조(高祖)의 산소가 수원군水原郡 삼봉면三峯面 청궁리靑宮里에 있습니다. 피고가 제가 외롭고 약한 것을 우습게보고 올해 음력 8월경에 투장(偷葬)했으므로, 수원군에 거소(擧訴)하였더니 억울하게도 제가 패소하여서, 이렇게 상소(申訴)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답변은 “본년 음력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바야흐로 매장할

산을 구하고 있을 때에, 수원 매곡면梅谷面에 사는 이석구李錫求의 말에 ‘나의 집안 산소가 삼봉면에 있는데, 해당 산록(山麓)을 종손宗孫이 조각조각 나누어 방매(放賣)하고 이미 죽었으니 수호할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뒷자리 하나를 빌려줄 터이니 종손이 이미 방매한 산판(山坂)을 그대가 모름지기 환퇴(還退)하여 나의 방계조(傍系祖)의 무덤을 잘 수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결국 응낙하였고, 이석구가 산록을 빌려준다는 것으로 제가 이미 방매했던 산을 환퇴하여 수호할 뜻으로 서로 간에 증서를 작성한 후, 곧 8월에 저의 아버지를 무덤에 입장(入葬)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이르러 안산(安山)에 사는 이용식李庸植이 와서 저를 꾸짖으며 말하길 ‘우리 산국(山局) 내에 네가 갑자기 투장한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곧바로 수원군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이석구와 원고도 마침 와서 서로 수작을 부리더니 이용식이 말하길 ‘이석구가 빌려주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다만 투장한 것으로 알아 이렇게 소송을 일으킨 것이다.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고, 이 산을 수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번에 범한 것은 네가 반드시 부담(擔着)하고 잘 수호하며, 이번 소송비용이 330냥兩이니 네가 반드시 물어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인적으로 화해하겠다고 수원군에 청원하였고, 수원군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지령을 받아 이용식과 함께 작성한 증서를 서로 주고받아 결국 별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나중에 수원군에 다시 거소하였고, 도형(圖形)과 대질 조사에서 제가 승소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석구는 대질하는 재판 자리에서 피고의 진술과 같았고, 이용식은 병으로 출두하지 않고 설명서로써 대신 제출하였다. 모든 진술을 비교하며 살펴보고 2장의 증서(標紙)를 열람하여 살펴보니, 이석구와 이용식이 그의 방계조의 무덤에 후사가 없어 제사를 거르는 것과 산록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게 뒷자리 하나를 빌려주었고, 증서를 작성하여 잘 마무리한 것이 명확하다. 이용식은 바로 차종손(次宗孫)이니 차종손이 잘 마무리한 일을 원고가 올바르게 못한 행동으로 어지럽게 거소한 것이 실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로써 수원군의 판결이 타당하므로 수원군으로 돌려보낸다.

1908년 1월 31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第七號

水原郡 三峰面 靑斤里 居

原告 李大年

南陽郡 邑內 居

被告 姜文兼

判決要旨

原告의 伸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標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原告의 陳供은 矣傍五代祖高祖山이 在於水原郡三峰面靑宮里이온바 被告가 蔑視矣身之 孤弱하고 陰曆本年八月分에 有所偷葬이읍기 舉訴於本郡矣러니 枉置於落科 故로 至此伸訴라하며 被告의 答辯은 陰本年五月에 遭父喪하여 方欲求 山之際에 水原梅谷面居李錫求言內에 吾之家山이 在於三峰面矣러니 該山 麓을 宗孫이 片片分賣하고 已爲身死하여 守護無人이라 我今許借一曠地 홀이니 宗孫之已賣山坂을 君須還退하여 吾之傍祖墳墓를 善爲守護하라호 읍기 矣身이 果爲應諾호읍고 李錫求則 許借山麓한다하며 矣身則 已賣山 을 還退守護할 意로 彼此成標後 乃於八月入葬矣父塚矣러니 至九月에 安

山居李庸植이 來到詰責曰 吾山局內에 汝忽偷葬이 甚無理라호읍고 卽爲 呈訴於本郡이온바 李錫求與原告가 適有來到하여 互相酬酌이더니 李庸植 曰 不知錫求之許借호고 但認偷葬하여 致此起訴矣라 不必多言호고 此山이 守護無人호니 節犯을 汝須擔着호고 善爲守護하며 今番訟費가 爲三百三十 兩이니 汝必徵給이라호고 卽爲私和請願本郡하여 至蒙承認之指이읍고 與 李庸植으로 成標相交하여 竟爲妥貼이읍더니 原告가 從後更訴於本郡하여 圖形質查에 矣身이 得勝이라호니 李錫求는 質下之庭에 一如被告所供호고 李庸植은 以病不待하여 以說明書로 替納인바 參互衆供호고 考閱二枚標 紙 則李錫求李庸植이가 渠之傍祖塚에 無后闕祀와 山麓保全함을 爲하여 許給一曠地於被告호고 至有成標妥善호미 的確호니 李庸植은 卽次宗孫이 라 次宗孫妥貼之事를 原告가 橫出紛訴호미 實爲無理라 是로 以하여 該郡 判決이 妥當이기 繳還該郡호노라

隆熙二年 一月 三十一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李在弘



송추松楸 환퇴還退에 관한 건

1908년 2월 15일 수원-한성

역문

판결서 제10호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 세교細橋 거주

원고 홍중명洪鍾鳴 대리인代理人 김현익金顯翼

한성漢城 북서北署 재동齋洞 거주

피고 윤응섭尹膺燮 대리인代理人 안치윤安致潤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방매放賣한 송추松楸*를 환퇴還退하지 못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에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선산이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に 있으며, 원고는 5~6대를 이은 묘지기여서 집안사람과 같이 신뢰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9

* 송추(松楸) : 분묘(墳墓) 및 분묘 주변의 산지 즉 분산(墳山)에 심는 나무를 총칭하는 것이다. 분묘의 실전(失傳)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의 수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지기나 묘지기를 두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의 양산(養山) 금양(禁養)을 하였다. 양산 금양권은 분산 구역 내의 산림을 잘 기르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금양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나 땔나무 등을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배타적 산림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김경숙, 2012, 『조선의 묘지 소송』, 문화동네). 유의어는 구목(丘木/邱木)이다.

월 초에 원고가 와서 저의 산에 있는 구목丘木을 방매하자고 요청하기에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차례 와서 처음에는 당오전(當坪) 10,000냥兩을 불렀고, 두 번째는 20,000냥을 불렀으며, 세 번째는 21,000냥을 부르며 원래 값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짜라고 인정하고 값을 받는 후에 방매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탐문해서 알아보니, 이 송추를 매득買得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65,000냥의 값으로 계약하고서 헐값으로 (저를) 속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고를 불러다가 그 의리 없는 행위를 꾸짖고 환퇴해 달라고 하였더니 끝내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환퇴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며 살펴보고 방매했던 증서(票紙)를 열람하여 살펴보니, 해당 송추를 피고가 확실하게 방매하였고, 원고는 소개만 하였지 처음부터 속여서 매득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방매한 이후에 나무값이 갑자기 오른 것은 실로 시세時勢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지 어떻게 매득한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환퇴하는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을 피고가 기필코 환퇴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원고에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1908년 2월 15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원문

判決書 第十號

水原郡 文市面 細橋 居

原告 洪鍾鳴 代理人 金顯翼

** 원문에는 없으나 판심을 확인하고 보충하였다.

漢城北署齋洞居
被告尹膺燮 代理人 安致潤

判決要旨

第一審判決은 棄却事 被告는 原告에게 放賣한 松楸를 還退치 못할 事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事

原告에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에 陳供은 被告에 先山이 在於水原郡文市面이온바 原告가 以五六代相繼한 墓直으로 信如 家人이러니 昨年陰曆九月初에 原告가 來請矣山邱木放賣이올기 不爲聽從 이더니 其後數次來到하야 初焉呼價當坪一萬兩하고 再呼二萬兩하고 三呼 二萬一千兩 而此是價外之高價라하옵기 認真捧價後 成給放賣文字矣러니 追後探知則 此松楸를 結價六萬五千兩於願買人하고 詐欺欺買에 從中取利 者 故로 招致原告하야 責其無義而請退 則終不退給하오니 請自法庭으로 還退以給이라하나 參互兩供하고 考閱放賣票紙則 該松楸를 被告가 確實 放賣하얏고 原告는 只爲紹介 而初無欺買之證據뎌더러 賣後木價之猝騰은 實因時勢之使然이니 何可怨尤於買得者乎아 還退時效가 已過한거슬 被告 가 期欲還退코자함은 正當치 못하리라 是로 以하야 原告에 訴求가 其理由 가 有하事

隆熙二年 二月 十五日



1908년 3월 23일 수원-한성

역문

{용원민700호}

융희2년 제102호

결석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신영헌申永憲

남서南署 수구문水口門 안 거주 상민商民

피고 심의준沈宜俊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원고의 100,000냥 어음(魚驗條)을 피고 가 화해하자고 한 증서에 따라 다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소송비용 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사실은 이미 소장에 다 있다. 원고의 형 신 영조申永祚가 외국으로부터 얼마 전에 비로소 돌아와서 사유事由를 자세 히 조사하였다. 그런즉 당초 피고가 원고의 형에게 와서 말하기를 “제 소 유의 논문서(番券)를 원고가 전당잡혔는데 기한이 지나 장차 방매放賣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100,000냥 어음을 작성해 주면, 그 돈으로 해당 논문서를 찾은 뒤에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의 형이 100,000냥 어음을 그 청에 따라 써 주었다. 그 뒤 피고가 해당 어음으로 일본인을 대동하고 수원부水原府에 내려가서 원고 형제의 가옥 두 채와 살림살이를 집행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형을 또 이 안건으로 수원부의 경서警署에 대신 가두었다. 1906년 겨울에 피고가 원고의 형을 석방해 달라고 구두로 청원하였다. 그런데, 수원부 경서에서 “단지 그 구두청원에 따라 급하게 풀어 주는 것은 모호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가 화해한다는 취지로 그 불망기不忘記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소송이 타결되었다. 그 뒤 경서에 유치하고 있던 해당 불망기를 수원부로 올려 보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최근에 소외인訴外人* 김학수金學洙라는 사람이 전주錢主라고 주장하며 출두하여 원고를 수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해서 무효가 된 어음을 억지로 추심하려고 하였다. 해당 불망기를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수원부에 공문을 보내서 회답을 받아 보았는데, “해당 불망기가 어째서인지 빠져 있고, 심의준이 작성한 해당 증서는 다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상고해보니, 해당 군郡에서는 김학수 대 신영현·심의준 안건에 대해 대질하였고, 해당 도道에서는 김학수 대 신영현 안건에 대해 심판하였는데, 군과 도에서 이번 원고·피고에 대하여서는 판결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해당 소송을 화해할 취지로 불망기를 작성해서 바칠 때 참관한 당시 해당 경서의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을 불러서 물었다. 그랬더니 “이번 송안에서 원고 형제의 가옥과 살림살이를 그 당시 관찰부觀察府의 영칙令飭에 따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 뒤 옥에 갇힌 원고를, 빚 갚을 기한을 정하여 보방保放**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원고의 아버지를 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와서 고하기를, ‘신씨 형제의 가옥과 살림살이를 이미 집행하여 경매하였으니 비록 적지

* 소외인(訴外人) : 소송 외의 사람 즉, 원고 피고 등 당사자 외의 사람을 가리킨다.

** 보방(保放) : 보증금(保證金)을 받거나 보증인(保證人)으로 세우게 하고, 형사(刑事) 피고인(被告人)을 한때 구류(拘留)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않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소송을 화해하며 타결하겠다.’고 화해 불망기를 작성하여 바쳤기에, 신씨 형제의 아버지를 석방하고 관찰부에 고지하여 소송이 이미 마무리 되었다.”고 하였다.

원고의 소장과 증인진술을 살펴보니, 피고가 증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마무리하였으니 해당 소송에 기초한 어음은 자연히 무효이다. 그런데도 지금 또 소외인 김학수로 하여금 해당 도에 다시금 고소하게 한 것은 진실로 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처음에는 나와서 대질하다가 끝내는 여러 번의 소환에도 출두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석판결을 즉시 행한다.

1908년 3월 23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피상범皮相範

판사 이범직李範稷 휴가(由)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노중식盧中植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문

(隆元民七〇〇號)

隆熙二年 第一百二號

缺席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居 商民

原告 申永憲

南署 水口門內 居 商民

被告 沈直俊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原告의 拾萬兩 魚驗條를 被告妥和票證에 依호야 更勿侵責함이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가 被告에 對호야 訴求事實은 已悉於訴狀인바 原告 兄 申永祚가 自外國으로 日前始歸호야 詳探事由즉 當初被告가 原告의 兄에게 來言호기를 吾之所有番券을 典質過限호야 將至放賣之境이니 拾萬兩魚驗을 繕給호면 以其錢推該券後 卽當報償이다호야 原告의 兄이 拾萬兩魚驗을 依其請書給矣러니 其後에 被告가 以該魚驗條로 日本人을 帶同호고 水原府에 下來호야 原告 兄弟의 兩家舍와 什物을 執行인바 原告의 兄을 又因此案호야 代囚於該府警署러니 光武十年 冬에 被告가 原告의 兄을 解放호기를 口請호는즉 該警署에서 只因口訴 而遽放호는 事係模糊라호는즉 被告가 以和解之意로 其不忘記를 書納호야 已爲妥訟이러니 其後 該警署에 留置호는 不忘記를 自該府로 移上인바 不意近者에 訴外人 金學洙云人이 稱以錢主로 出頭호야 原告를 更訴於水原府호야 妥貼無效之魚驗條를 強推이다호는바 該不忘記를 憑考次 覓交之意로 行文該府러니 接見該復즉 該不忘記가 如何遺漏인지 沈宜俊之成給該票는 無容更疑라호는고 被告의 持待호는 書類를 取考호는즉 該郡에서는 金學洙 對 申永憲 沈宜俊案에 質辦호고 該道에서는 金學洙 對 申永憲案에 審判호는은즉 郡與道에서 今此原被告에 對호여서는 判決함이 見無호는바 被告之該訟妥和之意로 不忘記繕納時 參見之伊時 該警署 摠巡 金龍鎮를 招問호는은즉 今此訟案에 原告의 兄弟家舍什物을 其時觀察 府令飭을 因호야 一切執行後 被囚之原告를 定限保放에 過期不報호야 原告의 父를 又爲捉囚러니 被告가 來告호기를 申之兄弟의 家舍什物을 既經 執行競賣호는은즉 雖錢千間未捧이라도 該訟을 妥和호는것이다호고 該妥貼不忘記를 繕納이기로 放其申父호고 告知于觀察府호야 訟已妥案이다호는은즉 原訴及證供을 參互호는니 被告가 成票妥訟즉 該訟의 基호는 魚驗條는 自歸無效 이거날 今又使訴外人 金學洙로 更訴該道함이 誠係不當은더러 被告가 初焉就質타가 未乃屢招不待이기 缺席判決을 卽行호는

隆熙二年 三月 二十三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金喆鉉

判事 皮相範

判事 李範漫 由

判事 李源國

主事 盧中植





1908년 4월 16일 수원-인천

역문

{2민공20호}

판결서

원고 최인기^{崔麟基} 거주지[住地] 수원군^{水原郡} 매곡면^{梅谷面} 사천동^{沙川洞}

피고 장덕준^{張德俊} 거주지[住地] 인천군^{仁川郡} 황등천면^{黃等川面} 중림^{重林}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분묘계한^{墳墓界限} 안에 투장^{偷葬}한 것을 굴이^{掘移}할 이유가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수백 년 동안 선조를 입장^{入葬}하고 수호한 땅에 피고 장덕준^{張德俊}이 1907년 6월 17일에 투장^{偷葬}하였습니다. 분묘계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독굴^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가난한 탓으로 갑자기 산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원고의 계한 안에 투장^{偷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원고가 여러 대 동안 선산으로 금장^{禁葬}했던 땅에 피고가 투장^{偷葬}한 것은 보수^{步數}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고의 분묘계한 내의

소유지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의 투장을 마땅히 금해야 하므로 피고를 패소시킨다.

1908년 4월 16일

시흥군수^{始興郡守} 이복영^{李復榮}

군주사 이승우^{李承瑀}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기한 안에 상소^{申訴}할 수 있다.

원문

{二民控二〇號}

判決書

原告 崔麟基 住地 水原郡 梅谷面 沙川洞

被告 張德俊 住地 仁川郡 黃等川面 重林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對하야 被告는 墳墓界限內 偷葬를 掘移할 理가 有하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數百年 先祖入葬守護之地에 被告張德俊이 光武十一年陰六月十七日 偷葬이온즉 依界限定規督掘伏望이라하며 此에 對하야 被告陳供은 貧寒所致로 猝難求山하와 冒沒偷葬於原告界限內라하마 准此查하 原告屢代先山禁養之地에 偷葬함이 步則毋碍나 界限所有가 明確하 被告偷葬이 宜乎當禁이기 置之落科事

* 판결서 원문에는 '始興'이란 글자가 없고 판결서 용지의 관심에 찍힌 도장의 글자도 불분명하나, '시흥군'으로 추정되어 '시흥군수'로 해석하였다.

隆熙二年 四月 十六日
郡守 李復榮
郡主事 李承瑀

此判決에 對하야 被告가 期限內에 申訴함을 得함



1908년 4월 29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15호

수원군水原郡 현암면玄岩面 문곡리文谷里 거주

원고 김영상金永商

수원군水原郡 장주면章洲面 영통리靈通里 거주

피고 한성교韓聲敎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문권(證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述)은, “저의 5대조 이하의 분묘가 수원군水原郡 영통리靈通里에 소재하여 수백 년 동안 금양(禁養)하였습니다. 작년 12월경에 피고가 참나무 40그루(株)를 벌채하여 숲으로 구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치에 어긋난다고 따졌더니 문권(文券) 1장을 제시하였는데, 곧 1839년 저의 조부 이름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저의 조부가 만약 산을 방매(放賣)하였다면 그 후에 저의 집에서 어떻게 입장(入葬)을 했겠습

니까? 또한 40년 전에 저의 부친이 참나무를 벌채하여 솥으로 구웠으니, 이로써 보더라도 이 산을 매도賣渡하지 않은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문권을 논하자면 양반가의 문권에 노비의 이름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노비의 이름으로 작성하지 않고 저의 부친의 이름으로 작성하였으니 위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날에 가서 따졌더니 피고의 부친이 저를 만나길 청하며 말하기를, '없는 일로 할 수는 없으니 서로 화해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정소呈訴하기 위해서 수원군水原郡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피고가 벌써 먼저 정소하였습니다. 대질하고 재판한 이후에 저를 패소시켜 불복不服해서 상소申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변론(答文)은, "저의 증조와 원고의 조부는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1839년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원고의 조부가 해당 산기슭을 방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의 동쪽은 원고의 무덤이 있었고, 산의 서쪽은 곧 시장柴場입니다. 저의 증조는 시장을 배어낼 계획으로 문권을 작성하여 그 서쪽 위 기슭을 매득買得하였고, 재목과 화목火木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한편 본동本洞에 사는 김순 사과司果도 원고의 무덤 뒤후腦後에 입장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김 사과가 원고의 국내局內에 있는 송추松楸를 벌채하고, 제가 매득한 산기슭을 침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부친이 매득한 문권을 가지고 가서 따져서 김 사과가 함부로 벌채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산을 지금 조사하더라도, 산의 동쪽인 원고의 국내는 김 사과가 벌채한 이후에 초목草木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산의 서쪽 제가 매득한 곳은 제가 금양을 했으므로 수목樹木이 거의 잇달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득한 것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의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조부무덤을 입장入葬한 것으로 말한다면, 그가 입장한 곳은 그의 국내이고 제가 매득한 곳이 아닙니다. 원고의 진술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매득한 전후의 문권과 함께, 해당 산을 매득한 지 20년 이후에 저의 집안에서 참나무

* 사과(司果)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6품의 군직을 말한다.

를 벌채해 솥으로 구웠더니 원고의 집안에서 시비의 단서를 만들어 저의 집안에서 정소한 소장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헤아리고 증거문권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피고가 원고의 산을 매득한 문권을 살펴보면 1835년에 "전문錢文 4냥을 얻어 쓰고, 만약 가을이 되었을 때에 이자와 함께 갚지 못하면 이 시장柴場을 영영 방매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1836년에 "전문 4냥을 얻어 쓰고 영원히 방매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1839년에 "전문 4냥을 순태純太 17두斗의 값으로 쳐서, 문권을 작성하여 영영 방매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전후의 문권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1857년 12월경에 피고가 해당 참나무를 벌채하여 솥으로 구울 때에 원고가 힐난詰難하여서 피고가 수원군에 정소한 소장이 분명하다. 이로써 살펴보더라도 산의 동쪽은 원고의 소유이고, 산의 서쪽은 피고가 매득한 것이 명확하다. 수원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수원군으로 돌려보낸다.

1908년 4월 2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항李圭恒

주사 조병렬趙炳烈

원문

判決書 第十五號

水原郡 玄岩面 文谷里 居

原告 金永商

同郡 章洲面 靈通里 居

被告 韓聲教

判決要旨

原告의 申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券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矣身五代祖以下墳墓가 在於水原郡靈通里하야 數百年禁養이러니 昨年臘月分에 被告가 眞木四十株을 斫伐埋炭하얏습기 矣身이 責其無理 則以文券一張으로 出示하는되 卽道光十九年 以矣身祖父名字로 成出者也라 其時矣祖父가 果若賣山이면 其後矣身家에서 何以入葬이며 四十年前에 矣父가 斫伐眞木埋炭하얏스니 以此觀之라도 此山之不爲賣渡는 明若觀火요 以文券으로 論之하면 班家文券上에 例以奴名書之인데 不書奴名하고 卽書矣父之名字하얏스니 僞造를 可知라 矣身이 往責之翌日에 被告之父가 請邀矣身而言曰 不爲無事니 彼此私和하즈하오나 矣身이 不勝憤恨하야 呈訴次 入于本郡 則幾日前에 被告가 業已先呈矣라 對質裁判後 矣身를 置之落科하야 不服申訴라하나 被告의 答下은 矣身曾祖與原告祖父로 同里居生이온바 道光十九年己亥에 以年歉之致로 原告祖父가 欲賣該山麓하야 山之東은 原告墳墓가 有之하고 山之西便은 卽柴場處이온바 以柴場刈取之計로 矣身曾祖가 成券買得其西便上麓하야 材木與火木를 任自取用矣러니 本洞居金司果가 亦爲入葬於原告塚腦後하야 已爲年久인바 二十年前에 金司果가 斫伐原告局內松楸하고 欲爲侵犯于矣身所買山麓이읍기 矣父가 以買有之文券으로 往詰하야 金司果가 不得侵斫이온바 該山을 已今調査라도 山之東原告局內는 金司果斫伐之後에 因爲童濯하고 山之西矣身所買處는 矣身禁養之 故로 樹木이 幾至連抱이온즉 非但買有之的確이라 隣里가 所共知也이으며 以原告祖父塚入葬으로 言之면 渠葬渠之局內요 非矣身買有處인즉 原告陳述이 未知何據이읍고 前後買山文券과 該山買得흔지 二十年後에 矣身家에서 眞木을 斫伐埋炭이러니 原告家에서 有是非之端하야 矣身家에서 呈訴하 訴狀이 在此라하마 參互兩供하고 考閱證券 則被告가 原告山을 買有하 文券으로 觀之면 道光十五年乙未에 錢文四兩을 得

用而若秋成時 不爲具邊備償 則以此柴場으로 永爲放賣라하얏고 道光十六年丙申에 以錢文四兩得用이고 永永放賣라하얏고 道光十九年己亥에 以准價錢文四兩純太十七斗이고 成文券永永放賣라하얏는되 前後文券이 昭然 쓴더러 其後丁巳年十二月分 被告가 該山眞木을 斫伐埋炭時에 原告가 亦爲詰難하야 被告가 呈訴本郡하고 訴狀이 分明하니 以此觀之라도 山之東은 原告所有요 山之西난 被告買有가 明確하리라 本郡判決이 妥當하기로 繳還該郡하노라

隆熙二年 四月 二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恒

主事 趙炳烈





1908년 4월 29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16호

남양군南陽郡 둔지곶면屯知串面 무송동茂松洞 거주

원고 정규원丁奎遠

남양군南陽郡 둔지곶면屯知串面 무송동茂松洞 거주

피고 한기정韓基貞 대리인[代理] 한규선韓奎善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9대조 참판공參判公의 산소가 남양군南陽郡 무송동茂松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03년에 피고가 저의 9대조 무덤 순전[順前]*에 그의 모친을 암장[暗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 차례 남양군에 정소[呈訴]하였으나 판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재판소

* 순전(順前) : 무덤 앞에 평평한 땅이다.

京畿裁判所에 호소하기에 이르러서 굴이掘移하라는 제사題辭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멈추는 기간이므로 피고가 파내어 갈 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계속 미루기에 제가 작년 12월에 또 남양군에 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서에서 저를 잘못 패소시켰으니, 일이 매우 억울하고 원통합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변론[答辯]은, “저의 9대 이하 20여 무덤을 계장[繼葬]**한 국내局內는 원고의 산과 경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1903년에 제가 모친을 입장[入葬]하였는데, 원고가 남양군에 무리하게 기소[起訴]하였으나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9대조가 2품이라고 한 것은 증직[贈職]에 불과합니다. 저의 모친 무덤과 도형[圖形]을 보면 81보步이고, 원고의 6대조 무덤에서는 저의 모친 무덤까지 51보입니다. 제가 입장한 땅은 저의 국내인데 원고가 소송을 일삼는 것이 이치에 어긋납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헤아려보고 해당 산의 도형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원고의 9대조 무덤에서 피고의 모친 무덤까지 85보이다. 그리고 원고의 6대조 무덤에서 피고의 모친 무덤까지는 51보이니, 분묘계한[墳墓界限]으로 무덤을 금장[禁葬]할 수 없다. 해당 산의 소유권으로 말하더라도, 남양군의 판결에서 “정규원丁奎遠의 산이 아니라 한기정韓基貞의 산입니다.”라고 하였던, 산이 소재한 마을 이장[里長]의 증명도 확실하다. 그러니 이 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실로 근거할 수 있다. 또한 본 재판소가 해당 이장과 사정을 아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사실을 조사해서 바로잡게 되면 억울하고 원통함이 없겠는가?” 하니, “원고가 ‘산 아래 사람이 틀림없이 한기정의 산이다.’라고 말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니 이 산이 한기정의 산인 것은 원고가 스스로 알고 있었음이 명확하다. 남양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남양군으로 돌려보낸다.

1908년 4월 2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 계장(繼葬) : 조상(祖上)의 묘 바로 아래에 이어서 자손(子孫)을 장사(葬事)하는 것이다.

판사 이규항李圭恒
주사 조병렬趙炳烈

원문

判決書 第十六號

南陽郡 屯知申面 茂松洞 居
原告 丁奎遠

同郡 同面 同洞 居
被告 韓基貞 代理 韓奎善

判決要旨

原告의 申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의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矣身九代祖參判公山所가 在於南陽郡茂松洞이온바 去癸卯年에 被告가 暗葬其母於矣身九代祖塚脣前 故로 矣身이 屢次呈郡에 不得判決하야 至於本裁判所에 呼訴하야 掘移之題를 得承到付 則以其息訟之時로 不可掘移라하야 延拖于今이압더니 昨年十二月에 又呈本郡이러니 判決書에 枉置矣身於落科 則事甚抑冤이라하나 被告의 答下은 矣身九代以下二十餘塚繼葬局內가 與原告山으로 連境이온바 去癸卯年에 矣身이 入葬矣러니 原告가 無理起訴于本郡하야 矣身이 得勝判決이온바 原告九代祖二品云者는 不過是職贈이온바 與矣身母塚으로 圖形 則爲八十一步요 原告六代祖塚에서는 至矣身母塚이 爲五十一步이온즉 矣身入葬之地가 矣身局內이온디 原告之健訴가 是無理이라하마 參互兩供하고 考閱該山圖形 則原告九代祖塚에서 至被告

母塚이 八十五步요 原告六代祖塚에서 至被告母塚이 五十一步인즉 不可界限禁塚이요 該山所有權으로 言지라도 該郡判決에 非丁民之山이요 乃韓民之山이라흔 山在洞里長證明이 的確하니 此山之非原告所有는 實有可據라 且以本所로 招致該里長及知事人하야 至爲查實歸正이면 可無抑冤乎 아흔즉 原告가 山下之人이 必以韓山으로 爲言하리라 答述하니 此山之爲韓山은 原告가 自知함이 明確하리라 本郡判決이 妥當하기로 繳還該郡하노라

隆熙二年 四月 二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恒

主事 趙炳烈





1908년 5월 7일 남양-수원

역문

판결서 제18호

남양南陽 분양면汾陽面 거주

원고 유덕교劉德交

수원水原 공향면貢鄕面 거주

피고 윤재희尹在喜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폐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풍랑을 만나서 침몰한 배값[船價]을 이치에 맞지 않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과 증거조사[證查]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8,500냥의 값을 주고 배 1척을 매득[得]하였습니다. 그리고 뱃사공[船格] 송점용宋占用으로 하여금 타인의 콩성[太包] 마른 빨감[草木]을 꾸러서 배에 싣고, 인천항仁川港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장작[燒木] 3,800개를 더 싣고, 목선창木船倉에 배를 정박하였습니다. 이후 풍랑이 점점 일어났는데 장작을 고의로 풀지 않아

서 배가 부서지는데 이르렀습니다. 제가 배값을 찾고자 하여 남양군南陽郡에 소송하여 승소했는데도 원고가 무리하게 상소[申訴]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은, “콩을 실은 피고의 배에 저의 장작 3,800개를 꾸러서 실었습니다. 2월 26일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마땅히 목물木物을 매매[賣買]하는 석선창石船倉에 정박해야 했으나, 콩섬을 하역하기 위하여 석선창을 지나서 곡포穀包를 매매하는 목선창에 강제로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콩만 하역한 후에 석선창으로 옮겨서 정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배와 장작이 함께 침몰하여 절박하고 원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도리어 남양군에 무소[無訴]하여 저를 패소시켰기에 이렇게 상소하는 데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헤아리고 증언과 증거를 살펴보니, 인천항 내에 석선창과 목선창이 있는데, 석선창은 목물을 하역하는 곳이고 목선창은 곧 곡포를 하역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구역이 이미 나누어져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배에 콩섬을 먼저 싣고, 나중에 장작을 실어서 배를 운행하여 인천항에 도착했다. 그러니 콩섬을 풀기 위하여 그 근처에 있는 석선창을 두고, 멀리 있는 목선창에 정박한 것은 일의 형세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로 원망할 것이 없는데, 말을 만들고 단서를 잡아서, 풍랑을 만나 침몰한 배값을 원고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하고자 한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상소는 이유가 있다.

1908년 5월 7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항李圭恒

주사 나기정羅基貞

*판결서 원문에는 ‘京畿裁判所’란 글자가 없으나 판결서 용지의 판심에 찍힌 도장에 근거하였다.

원문

判決書 第十八號

南陽 汾陽面 居
原告 劉德交

水原 貢鄉面 居
被告 尹在喜

判決要旨

第一審 判決은 廢棄事 被告는 原告에게 遇風致敗한 船價를 無理責徵치 못
할 事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質下과 證查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被告에 陳供은
給價八千五百兩하고 買船一隻하여 使船格宋古用으로 裝載他人太包及枯
草木하고 送于仁港矣러니 原告가 添載燒木三千八百箇하고 泊船於木船
倉이라가 風浪이 漸起하되 燒木을 故意不解하여 以至破船하니 欲推船價
而訴於南陽郡得訟이여늘 原告가 無理申訴이다이고 原告에 陳供은 燒木
三千八百箇를 裝載於被告卜太之船하고 二月廿六日 到于仁港이온데 宜乎
碇泊于木物賣買하는 石船倉이거늘 爲其太包下陸하여 越去石船倉 而強泊
於穀包賣買하는 木船倉하고 卜太만 下陸한 後 未及移泊於石船倉하고 證
明에 風浪이 大作하여 船隻과 燒木이 并爲沒敗하여 心切憤冤터니 被告가
反爲誣訴於本郡하여 枉置原告於落科 故로 至此申訴이다인바 參互兩供하
고 聽准證查한즉 仁川港內에 有石船倉木船倉하니 石船倉은 是木物下陸
之處요 木船倉은 卽穀包解下之地로 區域이 已分하되라 被告船隻에 先載
太包而後載柴木하고 行船到仁港하여 爲解太包하여 捨其在近之石船倉하
고 越泊於在遠之木船倉한거슨 事勢固然이요 實無怨尤處이거늘 做說執端
하여 遇風致敗한 船隻價를 原告에게 責徵코자 함은 萬萬無理하되라 是로

以하여 原告에 申訴가 其理由가 有한 事

隆熙二年 五月 七日

判事 李圭恒

主事 羅基貞





1908년 5월 14일 수원-수원

의문

{용2민제400호}

융희2년 제96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유업儒業 원고 최국희崔國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전前 정위正尉

피고 이원협李源協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所供]은 “제 고조모의 산소가 수원군水原郡 초평면楚坪面 오강동五綱洞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815년에 저의 증조가 장위운張衛韻에게 매득買得하여 저의 고조모를 입장入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의 고조의 무덤 뇌후腦後에서 20보步 되는 땅을 장위운이 오씨吳氏 종손宗孫에게도 중복해서 방매放賣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씨가 장차 입장할 때에 저의 증조

가 기송起訟하여 금지시켰습니다. 그 후 지난 1881년에도 조종서趙鍾緒가 오씨 종손이 입장하였던 땅에 능장勒葬하여 저의 부친이 금지시켜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종서가 권조權厝한 이후에 이장移葬할 뜻으로 증서[標]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달 저달 미루다가 재작년에 이르러, 조종서가 그 무덤을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피고가 조종서가 옮겨 파낸 곳에 그의 모친을 투장偷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군과 경기도에 정소로訴하였으나 도리어 패소하여 이렇게 상소[申訴]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은, “11대조 이하 여러 대를 계장繼葬하였을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금양禁養한 땅입니다. 수십 년 전에 수원군에 사는 진사進士 심의준沈宜俊이 저의 산국山局에 그의 부모를 투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증조가 사굴私掘한 것이 드러나 유배[竄配]되었다가 끝내 유배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소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조종서가 해당 땅에 투장하였기에 무수히 따져서 무덤의 때를 입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증서[標]를 받았으며, 재작년에 조종서가 파내 갔습니다. 따라서 해당 파낸 곳에 저의 부모 무덤을 입장하였습니다. 제 선산의 국내局內에 제가 입장한 것을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해당 산의 국내는 애초부터 장위운의 무덤이 없었으니 원고가 장위운에게 산을 매득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설령 그의 산이라면 제 부모의 무덤을 입장한 땅과 심의준과 조종서가 파내 간 땅의 중간일 것입니다. 원고가 심의준과 조종서가 입장할 때에는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지금 기송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의 문권文券은 1906년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항변[爭持]을 계속 떠들고 그치지 않았으므로, 산이 있는 수원군에 훈령訓令으로 신척申飭하여 산의 경계를 정한 것과 금양은 누가 했는지를 도형圖形하고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원군수水原郡守 서병숙徐丙肅의 도형과 보고 내용의 대략은, “산지기[山直] 김재순金在舜이 아원

* 권조(權厝): 풍수설에 따라 좋은 묘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바에, ‘저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산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조종서 무덤의 뒤 기슭은 8년 전에는 이원협李源協의 산으로 알고 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8년 이후에 최국희崔國喜가 이미 그의 산 경계라고 하여 자기가 수호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참고하여 도형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해당 산관의 동서東西 두 기슭의 사이에 골짜기 하나가 있다. 고개의 위쪽은 좌우左右가 평탄하며, 동쪽 기슭의 이원협 산국과 서쪽 기슭의 최국희 산국의 중간에 주인 없는 고총古塚이 하나 있다. 고총의 서쪽은 곧 조종서 무덤의 옛날 피구덩이고, 피고가 새롭게 입장한 곳이다. 확실히 원고든 피고든 혼자 오로지 수호한 땅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의 고조가 이미 관작官爵이 없으니 26보 6촌寸 거리의 땅은 매장을 금지할 수 있는 분묘제한墳墓界限이 아니다.

또한 해당 산지기 김재순이 아뢴 바에 조종서의 무덤 뒤 기슭은 8년 전에는 이원협의 산으로 알고 수호했다고 하니, 피고의 무덤을 파내어 옮길 수 없다. 피고도 새로운 무덤이라고 빙자하여 계속 입장해서 원고 무덤의 경계를 침범할 수 없다. 따라서 요지와 같이 판결한다.

1908년 5월 14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홍종억洪鍾億

판사 홍우석洪祐皙

판사 김기조金基肇

판사 송진옥宋振玉

판사 박용태朴瑑台

주사 이용의李溶儀

1908년 5월 16일 전시宣示

원고 최국희崔國喜

피고 이원협李源協

원문

{隆二民第四〇〇號}

隆熙二年 第九十六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居 儒業

原告 崔國喜

京畿道 水原郡 居 前正尉

被告 李源協

判決要旨

原告의 申訴는 棄却함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함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正直함 此에 對하야 原告所供은 矣身高祖母山이 在於水原郡楚坪面五綱洞이온바 <清>嘉慶乙亥年에 矣曾祖가 張衛韻處에 買得하야 矣高祖母을 入葬이온되 其後에 矣高祖墓腦後二十步之地을 張衛韻이가 重賣於吳宗孫하야 吳將入葬之際에 矣曾祖가 起訟禁止하옴고 其後去辛巳年에 趙鍾緒가 勒葬於吳宗孫入葬地즉 矣父가 禁止不得 而趙以權厝後 移葬之意로 成票以給이옴고 此月彼月에 延至再昨年하야 趙乃移去其塚이옴더니 昨年八月에 被告가 偷葬其母於趙葬移掘之處이옴기 呈郡呈道에 反爲落科하야 致此申訴라하며 被告所供은 十一代祖以下屢代繼葬은더러 一草一木를 禁養之地오 數十年前에 本郡居沈進士宜俊이가 偷葬其親山於矣山局內 故로 矣身曾祖가 私掘自現하야 以至竄配라가 竟卒於配所하얏스오니 矣身所有山은 一境所共知也오 又年前에 趙鍾緒가 偷葬於該地인바 無數詰亂하옴고 不得改莎草之意로 捧票而再昨年에 趙自掘去이옴기 該掘地에 矣身이 入葬親山이온즉 矣身先山局內에 矣身葬之을 有誰禁止며 該山局內에 初無張塚이온즉 原告가 買山於張哥之說



1908년 5월 14일 수원-수원

은 語不近理오 設謂渠山이던 矣身親山入葬之地와 間於沈趙塚掘去之地이
 온즉 原告가 沈趙入葬之時에는 無一言半辭라가 今乃起訟이 可乎잇가 矣
 身의 文券은 丙午年에 入于回祿이라호고 爭下이 嗚嗚不已 故로 訓飭于山
 在郡호야 山之定界와 禁養爲誰를 使之圖形查報러니 接閱該郡守徐丙肅의
 圖形報告內概에 山直金在舜所告에 本人은 俱爲原被告山直 故一體守護이
 고 趙塚之後麓은 八年前에는 知以李山守護이더니 八年以後로 崔民이 已
 爲渠山境界라호야 謂本人守護이라호마 兩供을 參互호고 圖形을 考閱호즉
 該山坂東西兩麓之間에 有一壑호고 壑之上은 左右平坦호야 東麓李山局과
 西麓崔山局間에 有一無主古塚호고 古塚西傍은 卽趙塚舊壙地 被告新葬處
 也라 確非原被告間 獨專守護之地싣더러 原告高祖가 旣無官爵즉 二十六
 步六寸相距之地에 無可禁之界限호고 該山直金在舜所告에 趙塚之後麓은
 八年前에는 知以李山守護라호얏스직 被告塚을 掘移함이 不可호고 被告도
 藉托新塚 而繼續入葬호야 原告塚界限을 侵犯치 못홀 者라 是로 以호야 要
 旨와 如히 判決호

隆熙二年 五月 十四日

平理院

裁判長 洪鍾億

判事 洪祐皙

判事 金基肇

判事 宋振玉

判事 朴瑤台

主事 李溶儀

隆熙二年 五月 十六日 宣示호

原告 崔國喜

被告 李源協

역문

{용2제105호}

융희2년 제93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농민農民

원고 조재승趙載承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농민農民

피고 이병욱李秉旭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棄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경기도재판소 조사보고(查報)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陳)은 “1892년경에 수원군水
 原郡 일용면日用面에 있는 산판山坂을 본군 점촌店村에 거주하는 유병문柳
 炳文에게 돈을 지불하고 매득(買得)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장사지
 낸 지 오래되었고, 이어서 저의 부인도 장사지내는 등 별 탈 없이 수호(守
 護)했습니다. 그런데 1893년경에 피고가 저의 조부 무덤 옆에 그의 어머니
 를 장사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제가 장사지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걸^{哀乞}하여 부득이하게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해 봄에 피고가 그의 증조모^{曾祖母}를 해당 산기슭 뒤편에 옮겨서 장사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장차 거소^{擧訴}하여 독굴^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피고가 먼저 수원군에 소송하였고, 저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도^道재판소에 상소했으나, 또 패소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해당 산의 문권^{文券}과 산의 전 주인이었던 유병문의 수기^{手記}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변론^{答供}은 “저의 조부 무덤과 증조의 무덤이 일용면 용리^{龍里} 산기슭에 있으며, 더불어 원고의 어머니 무덤이 한 산기슭에 같이 있고,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부인을 장사지내고 무덤을 쓸 때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지난 해 8월에 수원군과 도^道재판소에 기소^{起訴}하여 이치에 따라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사리^{事理}를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상소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해당 수원군의 관^官도^道형^形圖^圖을 제출하였다.

양측의 진술을 고려하고 증거를 조사해 본즉, 해당 도형에 원고·피고 산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 확실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경기도^道재판소에 다시 명령하여 조사하고 보고한 도형^{圖形}장^狀에 근거하니, 조^裁재^裁승^承이 조금이나마 경계를 넘어 함부로 벌채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새로 정한 경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용면 면장의 조사보고를 말미에 서술하였다. 따라서 해당 산의 옛 경계로 그 경계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元재^在판^判소의 판^判결^決이 타^妥당^當하기 때문에 요지와 같이 판^判결^決한다.

1908년 5월 14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홍종익^{洪鍾楛}

판사 홍우석^{洪祐皙}

판사 김기조^{金基肇}

판사 송진옥^{宋振玉}

판사 박용태^{朴瑢台}

주사 이경수^{李京壽}

1908년 5월 14일 전시^{宣示}

원고 조재승^{趙載承} 불복

피고 이병욱^{李秉旭} 수결

원문

〔隆二第一〇五號〕

隆熙二年 第九十三號判決書

京畿 水原郡 農民

原告 趙載承

京畿 水原郡 農民

被告 李秉旭

判決要旨

原告申訴는 棄却^{棄却}함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擔當}함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質下^下과 畿^畿裁^裁查^查報^報에 照^照하^하야 認^認直^直함 此^此에 對^對하^하야 原告所供은 壬辰年分에 本郡 日用面 所在 山坂을 給價買得於本郡店村居柳炳文處하^하야 入葬矣母年久 而繼葬矣妻하^하와 無弊守護이온바 癸巳年分에 被告가 欲爲入葬其母於渠之祖塚傍 故로 矣身이 欲爲禁葬다가 因其哀乞하^하야 不得已許葬矣러니 又於昨春에 被告가 其曾祖母를 移葬於該山麓後邊 故로 將欲擧訴督掘之際에 被告가 先訴本郡하^하야 使矣身落科 故로 申訴道裁에 又爲落科라하^하고 該山文券과 前山主柳炳文에 手記를 提出하^하며 被告答供은 矣身之祖山曾祖山이 在於日用面 龍里 山麓 而與原告母山으로 同在一麓

에 界限이 分明이온바 原告之妻塚을 犯界入葬 故로 昨年 八月에 起訴本郡 及道裁 扞야 從理得勝이온바 原告가 不思事理호고 如是申訴라호고 該郡官 圖形을 納上호는바 兩供을 參互호고 證據를 調査호는즉 該圖形에 原被告山 境界線이 不明호야 確斷키 難호는 故로 更訓畿裁호야 查報호는 圖形狀을 據호는 즉 趙載承이가 小有越界犯斫이라호니 新作界는 不當호는다고 本面長의 查 報를 尾陳호야스니 該山舊界로 定限함이 可호는지라 元裁判所判決이 妥當 이기 要旨와 如히 判決호는

隆熙二年 五月 十四日

平理院

裁判長 洪鍾億

判事 洪祐哲

判事 金基肇

判事 宋振玉

判事 朴瑑台

主事 李京壽

隆熙二年 五月 十四日 宣示

原告 趙載承 不服

被告 李秉旭 手決



1908년 5월 14일 수원-경성

역문

{2민공2호}

판결서 27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동북면東北面 만의동萬儀洞 거주 사민士民

송병두宋秉斗 38세

피고 경성京城 서서西署 만리현萬里峴 거주 사민士民

심사문沈士文

대리인代理人 심노원沈魯元 47세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송추松楸*를 함부로 벌채한 일은 이치에 어긋나기에 패소시킨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제가 20여 년을 성묘하지 못하다가 1892년 봄에 비로소 성묘하였습니다. 6대조의 국내局內 모든 안산案山과 청룡

* 송추(松楸): 산소(山所) 둘레에 심는 나무의 총칭을 말한다.

靑龍**에는 세 성姓의 사람들이 입장入葬해 있었습니다. 한 곳은 마을 사람 권성오權成五의 무덤이고, 다른 곳은 읍내에 거주하는 윤일성尹一成, 조석칠曹錫七의 무덤이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니, 윤일성은 스스로 이치에 어긋난 것을 알고 파내어 갔습니다. 조석칠은 오랫동안 파내지 않기에 관에 정소呈訴하여 파냈습니다. 권성오도 그 스스로 파내서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와서 위의 사람들이 각자 투장偷葬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마을 사람들의 대답은, '본래 송씨宋氏 집안의 사산四山 국내인테 송씨 자손이 다른 지방에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송추를 돌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손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산 아래에 사는 공경삼孔敬三도 그 가운데 참여하여, 저의 산지기[山直]가 되어 수호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즉시 임명장[差帖]을 내어주고 그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1899년 7월경에 국내의 송추를 공경삼과 권중집權仲執 두 사람이 합부로 벌채하였습니다. 따라서 즉시 거소擧訴하여 속죄를 받은 후에 완문完文***을 작성하였고, 전후의 문권[文軸]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의 산이라고 자칭하고, 수목樹木을 벌채한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공성래孔聖來가 저의 국내에 투장하였기에 정소하여 관에서 법대로 파냈습니다. 그러니 이 산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는 것은 변론하지 않

** 청룡(靑龍) : 풍수지리에서 주산(主山)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다. 여럿인 경우에는 내청룡과 외청룡으로 나눈다. 오른쪽은 백호(白虎)이다.



풍수개념도(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61쪽.)

*** 완문(完文) :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던 증명서이다.

아도 명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무슨 이유로 이 산의 송추를 벌채한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所供)은, “저의 5대조 산을 100년 동안 폐단 없이 수호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 1899년 7월경에 원고가 저의 산을 수호하는 공경삼이 ‘수목을 벌채하였다.’고 하며 관에 정소하였습니다. 제가 잡혀가 대질(質下)한 후에 한 그루의 초목도 다시 합부로 벌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완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일의 사정을 듣고, 수원군水原郡에 기소起訴하였습니다. 제사[題旨] 내에 ‘어떻게 경계를 넘어서 침범하여 빼앗을 이치가 있겠는가? 진실로 송병두宋秉斗가 원래 수호한 땅이 아니므로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올봄에 이르러 저의 산국 내에 송추를 벌채하였는데 원고가 그의 산 경계 안이라고 이와 같이 송사訟事로 다투니 진실로 이치에 어긋납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에게는 완문이 있고, 피고에게는 제사(訴題)가 있는데 그동안 어찌 서로 만나서 경계를 정하여 잘 마무리하지 않았는가? 해당 나무를 벌채한 곳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자신의 산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여러 도형(圖形)을 살펴보니, 이왕에 공경삼과 조석칠이 입장하여 파내어진 땅의 경계 내라고 하였다. 또한 지난 1899년에 공경삼과 권오성 두 사람이 합부로 벌채하여 피소被訴되어 패소한 곳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니 곧 원고의 산 국내에 피고가 벌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를 이치에 어긋나므로 패소시킨다.

1908년 5월 14일

수원군水原郡

군수 서병숙徐丙肅

주사 차재형車載衡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기한 내에 상소(申訴)할 수 있다.

원문

{二民控二號}

判決書 廿七號

原告 水原郡 東北面 萬儀洞 居士民

宋秉斗 年三十八

被告 京城 西署 萬里峴 居士民

沈士文

代理 沈魯元 年四十七

判決要旨

原告에 訴求에 對하야 被告는 犯斫松楸가 事係無理호기로 置之落科호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卞과 證據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矣身이 二十餘年을 不能省墓라가 壬辰春에 始爲省墓 則五六代祖局內 俱案靑龍에 有三姓人入葬이온디 一則洞民權成五之塚이요 二則邑內居尹一成曹錫七之塚이기로 往質三隻 則尹一成은 自知理屈而掘去호고 曹錫七은 屢限不掘이기 呈訴官掘호고 權民亦渠自掘移이온바 招致洞民 問其右人等 各自偷葬之理由 則洞民所答이 本是宋氏家四山局內 而宋氏子孫이 落在異鄉하야 多年不省楸호 所以로 知其無后而然也라호옵고 其時에 山下居孔敬三도 亦參其中하야 自請原告山直守護 故로 卽出差帖 以使之守護矣터니 不意己亥七月分에 局內松楸를 孔敬三權仲執 兩人이 無難斫伐이옵기 卽爲舉訴호와 受贖後에 成完文이온바 前後文軸이 所在이온디 被告가 何無一言타가 今乃自稱渠山호고 斫伐樹木이플 豈成說乎잇가 年前에 孔聖來가 偷葬於局內라가 呈訴而自官法掘이온즉 此山之所有權이 在於原告가 不卞可明이온디 被告以何由로 斫伐此山之松楸乎잇가호며 被告

所供은 矣身五代祖山藪百年無弊守護矣터니 不意去己亥七月分에 矣山守護호는 孔敬三이 斫伐樹木호여다호고 原告가 呈訴于官하야 捉致質卞後에 一草一木을 更不得犯斫之意로 成完文以給原告이온바 矣身이 追聞事由호고 起訴本郡 則題旨內 豈有越界侵奪之理乎아 苟非宋班元來守護之地어든 更勿侵漁 等因이옵는디 至於今春에 矣山局內松楸斫伐 而原告가 稱以渠山界內라고 如是爭訟이 誠爲非理라호마 原告之有完文호고 被告之有訴題 而伊來에 亦何無相見定界妥貼耶아 該斫伐木處를 原被告가 皆曰 渠山云 而考諸圖形 則以往孔民及曹民入葬被掘之地界內라호고 且去己亥年에 孔權兩民犯斫而被訴落科處라호니 此卽原告山局內에 被告가 犯斫이라 是로 以하야 被告를 置之無理落科호

隆熙二年 五月 十四日

水原郡

郡守 徐丙肅

主事 車載衡

此判決에 對하야 被告는 期限內 申訴호를 得호



1908년 7월 7일 수원-수원

역문

[2민상제33호]

판결서 제31호

수원군水原郡 북부北部 신평동新豊洞 거주 수원시정연구원
 원고 일본인 관구선지조關口仙之助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산루동山樓洞 거주 수원학연구센터
 피고 최명윤崔明潤

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원고가 가진 피고의 1,500원^ㄷ 증표(證標)는 피고가 애초에 써주지 않았다고 하고, 또한 보증인(保證人)도 없고, 그 날인한 도장 역시 피고 이름의 도장이 아니며, 서표(書標)의 양식 또한 완전하지 않으니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갚게 할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조사(證査)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은 “제가 요리점(料理店)을 운영하는데 피고

가 작년 3월부터 빈번하게 왕래하여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리점을 장차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들어가는 비용의 부족액이 1,000원^ㄷ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밤에 피고가 본점에 방문하였기에 제가 피고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1,000환(圓)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현금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다시 말하기를 ‘지금 쓸 게 아니라 내년 봄에 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답하기를 ‘그때 가서 주선은 해 주겠다.’고 하므로, 또한 제가 말하기를 ‘애매하게 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소유한 집터(家碁)를 전당잡힐 것이니 빚을 빌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대답하기를 ‘확장하는 요리점이 분명히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전당잡힐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저에게 청하기를 ‘올해 말 경채(京債)마감이 자못 급하니 1,500원을 잠시 빌려주면 오래지 않아 융통하여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있는 현금이 1,250원이니 250원은 빌려서 채워 주겠다.’고 하고 인천항(仁川港)에 가서 본국인(일본인)에게 빌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날 밤에 피고가 와서 금액이 채워졌는지 묻고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표증(標證)을 요구하니 한문(漢文)으로 증서(標)를 썼기 때문에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문 자구(字句)를 일본어 이로하(伊呂波)^{*}로 대서(代書)한 표증을 주며 날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가 날인을 응낙했기 때문에 올해 1월 31일을 기한으로 하고 액수대로 주었더니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당시의 소요^{**} 때문에 아직도 빚을 받지 못하였으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요청대로 기한을 연장했으나 역시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준엄하게 독촉하니 피고가 도리어 감정이 생겨서 ‘빌린 돈의 증서(標紙)는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갚을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본 수원군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질하는 마당에 피고

* 이로하(伊呂波) : 일본어 가나의 문자에서 ‘ん’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노래인 ‘이로하 노래(いろは歌)’에서 파생된 것이다. 과거에는 이 노래의 순서대로(いろは…) 가나의 순서를 매기기도 했는데, 중세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사전 등에 널리 이용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가, 나, 다’ 등의 표기 방식과 같은 것이다.

** 정미의병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 증표에 날인했다고 자백하였는데 억울하게 패소하여 이렇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은 “작년 10월에 목욕하기 위해 원고의 집에 갔었고, 11월에 동네 사람 김순구金順九가 생남례生男禮^{***}로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원고의 요리점에 따라 갔더니, 원고가 자기 누이로 하여금 술을 팔게 했으므로 비로소 양견례兩見禮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원고의 누이가 종종 내방하여 자연 친숙해졌으며 11월 6일에 이르러 원고의 누이가 고용인 차만대車萬大와 함께 와서 간청하기를 ‘나의 오빠(娚兄)가 지금 당전當錢 3,000냥을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어서 빚 증서(債標)을 써 왔으니 양력 12월 말일을 기한으로 하고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액수대로 빌려주었습니다. 원고의 누이가 또 추가로 500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또 거절하지 못하고 요청대로 빌려주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비로소 음력 12월 말일에 3,000냥만 추심하고 추가 지급한 돈 500냥은 아직도 추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원고가 약간의 세찬歲饌^{****}을 보내 와서 사례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에 직접 원고의 집에 갔더니 반갑고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습니다. 저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요리점을 개축하고자 하는데 경비의 부족액이 1,000원이다. 당신이 꼭 빚을 빌려주시오.’라는 뜻을 여러 차례 강청하였으나 끝내 응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자못 화가 난 기색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홀면床笏面에 시는 최진식崔鎭植에게 받을 돈 50,000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말하기를 ‘해당 빚돈(債錢)을 내가 만약 맡아서 받아 주면 내가 요청하는 돈을 그대가 시행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에 ‘이렇게 받기 어려운 것을 원고가 맡아서 독촉하면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응낙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원고가 저를 내방하여 통역을 요청하기에 이웃에 사는 고일남高一男을 불러 왔습니다. 원고가 말하기를 ‘어제 약속한 최진식에게 받을 돈을 내가 가서 독촉하려는데, 실증實證이 없으면 신뢰를 못하게 될 것이니 그대가 이왕에

*** 생남례(生男禮) : 아들을 낳고 스스로 축하하는 뜻에서 한턱을 내는 일이다.

**** 세찬(歲饌) : 연말이나 연초에 보내는 선물, 또는 설에 세배하러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말한다.

최진식에게 전당잡아 온 계권契券을 나에게 다시 전당하고 1,000원을 빌려 쓴 것처럼 증서(標)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응낙하지 않다가 결국 강청에 못 이겨 그 말대로 응낙하였습니다. 원고가 직접 1,000원의 가짜증서(虛標)를 써서 날인을 요청하기에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원고와 제가 여러 번 최진식 집에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원고가 500원을 먼저 빌려달라고 요청하므로 제가 마련하기 어렵다고 사양하자 원고가 크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핍박하는 언사까지 하고, 최진식 집에 여러 차례 왕래한 비용 30원을 물어내라고 하므로 가짜증서를 돌려주면 부비전浮費錢을 물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어떻게 경찰서에 거짓 소송을 하였는지 해당 경찰서에서 저를 불러 잡아가서 무수히 위협하다가 끝내 원고가 유죄임을 알고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원고가 다시 부비전을 독촉하므로 버틸 수 없어서 30원을 물어주었으며, 4월 초에 이르러 원고가 또 와서 말하기를 ‘100원만 주면 가짜증서를 돌려주겠다.’고 하므로 듣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원고가 수원군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치에 여긔나 패소하였는데, 또 이렇게 상소하니 제가 진술한 내용이 정말 지극히 원통합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참고하고 증언과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가 원고에게 1,000원의 가짜증서에는 날인하여 주었다고 하나 1,500원의 증표는 애초에 몰랐다고 하며 역시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해당 증표를 살펴보니 일본어로 이로하(伊呂波)를 썼고 ‘명치연호明治年號’를 썼으니 한국인이 증서를 쓰는 법과 의당 같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날인한 도장이 역시 피고의 성명 도장이 아니므로 해당 증표가 완전하지 않아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바가 있으므로 과연 원고의 진술도 제대로 주의注意하지 않은 것이다. 증사인證査人 고일남의 진술에 ‘피고가 원고의 요구 때문에 최진식에게 가져 온 증권을 원고에게 전당잡히고 1,000원을 빌려 쓰는 것처럼 하여 원고가 피고의 가짜증서를 직접 작성한 것을 참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1,000원의 가짜증서는 어디로 갔으며 1,500원의 가짜 수표(僞標)는 무엇에 근거하는 증거인가. 사정과 문적을 살펴보고 생각하니 원고의 청구는 진실로 이유가 없다. 수원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해당 군에 돌려보낸다.

1908년 7월 7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김사묵金思默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二民上三三號}

判決書 第三十一號

水原郡 北部 新豐洞 居

原告 日本人 關口仙之助

同郡 南部 山樓洞 居

被告 崔明潤

要旨

原告의 申訴는 棄却事

原告의 持하마 被告의 一千五百円證標는 被告가 初不書給라하고 亦無保證이며 其所捺章이 亦非被告의 姓名章이오 書標式樣이 又不完全하니 該金額을 被告에게 徵償할 理由가 無하事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할 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卜과 證查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原告가 以料理店爲業인디 被告가 自昨年三月로 頻數來往하야 漸至親密하되 原告가 其料理店을 將欲擴張이나 所入費不足額이 爲一千円이라 昨

**** 판결서 원문에는 '京畿裁判所'란 글자가 없으나 판결서 용지의 판식에 찍힌 도장에 근거하였다.

年十二月 二十日夜에 被告가 來訪本店이기로 原告가 對被告하야 其事實을 說明하고 要借壹千圓하든 答以今無現金云이옵기 更言호디 非即今所用이라 用於明春이라하든 又答以其時에는 第當周旋云故로 又曰 泛言이 不如確定이라 吾之所有家垆을 典執하리니 勿慮借債하라하든 答以擴張하든 料理店이 自在하리니 不必爲慮오 亦不要典當이라하고 反請原告曰 當此 年終하야 京債磨勘이 頗急하니 金一千五百円을 暫借하던 不久에 循環備報라하옵기 答以我之現存金이 爲一千二百五十円이니 二百五十円을 借貸 充給이라하고 往借於仁港本國人處而還來하든 其翌夜에 被告來到하야 問 金額充數하고 即要給付故로 要其標證하든 以漢文으로 書標故로 未解其 文意하야 更以漢文字句로 和伊呂波하야 代書標證以給하고 請其捺章하든 被告가 應諾捺章이옵기 以今年一月三十一日爲限하고 如數出給矣러니 過 限不報故로 往問理由則 稱以時擾로 尙未捧債하얏시니 容俟寬限하라하옵 기 依請寬限이오나 亦不報償故로 屢次峻督하든 被告가 反生憾情曰 借金 標紙가 非吾所書라하고 無意報償이옵기 起訴於本郡하야 質卜之場에 被告 가 以捺章於證標로 自服이온디 抑鬱敗訴하야 至此申訴라하고 被告의 答 供은 昨年十月에 沐浴次往于原告家하얏고 十一月에 因洞人金順九의 生 男禮設卓하야 隨往原告店하든 原告가 使其妹로 賣酒故로 始敍兩見之禮 하고 談話而歸러니 其後에 原告妹가 種種來訪하야 自然親熟이오며 至于 十一月初六日하야 原告의 妹가 與其傭人車萬大로 來懇曰 吾之甥兄이 今 有當錢三千兩急用處하야 書借債標以來矣니 以陽曆十二月晦日爲限하고 期於借給하라하기에 不忍恕却하야 如數借給하든 原告의 妹가 又請加借 五百兩이옵기 又不忍恕却하야 依請貸給矣러니 過限後 始於陰曆十二月晦 日에 三千兩만 推尋하고 加給錢五百兩은 尙未推尋이온바 其後原告가 餽 遺如干歲饌故로 爲其回謝하야 今年正月六日에 躬往原告家하든 欣然款接 하고 請于被告曰 吾將改築料理店而經費不足金이 爲一千円이니 君須借債 之意로 屢屢強請이오나 終不應諾則原告가 頗有愠意이기로 思不獲已하야 床笏面居崔鎮植處에 有所捧條五萬兩事을 說明하든 原告曰 該債錢을 吾 若擔當捧給이면 吾之所請條를 君其施行乎아하기에 被告思量에 如此難捧 을 原告가 擔當督促이면 或可曰有助할가하야 唯唯應諾矣러니 其翌日에

原告가 來訪被告하야 要請通辯故로 請來隣居高一男하즉 原告曰 昨日所約崔鎮植處所捧條를 吾將往督인디 如無實證이면 被不見信하리니 君이 已往에 崔鎮植處에 典來하 契券을 吾에게 轉典하고 金一千円을 借用하 樣으로 成標以給하라하기에 被告가 初不應諾이라가 竟被強請하야 依其言應諾하즉 原告가 自書一千円虛標하야 要請捺章하기로 捺章以給하고 原告與被告로 數次專往於崔鎮植處하야 未逢而虛歸하온지라 其後原告가 要請五百円先借故로 被告가 謝以難辦하즉 原告가 大發憾情하야 至有逼迫言辭하며 崔鎮植處數次來往費三十円을 徵給하라하옵기 虛標를 還給하면 浮費錢을 徵給爲言矣러니 原告가 何以誣訴於警察署이든지 自該署로 招致被去하야 無數威脅이라가 竟知原告之有罪하고 卽爲放送이온디 其後에 原告가 更督浮費錢故로 不能抵當하야 三十円을 徵給이오며 至于四月初에 原告가 又爲來言하되 一百円만 施給하면 虛標을 還給云이옵기 拒以不聽矣러니 原告가 起訴於本郡하야 理屈落科이온디 又此申訴이오니 被告所供가 果是至寃이라하마 參互兩供하고 聽准證查하즉 被告가 原告에게 一千円虛標에는 捺章以給이라하나 一千五百円證標는 初不知云이며 亦不捺章이라하고 考覽該標하즉 和用伊呂波하고 書以明治年號하얏시니 韓人의 書標하는 法이 宜不如是뿐더러 其所捺章이 亦非被告의 姓名章인즉 該標가 不完全하야 無足爲據하 所以로 原告의 自供에도 果是不善注意라하얏시며 證查人高一男所供에曰 被告가 原告의 要求를 因하야 崔鎮植處에 持來하 證券을 原告에게 典執하고 一千円을 借用하 樣으로 原告가 被告의 虛標를 自手書出하는 것을 參見이라하얏는디 一千円虛標는 歸於何處이며 一千五百円僞標는 據何爲證이지 參情究跡에 原告訴求가 誠甚無理하지라 本郡判決이 妥當하기로 繳還該郡하노라

隆熙二年 七月 七日
 判事 金思默
 主事 羅基貞



1908년 7월 8일 인천-수원

역문

판결서 제33호

인천군仁川郡 황등천면黃等川面 중림重林 거주
 원고 장덕준張德俊
 수원군水原郡 매곡면梅谷面 천천동泉川洞 거주
 피고 최인기崔麟基

요지

제1심 판결은 폐기한다.

피고*는 피고의 산관山坂 국외局外 우마장牛馬場에 입장한 원고의 무덤을 소송하여 굴이掘移하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과 증거조사[證查]에 의거하여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은 “저의 8대 이하 선영先塋이 시흥군始興郡 남면南面 아방리牙方里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원고가 어머니를 저의 국

*판결서 원문에는 '原告'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피고'의 잘못으로 판단하였다.

내局內의 당금지지當禁之地^{**}에 투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 소송하여 승소하고 이장移葬의 다짐(拷音)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무리하게 상소하였습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술(供辭)과 도형(圖形)을 참고하고 증언과 증거를 살펴보니, 증사인證查人 강치복姜致福과 양완근梁完根의 진술에 “처음에 시흥군이 도형을 그렸을 때 원고의 입장처入葬處가 피고의 산소 국내를 침범한 줄은 비록 이미 알았으나 관령官令에 따라서 부득이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천군수果川郡守가 다시 도형을 그릴 때에는 원고의 입장처를 피고의 산국 밖에 정하였는데 정말 공정하였으므로 진심으로 날인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입장처가 피고의 산국 밖에 있고, 여러 사람들의 공동의 우마장牛馬場이니, 피고가 소송하여 굴이掘移하고자 함이 진실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8년 7월 8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김사묵金思默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三十三號

仁川郡 黃等川面 重林 居

原告 張德俊

水原郡 梅谷面 泉川洞 居

^{**} 당금지지(當禁之地) :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 지내는 것을 금하는 땅이다.

^{***} 판결서 원문에는 '京畿裁判所'란 글자가 없으나 판결서 용지의 판심에 찍힌 도장에 근거하였다.

被告 崔麟基

要旨

第一審 判決은 廢棄事

原告는 被告의 山坂局外 牛馬場에 入葬한 塚을 被告가 訟掘코자함은 其理由가 無한 事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할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查에 據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被告의 八代以下先塋이 在於始興郡南面牙方里이온마 昨年 六月에 原告가 偷葬其母於被告山局內當禁之地故로 訴於本郡而得捷호야 至捧移葬之 拷音이온디 原告가 無理申訴라호나 參以供辭與圖形호고 聽准證查호는 證查人 姜致福 梁完根供에 曰初次始興郡圖形時에 原告의 入葬處가 犯被告山局內인줄은 雖已知之이오나 牽於官令호야 不得已捺章矣러니 及至果川郡守再次圖形時에 原告의 入葬處를 定以被告山局外호미 果是公正故로 實心捺章이라호마 原告入葬處가 在於被告山局外요 亦係衆人의 共同牛馬場인즉 被告가 期欲訟掘호미 誠不妥當호지라 是以로 原告의 訴求가 其理由가 有한 事

隆熙二年 七月 八日

判事 金思默

主事 羅基貞



1908년 7월 20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50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태촌면台村面 일동一洞 거주

박정진朴貞鎭 91세

피고 수원군水原郡 태촌면台村面 이동二洞 거주

안순구安順九 41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론[答辯]할 이유가 없다. 원고와 피고의 분묘 사이의 길로써 경계를 삼고, 원고의 분묘 근처 땅에서 벌채한 소나무 79그루[株] 값을 피고가 물어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소장訴狀과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5대조의 분묘가 태촌면台村面 이동二洞 뒷기슭에 있으며, 피고의 선산과 서로 위·아래입니다. 지난 1866년에 제가 다른 곳에서 무덤 아래쪽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피고의 집안에서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벌채하였기에 제가 정소모訴하

여 금단했습니다. 그 후인 1885년에 또다시 함부로 벌채하기에 정소하여 벌채를 금하였는데, 작년에도 간간히 벌채하고 또한 올해 4월 20일에 그의 산과 저의 산을 모두 아울러 벌채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분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연유로 정소하오니 제 산의 구목[丘木]값을 징수해 주십시오.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중간의 길로 삼았는데, 피고가 저의 산 경계 내에서 올해 함부로 벌채한 것이 79그루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은 “저의 7대조의 분묘가 있는 땅을 거의 100여년 금양[禁養]하였습니다. 근년에 원고가 다른 곳에서 산 아래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저의 산국[山局]에 있는 고총古塚 하나를 금화벌초[禁火伐草]하기 시작하였고, 수십 년 전부터 시향[時享]을 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국내[局內]의 송추[松楸]를 쓸 데가 있어서 간간히 벌채하였는데, 원고가 공연히 시비를 걸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초여름 사이에 국내에서 송추를 벌채하였다고 원고가 정소모訴하였습니다. 근거 없이 다투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동二洞에 사는 증사인[證人] 김광현[金廣鉉]의 진술[所供]은, “안순구[安順九]의 선조 산과 박정진[朴貞鎭]의 선조 산이 서로 위·아래에 있었습니다. 산국은 안순구의 산이라고 하고, 25년 동안 박정진이 수호 및 금양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일동一洞에 사는 증사인[證人] 이명중[李鳴鍾]의 진술은, “예전부터 박정진과 안순구가 서로 다투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누가 주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진이 무덤을 여러 대 수호하였고, 20년쯤 전에 봉분을 고치고 사초[莎草]하여, 스스로 금양하고 수호했다는 말은 대략 들었습니다. 해당 길의 아래는 안순구가 입장하여 수호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각자 수호하였다고 하니 누가 옳은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안순구가 소나무를 벌채하여 팔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경계를 다투는 것을 조사하니, 모두 상고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동과 이동 증사인의 진술에서 모두 “원고가 수십 년 동안 수

* 금화벌초[禁火伐草]: 무덤에 불을 조심하고 때때로 풀을 베고 하여 무덤을 잘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

** 시향[時享]: 절기마다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호하고 금양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원고는 전혀 산국이 없이 단지 수호만하고, 상·하의 산국 전체가 피고의 것이라고 통칭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길을 경계로 삼는 것이 옳다. 피고가 매번 경계를 넘어서 벌채하는 것이 어찌 원고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요지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를 패소시킨다.

1908년 7월 20일

수원군水原郡

군수 서병숙徐丙肅

주사 차재형車載衡



원문
判決書 五十號

原告 水原郡 台村面 一洞 居

朴貞鎭 年九十一

被告 水原郡 台村面 二洞 居

安順九 年四十一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의 訴求에 對하여 答不할 理由가 無히니 原被告墳墓間 以路爲 界하고 原告의 墳墓近地에 斫伐松木七十九株價를 被告가 徵給事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訴狀과 質下에 照하여 認直事 此訟에 對하여 原告의 陳供은 以爲矣身五代祖墳墓가 在於台村面二洞後麓이온바 被告에 先山과 相

爲上下矣러니 去丙寅年 矣身이 自他處로 移居于墓下이온디 戊辰年에 被告家에서 越境犯斫矣山局內이옴기 矣身이 呈訴禁斷이러니 其後에 乙酉年又爲犯斫이기 呈訴禁斫하와는디 昨年에도 間間斫伐하며 又於今年四月二十日에 渠山及矣山을 并爲斫伐이온즉 豈不忿恨乎잇가 緣由로 呈訴이오니 矣山邱木價를 徵給하소서 彼此定界는 中間에 以路爲界옴고 矣山界內 今年犯斫이 不齊七十九株라하며 被告陳供은 矣身七代祖墳墓地 幾百年禁養이옴더니 近年에 原告가 從他處移居山下하와 矣山局內에 有一古塚을 始爲禁火伐草하고 自數十年以後로 時享이온바 幾年內에 矣身에서 局內松楸를 有所用 則間間斫取인디 原告가 空然是非禁之터니 今年初夏間에 局內松楸斫伐 則原告가 至於呈訴하오니 爭甚無據라하며 證查人二洞居金廣鉉所供은 安順九先祖山與朴貞鎭先祖山相上下 而山局則安民之山云이고 二十五年來朴貞鎭이 守護禁養이라하며 證查人一洞居李鳴鍾所供은 自前으로 每聞朴安兩民相爭之說하고 誰某爲主는 未詳知오며 朴塚이 屢代守護而近二十年前에 改封莎草하고 自爲禁護之說을 略聞이고 該路下則安哥가 入葬守護亦久矣 則各自守護云하니 未知孰是옴고 今番에 安哥가 斫伐松木發賣이다하니 查此兩隻之互相爭界가 具無可考之證하고 至於兩洞民人之供에 皆曰原告가 數十餘年來守護禁養云인직 原告之小無山局하고 但以守護하며 上下全局이 通稱被告之物이 不可하니 以路爲界가 可也라 被告之每每越界斫伐이 無奈冒蔑原告之事也리요 是로 以하야 要旨와 如히 判決함 被告를 置之落科함

隆熙二年 七月 二十日

水原郡

郡守 徐丙肅

主事 車載衡



1908년 7월 25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37호

수원군水原郡 남부면南部面 지동池洞 거주

원고 이춘일李春日

수원군水原郡 남부면南部面 우만리牛滿里 거주

피고 최덕삼崔德三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폐기한다. 원고는 피고의 산 경계 내에 함부로 벌채한 송추松楸의 그루(株)를 계산해서 물어 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조사(證査)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4대 이하의 선산이 남부면南部面 우만리牛滿里에 소재하고, 피고의 산과 접하였습니다. 올해 1월경에 제가 저의 산에 있는 송추를 벌채하였는데, 피고가 자기의 산을 함부로 벌채한 것처럼 해서 수원군水原郡에 기소起訴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소(申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변론(答辯)은, “5년 전에 원고의 형제가 모두 순검巡檢으로 저의 산 경계 내에 능장勒葬하였습니다. 원고와 저의 힘이 현격하게 다르니 비록 금장禁葬할 수는 없었지만 송추는 제가 지금까지 금양禁養하였는데, 원고가 거리낌 없이 함부로 벌채하였으므로 수원군에 기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치에 맞지 않게 상소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헤아리고 증언과 증거를 살펴보니, 원고와 피고 양쪽 산의 경계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힘을 빙자해서 피고의 산 경계 내에 능장한 지가 지금까지 5년이 되었다. 피고가 비록 금장하지 못하였지만, 송추의 경우 이전처럼 금양을 한 사실이 이장里長 문백준文伯俊과 원고의 묘지기(墓直) 이춘억李春億의 진술로 명확하다. 그뿐만 아니라 함부로 벌채한 송추 중에서 큰 것은 기와집의 연목椽木과 초가草家の 도리목道里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5년 이상 금양을 한 나무는 아니다. 원고가 차청입실(借廳入室)**할 계책으로 다른 사람의 산을 선점하고, 나중에 송추를 벌채한 것이 실로 매우 터무니없다. 수원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수원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8년 7월 25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감사묵金思默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三十七號

* 도리목(道里木) : 지붕 서까래를 얹기 위해 기둥과 기둥 또는 벽체 위에 얹는 나무이다.

** 차청입실(借廳入室) : 남의 대청(大廳)을 빌려 쓰다가 안방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 남에게 의지하다가 차차 그의 권리까지 침범함을 이르는 말이다.

*** 판결서 원문에는 ‘京畿裁判所’란 글자가 없으나 판결서 용지의 판심에 찍힌 도장에 근거하였다.

水原郡 南部面 池洞 居
原告 李春日

同郡 同面 牛滿里 居
被告 崔德三

要旨
原告의 申訴는 廢棄事 原告는 被告山界限內에 犯斫한 松楸를 計株徵給함이 可할 事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할 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查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原告의 四代以下先山이 在於南部牛滿里하야 與被告山接界인바 今年正月分에 原告가 斫伐矣山松楸러니 被告가 以渠山犯斫樣으로 起訴於本郡하야 枉歸落科이옵기 所以 申訴라하나 被告의 答下은 五年前에 原告의 兄弟가 俱以巡檢으로 勒葬於被告山界限內이온바 以強弱之懸殊로 雖未得禁葬이오나 松楸則 被告가 至今禁養矣러니 原告가 無難犯斫 故로 訴於本郡而 得捷이온디 原告가 無理申訴라하나 參互兩供하고 聽准證查하든 原被兩山이 界分南北이거늘 原告가 藉勢勒葬於被告山界限內하지가 今爲五年에 被告가 雖未得禁葬이나 松楸는 如前禁養한 事實은 里長文伯俊과 原告의 墓直李春億의 陳供이 明確할 뿐더러 犯斫한 松楸가 大者는 如瓦家椽木과 草家道理라하니 決非五年後禁養之木이라 原告가 以借廳入室之計로 先占他山하고 後斫松楸함이 誠極無據하더라 本郡判決이 妥當하기로 繳還該郡하노라

隆熙二年 七月 廿五日
判事 金思默
主事 羅基貞



1908년 7월 30일 수원-용인

역문

{2민공12호}

판결서 제5호

수원읍水原邑 거주

원고 최명윤崔明允 대리인 최경현崔敬鉉

수여면水余面 김량리金良里 거주

피고 이기홍李基弘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물건값[物價] 당오전[當枰]* 7천 몇 백 냥을 이식규례利殖規例에 따라 2분의 이자[二分邊]로 계산하여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지난 해 음력 11월경에 피고가 상인으로 물건을 가져가서 물건값 당오전[當枰] 7천 몇 백 냥을 여러 달 동안 갚지 않았습니다. 본년 음력 3월 20일 전후에 피고를 길에서 만나서 그 물건값을 매우 오랫동안

* 당오전[當枰] : 당오전으로 치는 셈평, 즉 당오평(當五坪)을 말한다. 당오평은 고종 때 발행한 당오전(當五錢)의 가치가 떨어져 엽전 1냥과 당오전 5냥을 같은 값으로 셈하게 된 계산을 의미한다.

안 갚지 않은 것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손해를 2푼의 시변市邊**으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도합 12,605냥을 증서[票]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봉차捧次*** 원금에서 몇 백 몇 냥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述은, “지난 해 음력 10월에 시작하여, 장사하는 물건을 원고와 여러 차례 거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건값 중 남아 있는 금액이 과연 7천 몇 백 냥이 됩니다. 그런데 이내 12월경에 폭도를 만나, 얼마의 돈과 문서 및 책자冊子를 모두 잃어버려서 물건 값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거의 모두 받기 어렵게 되어서 원고에게 갚아야 할 것을 진작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시변으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과연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갚아야 할 원금에서 몇 백 몇 냥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또한 소상히 그 내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측의 진술을 들어보니, 실로 마땅히 갚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나 2푼의 시변은 확실히 불가하다. 그러니 이식규례에 따라 매달 2푼의 이자로 해당 금액을 완료일까지 상계相計하게 하되, 피고가 마땅히 갚아야 할 원금에서 남은 액수가 얼마인지와 언제부터 이자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거래책자를 고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피고가 음력 9월 그믐 안에 다 갚겠다고 군정郡庭에서 기한을 정하였으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8년 7월 30일

용인군龍仁郡

군수서리郡守署理 주사 이재홍李在弘

** 시변(市邊) : 시골 장판에서 돈놀이하는 데 붙는 변리(邊利)를 말한다. 곧 닷새 동안에 변리를 보통 2% 씩 내는 것이다.

*** 봉차(捧次) : 사계치부법(四介治簿法)에 의하면, 주어지는 것을 급차(給次) 또는 입(入)이라고 쓰고 받아지는 것을 봉차(捧次) 또는 거(去)라고 쓴다.

원문

{二民控一二號}

判決書 第五號

水原邑 居

原告 崔明允 代理人 崔敬鉉

水余面 金良里 居

被告 李基弘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物價 當秤 七千餘百을 依利殖規例호야 以二分邊으로 計報함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昨年 陰曆 至月分에 被告가 以商賈로 物件을 持去호고 價錢 當秤 七千餘百을 屢月不報이온디 本年 陰曆 三月 念間에 逢着被告於路上호야 責其物價之許久不報호고 這間損害로 二分市邊을 計算호야 并本利 一萬二千六百五兩을 捧票이오나 捧次本額의 幾百幾兩零數는 今不得詳知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上年 陰曆 十月爲始호야 商販物貨를 原告處에 屢次去來이옵다가 物價零在가 果爲七千餘百이온바 乃於臘月分에 逢被暴徒호야 如干錢兩과 文書冊子를 盡被見失호고 物價捧次 各人이 舉皆難捧으로 原告의 當報를 趁不得辦償이옵더니 原告가 責以市邊計報이옵기 難拂其意호야 果爲成票以給이오나 當報本額에 幾百幾兩零數는 亦未昭詳記歷이라호니 聽准兩供호니 實是當報當捧이나 至若二分市邊호야는 確係不可호니 依利殖例호야 每朔以二分邊으로 該錢完了日까지 相計케호되 被告當報本額에 零數幾何와 何日爲始計邊은 兩隻이 考閱去來冊子호야 施行이 爲可인바 被告가 以陰曆 九月 晦內 備報로 郡庭定限이기 茲에 判決事

隆熙二年 七月 三十日
龍仁郡
郡守署理 主事 李在弘



1908년 7월 31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4호

수원읍水原邑 거주

원고 최명운崔明允 대리인代理人 최경현崔敬鉉

수원읍水原邑 거주

피고 김의경金義卿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빚진 돈의 잔금 당오전[當浬] 2,928냥兩을 마련해서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지난 1905년에 피고와 장사한 물건 값의 거래가 있어서 1907년 7월 말에 만나서 거래를 계산해 보니 제가 받아야 할 돈이 당오전 [當浬] 9,528냥 5전이었습니다. 피고가 다음 달 초 9일에 지급하겠다고 증서[票]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한까지 두 차례 갚은 것이 겨우 5,732냥 5전이었고 잔금은 지금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850냥은 저의 일을

* 원문에는 '이유'란 글자가 없으나 번역하면서 추가하였다.

봐주는 사람인 박덕균(朴德均)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였지만, 박덕균은 저에게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물건 값으로 과연 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1907년 8월과 9월 2달 동안 이미 마련해 준 것이 도합 5,750냥입니다. 그 후 원고의 심부름꾼(差人) 박덕균이 해당 전표(錢票)를 가지고 와서 독촉하기에 의심 없이 내어 준 것이 850냥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지금 저에게 다시 물리고자 하니 실로 이치에 어긋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제가 마땅히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참고하니 박덕균은 곧 원고의 심부름꾼이었다. 그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받는 것을 위임하였으니 심부름꾼이 함부로 쓴 것을 피고에게 다시 물리는 것은 실로 일의 이치에 어긋난다. 해당 증서의 잔금 중에서 감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양쪽의 진술에서 모두 잘못된 계산이라고 말하였고, 또 피고는 마땅히 갚아야 할 2,928냥을 음력 9월 그믐까지 다 갚겠다고 진술하였기에 이에 판결한다.

1908년 7월 31일

용인군(龍仁郡)

군수서리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第四號

水原邑 居

原告 崔明允 代理人 崔敬鉉

本郡邑 居

被告 金義卿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所負錢在條 當坪二千九百二十八兩을 備報함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原告의 主張은 去乙巳年에 與被告로 有商販物價去來호야 丁未七月晦에 面計去來 則原告의 捧次錢이 當坪九千五百二十八兩五錢이온바 被告가 以翌月初九日出次로 成票이옵더니 及其限月에 兩次所報가 僅爲 五千七百三十二兩五錢이옵고 零在는 于今不報이온디 其中八百五十兩은 原告의 看事人朴德均에게 出給이라호으나 朴不拈据於原告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以物價로 果有成票이오나 丁未八九兩朔에 已爲備報者 合五千七百五十兩이옵고 其後原告의 差人朴德均이 該錢票를 帶持來督이옵기 無疑出給이 爲八百五十兩이온디 原告가 今欲還徵於矣身호오니 實爲無理이오며 其餘錢額은 矣身의 當報라한바 參互兩供호니 朴德均은 卽原告差人이라 使其差人으로 委任收捧인즉 差人犯用을 還徵於被告가 實非事理라 該票在錢中 計減함이 妥當이고 原被告에 與受錢額도 小有相左나 兩供이 俱曰 誤算이라호며 被告의 當報條二千九百二十八兩은 以陰曆九月晦內備報로 納供이기 茲에 判決事

隆熙二年 七月 三十一日

龍仁郡

郡守署理 主事 李在弘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908년 7월 31일 한성-수원

역문

{용2민제508호}

융희2년 제157호

판결서

한성漢城 남부南部 수구문水口門 안 상민商民
원고 심의준沈宜俊

수원군水原郡 상민商民

피고 신영헌申永憲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각하(却下)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의 판결에 불복하고 본원에 상소하였다. 원고·피고 양측의 진술(供辭)과 1심 서류를 조사해보니, 본안本案의 권리자는 김학수金學洙이고 원고는 일시적으로 김학수의 지시에 따라 왕래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해당 안건과 무관한 원고를 권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요지와 같이 판결한다.

1908년 7월 31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홍종익洪鍾億

판사 홍우석洪祐皙

판사 김기조金基肇

판사 송진옥宋振玉

주사 노병수魯丙洙

1908년 7월 31일 전시宣示

원고 심의준沈宜俊 인

피고 신영헌申永憲

원문

{隆二民第五〇八號}

隆熙二年 第一百五十七號

判決書

漢城 南部 水口門內 商民

原告 沈宜俊

水原郡 商民

被告 申永憲

判決要旨

原告申訴는 却下함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함

理由

原告가 被告에 對하야 漢城裁判所 判決에 不服하고 本院에 申訴인바 原被

兩方の 供辭와 一審書類를 取調하니 本案權利者는 金學洙오 原告는 一時
間 金學洙의 指使를 從하야 往來홀뿐이거늘 被告가 該案에 無關호 原告를
權利者라고 云호은 可치 못호은지라 是로 以하야 要旨와 如히 判決호

隆熙二年 七月 三十一日

平理院

裁判長 洪鍾億

判事 洪祐皙

判事 金基肇

判事 宋振玉

主事 魯丙洙

隆熙二年 七月 三十一日 宣示

原告 沈宜俊 印

被告 申永憲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8년 6월 1일 남양-고양

역문

융희2년 6월

판결서 제4호

원고 남양군南陽郡 장안면長安面 석포石浦 거주 정운모鄭雲謨

피고 고양군高陽郡 구지도면求知道面 내성동內城洞 거주 지보현池甫玄

피고 경성京城 서부西部 귀농리歸農里 거주 유성운俞聖云

판결요지

피고 유성운俞聖云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그 도매盜買한 논과 밭을 해당
주인인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저의 묘위답墓位畝* 3두락과 묘위전墓位田** 1일반경一日半
耕이 고양군高陽郡 구지도면求知道面 결석리結石里에 있습니다. 이경선李敬
善에게 산을 수호하면서 논과 밭을 갈아먹게 하였더니 이 논과 밭을 이경
선이 지보현池甫玄으로 하여금 거간居間해서 유성운에게 방매放賣하였습

* 묘위답(墓位畝) : 소출(所出)을 묘소(墓所)의 제사 비용으로 쓰게 지정된 논이다.

** 묘위전(墓位田) : 소출(所出)을 묘소(墓所)의 제사 비용으로 쓰게 지정된 밭이다.

니다. 그리고 이경선이 밤을 타서 도주하였으니 이른바 매매한 위조 문권을 관정官庭에서 효주爇周^{***}하고, 묘토墓土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지보현의 진술(供稱)은, “과연 이경선의 말을 믿고서 지난 1905년경에 유성운에게 그 논과 밭을 거간해서 방매하였습니다. 어찌 이번에 정운모鄭雲謨가 구문권을 가지고 추심하고자 와서 고소할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매盜賣한 이경선이 지금 이미 도주하였으니 땅은 비록 정운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유성운이 샀던 금액은 그 누가 물어 주겠습니까? 유성운은 완전히 저에게 위임하였으니 변론하러 오지 않고 문권文券을 내어 주었으므로 제출합니다. 문권에 비추어 처리하고 판결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유성운을 호출했으나 그가 오지 않은 것은 도매한 죄를 스스로도 알기에 그러한 것이다. 지보현이, 날카로운 심문을 할 필요도 없이 거간해서 방매한 일의 실상을 말한 것은 간사한 짓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술에 의거하고 문권을 헤아려보니 원고에게 있는 구문권과 그 당시 영읍營邑의 완문完文은 명확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리고 피고에게 있는 신문권에는 이경선에게 월매越賣한 문권의 논 주인을 ‘정춘성鄭春聖’으로 적혀 있었다. 원고가 “정씨 성씨는 같지만 ‘춘성’이라는 이름자는 곧 원고의 종 이름인데, 이는 이경선이 묘지기(墓直)로서 비록 묘주墓主의 종 이름은 알았지만, 이름자 중에서 ‘성聖’자는 ‘성聖’자가 아니라 곧 ‘성成’자이다.”라고 진술(納告)하였으니 허위문권임은 여러 가지 안전에 있어 확실하게 의심할 것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묘지기 이경선이 도망친 것은 결국 도매를 범한 바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렇게 도망갔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조 문권은 관정官庭에서 효주하고, 해당 논은 원고에게 내주는 것이 옳다. 이에 판결한다.

1908년 6월 1일

*** 효주(爇周): 어떤 글의 글자를 ‘爇’자 모양의 부호를 그려서 지워 버리는 일을 뜻한다.

고양군高陽郡

고양군 수서리 군주사 이태정李泰定

원문

隆熙二年 六月

判決書 第四號

原告 南陽郡 長安面 石浦 居 鄭雲謨

被告 高陽郡 求知道面 內城洞 居 池甫玄

被告 京城 西部 歸農里 居 兪聖云

判決要旨

被告兪聖云은 原告訴求에 應호야 其盜買한 田畝를 還付於該主原告홈이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호

理由

原告의 主張은 墓畝三斗落과 田一日半耕이 在於本郡求知道面結石里 而以李敬善으로 護山耕食케호왔더니 此田畝를 敬善이가 使池甫玄으로 居間放賣於兪聖云處호고 乘夜逃走이오니 所謂買賣僞券을 官庭爇周호고 以完墓土이다이고 被告池甫玄은 供稱 果信其墓直李敬善之言호고 去乙巳年分에 居賣其田畝於兪聖云處이온바 豈料今日에 鄭持舊券 而來訴欲推乎잇가 盜賣之李哥가 今既在逃즉 土雖還鄭이나 兪買價額은 其誰徵給乎아 兪哥즉 全委於矣身 而不肯來下호고 出給文券 故로 現納호오니 照券處辦호심을 伏望이다호나 兪聖云之呼出不來는 自知其盜買之科而然이요 池甫玄之不待奇問 而吐實其居賣一事은 難掩奸狀이라 第據供辭 而考閱文券즉 原告處所在之舊券也와 在前營邑完文也가 的確無疑이고 被告處所在新券 즉 李敬善處에 越賣한 文券畝主을 以鄭春聖으로 填書인바 鄭姓즉 雖曰同

然이나 春聖之名字 즉 卽是原告의 奴名 而渠以墓直으로 雖知墓主之奴名
이나 名字中 聖字은 非聖字也요 卽成字이다 原告가 納告즉 其僞券은 於此
數件에 確然無疑歟더러 該墓直李敬善之逃躲가 果非盜賣所犯이면 安有是
舉리요 所以로 該僞券은 自官庭爻周하고 該番즉 推給於原告함이 可하기
로 以此判決함

隆熙三年 六月 一日

高陽郡

高陽郡守署理 郡主事 李泰定



1908년 9월 30일 수원-수원

역문

융희2년 민상제33호

판결서 등본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신평동新豊洞

상고인 관구선지조關口仙之助

소송 대리인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산루동山樓洞

피상고인 최명윤崔明潤

위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소송[債訟] 사건에 관해 1908년 7월 7일 경기
지방법관소京畿地方裁判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이 상고를 신청
하였기에 당 대심원大審院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첫 번째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서書票에 ‘이로하[伊呂波] 문자’를 사용하고, 또 명치明治 연호를 기재하는 것 등은 한국인 간 증서의 일상적 사용법에 반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본 건처럼 한국인<피상고인>이 일본인<상고인>에게 교부한 증서에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논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판결이 본건 1,500원의 증서에 이로하 문자를 사용하고, 또 명치 연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한국인의 증서의 일상적 사용법에 반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부당하게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상고 두 번째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중 이름 도장(姓名章)을 사용하는 자가 원래 적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인장은 반드시 이름 도장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이 1,500원의 증서에 날인한 바는 피상고인의 이름 도장이 아니기에 해당 증서는 불완전하다고 설명한 것은 이 역시 부당하게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 증서를 교부할 때는 이로하 문자를 사용하고 명치 연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도,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증서를 교부할 때 이로하 문자를 사용하고 명치 연호를 기재하는 경우는 원래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한글[諺文]을 써서 융희隆熙 연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국인 중 이름 도장 이외의 인장을 가진 자가 왕왕 있으나, 한국인이 증서에 날인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원판결은 상고인이 피상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칭하는 1,500원의 증서에 이로하 문자를 사용하고 명치 연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날인이 피상고인의 이름 도장이 아닌 등 일반적 상황에 반하는 사실에 의거하여, 해당 증서는 진정 성립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임은 원 판결문상에서 지극히 명백하므로, 상고인 소론처럼 부당하게 관습을 적용한 불법이 추호도 없다.

상고 세 번째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인은, 제1심에서 피상고인이 제출하고 군수가 백지에 날인한 인장과

* 이로하[伊呂波] 문자 : 일본어 가나의 문자에서 ‘ん’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노래인 ‘이로하 노래いろは歌’에서 파생된 것이다. 과거에는 이 노래의 순서대로いろは…가나의 순서를 매기기도 했는데, 중세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사전 등에 널리 이용되었다.

1,500원의 증서에 찍혀있는 인장이 동일한 것임을 극력 변론하고, 제2심에서도 역시 동일한 변론을 하였다. 그런데 소송 기록을 살펴보면, 이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런 중요한 쟁점을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변론한 사항은 모두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상고인이 제1심 및 제2심에서 위주장처럼 변론을 한 것은 일건 기록 중 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본 상고 논지는 도저히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설명처럼 상고 논지는 하나도 그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소송규칙 民刑訴訟規則 제42조, 제33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8년 9월 30일

대심원大審院 민사부

재판장 판사 증산승지조中山勝之助

판사 정인홍鄭寅興

판사 홍우석洪祐皙

판사 목산영수牧山榮樹

판사 석천정石川正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번역관 고도오팔高島五八

위는 원본에 의해 이 등본을 작성함.

1908년 10월 5일

대심원

재판소 서기 김중국金重國

원문

隆熙二年民上第三三號
判決書謄本

京畿道 水原郡 新豊洞
上告人 關口仙之助
右訴訟代理人 大久保雅彦

京畿道 水原郡 南部 山樓洞
被上告人 崔明潤

右當事者間ノ債訟事件ニ付隆熙二年七月七日京畿地方裁判所カ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上告人ヨリ上告ヲ爲シタルニ依リ當院ニ於テ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上告人ノ負擔トス

理由

上告第一點ノ要旨ハ書票ニ伊呂波文字ヲ使用シ且明治年號ヲ記載スルカ如キハ韓人間ニ於ケル書票ノ常法ニ反スルモノナルヘキモ本件ノ如ク韓人<被上告人>ヨリ日本人<上告人>ニ交付シタル書票ニ於テハ必スシモ同一ニ論スヘキモノニアラス然ルニ原判決カ本件一千五百圓ノ書票ニ伊呂波ヲ和用シ且明治年號ヲ記載シタルハ韓人書票ノ常法ニ反スルモノノ如ク說示セラレタレハ不當ニ慣習ヲ適用シタルモノナリト云ヒ上告第二點ノ要旨ハ韓人中姓名章ヲ使用スル者固ヨリ尠ナカラサレトモ韓人ノ印章ハ必スシモ姓名章ノミナリト謂フヲ得ス然ルニ原判決カ一千五百圓ノ書票ニ捺章スル所ハ被上告人ノ姓名章ニ非サレハ該票ハ不完全ナリト

說示セラレタルハ是亦不當ニ慣習ヲ適用シタルモノナリト云フニ在リ
依テ案スルニ日本人カ韓人ニ對シ書票ヲ交付スルトキハ伊呂波文字ヲ使用シ明治年號ヲ記載スルコトアルヘキモ韓人カ日本人ニ對シ書票ヲ交付スルニ當リ伊呂波文字ヲ使用シ明治年號ヲ記載スルカ如キハ固ヨリ絶無ナリトハ云フ可カラサルモ諺文ヲ用ヒ且隆熙年號ヲ記載スルヲ普通ノ狀體ナリトス又韓人中姓名章以外ノ印章ヲ有スル者往往之ナキニアラサルヘキモ韓人カ書票ニ捺印スル場合ニハ其姓名章ヲ押捺スルヲ通例トス而シテ原判決ハ上告人カ被上告人ヨリ交付セラレタリト稱スル一千五百圓ノ書票ニ伊呂波文字ヲ使用シ且明治年號ヲ記載シタルト其捺章カ被上告人ノ姓名章ニアラサル等普通ノ狀體ニ反スル事實ニ依據シ該書票ハ真正ニ成立シタルモノニアラスト認定シタルモノナルコト原判文上極メテ明白ナルヲ以テ毫モ上告人所論ノ如ク不當ニ慣習ヲ適用シタル不法ナキモノトス
上告第三點ノ要旨ハ上告人ハ第一審ニ於テ被上告人カ提出シ郡守カ白紙ニ捺章シタル印章ト一千五百圓ノ書票ニ捺捺シタル印章ト同一ナルコトヲ極力辯論シ第二審ニ於テモ亦同一ノ辯論ヲ爲シタルモノナリ然ルニ訴訟記録ヲ閱スルニ何等此點ニ關スル記載ナク此重要ナル爭點ヲ省略シタルハ違法ナリト云フニ在リ

然レトモ訴訟當事者カ公廷ニ於テ辯論シタル事項ハ悉ク之ヲ調書ニ記載シテ明白ニセサルヘカラサルモノニアラサルノミナラス之ヲ調書ニ記載スヘキ旨ノ法規存セサルヲ以テ之ヲ調書ニ記載セサレハトテ違法ナリト云フヲ得ス且上告人カ第一審及ヒ第二審ニ於テ右主張スルカ如キ辯論ヲ爲シタルコトハ一件記録中何等之ヲ徵スヘキモノナキヲ以テ本上告論旨ハ到底其理由ナキモノトス

以上說明ノ如ク上告論旨ハ一モ其理由ナキヲ以テ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條ニ依リ主文ノ如ク判決ス

隆熙二年九月三十日

大審院民事部

裁判長 判事 中山勝之助
判事 鄭寅興
判事 洪祐皙
判事 牧山榮樹
判事 石川正

裁判長の命으로 懸註禧
翻譯官 高島五八

右原本에 依하야 此謄本을 作成禧
隆熙二年 十月 五日
大審院에서
裁判所書記 金重國



1908년 10월 6일 수원-수원

역문

융희2년 민공제6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태촌면台村面 2동洞
당시 한성부漢城府 서서西署 한림동翰林洞 74통統 9호戶 심신경沈申慶 집
원고 안순구安順九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태촌면台村面 1동洞 거주
피고 박정진朴貞鎭

위 당사자 사이의 소나무값 소송 항소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에 대해 15원 80전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항소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항소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항소인은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에 대해 15원 80전을 갚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사실 관계에 관한 피항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항소인은 1908년 음력 4월 24일 몰래 수원군水原郡 태촌면台村面 2동洞 소재 항소인 소유의 산림에 들어가, 그 산림의 입목立木 소나무 79그루를 벌채하고 이를 다른 데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그 소나무 1그루당 대금을 20전으로 견적하여 본소本訴 청구에 이른 것이다.

한편 항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항소인 주장처럼 올해 음력 4월 24일 수원군 태촌면 2동 소재 산림의 입목 소나무 79그루를 벌채하고 이를 대금 2,000냥<40원>에 다른 데 매각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위 산림은 항소인이 7대 전부터 금양禁養한 것으로서 항소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본소 피항소인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

피항소인은 입증 방법으로 강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항소인은 동호증同號證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동호증은 제1심에서 담당관[係官]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항소인·피항소인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동호증 도면의 점선은 피항소인 및 항소인 소유 산림의 경계인 것, 항소인이 본건 소나무를 벌채한 곳은 위 점선의 상부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동호증은 따로 1통의 도면이 작성되어 무효이다.

이유

항소인이 1908년 음력 4월 24일 수원군 태촌면 2동 소재 산림에서 소나무 79그루를 벌채하고 이를 대금 2,000냥<40원>에 다른 데 매각한 것은 항소인도 자인하는 바로, 위 벌채 장소가 항소인 소유인지, 아니면 피항소인 소유인지는 본소의 주요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 살펴보건대, 항소인은 본건 강제1호증이 무효의 문서라고 주장하지만, 동호증은 제1심에서 담당관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항소인·피항소인 입회하에 작성된 본건 계쟁지의 견취도見取圖로서, 피항소인도 동호증에 서명 날인한 것임은 항소인이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동호증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특별히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호증의 효력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그리고 동호증의 도면 중앙부 점선이 도로이고 점선 상부에 박박 씨 무덤이 있고, 하부에 안안씨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점선 상부가 피항소인 소유이고, 그 하부가 항소인 소유에 속함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항소인이 본건 소나무를 벌채한 것은 위 점선 상부임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으므로, 항소인은 피항소인 소유 산림에서 이를 벌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항소인이 위 소나무를 대금 2,000냥<40원>에 다른 데 매각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므로, 소나무 1그루의 가격을 20전으로 견적한 본건 피항소인의 청구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재판소가 피항소인에게 승소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지만, 그 액수를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점에서 본건 항소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판결은 이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8년 10월 6일 판결 선고

재판소 서기 원구원칠랑原口源七郎

위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1908년 10월 19일

경성지방재판소

재판소 서기 이희철李熙撤

위는 등본임.

1908년 10월 19일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노중식盧中植

원문

隆熙二年民控第六號
判決

京畿道 水原郡 台村面 二洞
當時 漢城府 西署 翰林洞 七十四統 九戶 沈申慶方
控訴人 安順九

京畿道 水原郡 台村面 一洞居
被控訴人 朴貞鎭

右當事者間ノ樹木價訟控訴事件ニ付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第一審判決ヲ取消ス

控訴人ハ被控訴人ニ對シテ金十五圓八十錢ヲ辨償スヘシ
訴訟費用ハ第一審第二審共控訴人ノ負擔トス

事實

控訴人ハ第一審判決ヲ取消シ被控訴人ノ請求ヲ棄却ス訴訟費用ハ第一二審共被控訴人ノ負擔トストノ判決ヲ被控訴人ハ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控訴人ハ被控訴人ニ對シ金十五圓八十錢ヲ支拂フヘシ控訴費用ハ控訴人ノ負擔トストノ判決ヲ求メ其事實關係ニ付テハ被控訴人ハ控訴人ハ隆熙二年陰四月二十日竊ニ水原郡台村面二洞所在控訴人所有ノ山林ニ立入り同山林立木松樹七十九本ヲ伐採シ之ヲ他ニ賣却シタルニヨリ右松樹一本ニ

付代價二十錢ニ見積リ本訴請求ニ及ヒタル次第ナル旨演述シ控訴人ハ被控訴人主張ノ如ク本年陰四月二十日水原郡台村面二洞所在山林立木松樹七十九本ヲ伐採シ之ヲ代價二千兩<金四十圓>ニテ他ニ賣却シタルコトハ相違ナシト雖トモ右山林ハ控訴人ノ七代前ヨリ禁養セシ處ニシテ控訴人ノ所有ニ屬スルヲ以テ本訴被控訴人ノ請求ニ應シ難キ旨演述シ立證方法トシテ被控訴人ハ甲第一號證ヲ提出シ控訴人ハ同號證ノ成立ヲ認メ同號證ハ第一審ニ於テ係官現場ニ出張控訴人被控訴人立會ノ上作成セラレ同圖面ノ點線ハ被控訴人及控訴人所有山林ノ境界ナルコト控訴人カ本件松樹伐採ノ個所ハ右點線ノ上部タルコトハ相違ナキモ同號證ハ他ニ一通ノ圖面作成セラレ無効ニ歸シタルモノナル旨ヲ述ヘタリ

理由

控訴人カ隆熙二年陰四月二十日水原郡台村面二洞所在山林ニ於テ松樹七十九本ヲ伐採シ之ヲ代價二千兩<四十圓>ニテ他ニ賣却シタルコトハ控訴人ノ自認スル處ニシテ右伐採ノ個所カ控訴人ノ所有ナリヤ將タ被控訴人ノ所有ナリヤハ本訴主要ナル爭點ナリトス

依テ此點ニ付案スルニ控訴人ハ本件甲第一號證ハ無効ノ文書ナル旨主張スレトモ同號證ハ第一審ニ於テ係官現場ニ出張控訴人被控訴人立會ノ上作成セラレタル本件係爭地ノ見取圖ニシテ被控訴人モ同號證ニ署名花印セルコトハ控訴人ノ認ムル處ニシテ別ニ同號證カ無効ニ歸シタルモノナルコトハ何等之ヲ認ム可キ證左ナキヲ以テ同號證ノ效力ニ付テハ些ノ疑ヲ插ム可キ餘地ナシトス而シテ同號證ノ圖面中央部ノ點線カ道路ニシテ控訴人被控訴人所有山林ノ境界ナルコトハ控訴人ノ認ムル所ナルノミナラズ右點線ノ上部ニ朴塚アリ其下部ニ安塚アルヲ以テ見レバ右點線上部カ被控訴人ノ所有ニ係リ其下部カ控訴人ノ所有ニ係ルコトヲ認メ得ヘク且ツ控訴人カ本件松樹ヲ伐採シタルハ右點線ノ上部ナルコトハ當事者間爭ナキヲ以テ控訴人ハ被控訴人所有山林ヨリ之ヲ伐採シタルモノト認ムルニ餘リアリ而シテ控訴人カ右松樹ヲ代價二千兩<四十圓>ニテ他ニ賣却シタルコトハ其認ムル所ナルニヨリ松樹一本ノ價格ヲ二十錢ニ見積リ

タル本件被控訴人ノ請求ハ之ヲ相當ナリトス依テ原裁判所カ被控訴人ニ
勝訴ヲ言渡シタルハ相當ナルトモ其數額ヲ確定セサルニヨリ此點ニ於テ
本件控訴ハ其理由アルモノニシ原判決ハ之ヲ取消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二年十月六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原口源七郎

右裁判長의命을依히야懸註喜

隆熙二年十月十九日

京城地方裁判所

裁判所書記 李熙撤

右謄本也

隆熙二年十月十九日

於同廳

裁判所書記 盧中植



역문

판결

수원성水原城 내 토목농상공무 출장소土木農商工務出張所

원고 가하스이加賀スイ

용산철도감부龍山鐵道監部 조립부[組立部] 직공

피고 강량태랑岡良太郎

위 당사자 사이의 명치41년 <민>제213호 가옥 임대료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8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일정한 신청은 주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 사실상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06년 11월부터 1907년 7월 20일까지 용산龍山 매정梅町에 소유한 집을 매달 집세 14원에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달 1일

부터 20일까지의 집세 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해전팔십치海田八十治의 환문喚問을 신청한다. 또한 을제1호증의 성립은 인정하나, 동호증은 집세 청구를 위해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피고의 신청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로부터 집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집세는 전부 지급하였다. 그리고 을제1호증을 제출하고 강제1호증의 성립은 인정한다. 살펴보건대, 강제1호증의 기재 내용 및 증인 해전팔십치海田八十治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을제1호증의 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고 소송 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부이사관 하촌상덕河村尙德

원문

判決

水原城内 土木農商工務出張所

原告 加賀スイ

龍山鐵道監部 組立部 職工

被告 岡良太郎

右當事者間明治四十一年<民>第二一三號家賃請求事件ニ付キ審理判決スル事如左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金八圓ヲ支拂フベ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理由

原告一定ノ申立ハ主文記載ト同一ノ判決ヲ求メ其事實上供述ノ要旨ハ原告ハ明治三十九年十一月ヨリ同四十年七月二十日マテ龍山梅町ニ所有スル家屋ヲ家賃一ヶ月金十四圓ノ割ニテ被告ニ貸與シタル所被告ハ同月一日ヨリ二十日マテノ家賃金八圓ノ支拂ヲ爲サズト申立テ甲第一號證ヲ提出シ證人海田八十治ノ喚問ヲ申請シ乙第一號證ノ成立ヲ認メ同號證ハ家賃請求ノ爲被告ニ交付シタルモノナルモ一金ヲ受取ラズト申立タリ

被告ノ申立ハ原告ノ請求ヲ棄却ストノ判決ヲ求メ其答辯ノ要旨ハ原告主張ノ如ク原告ヨリ家屋ヲ借受ケタル事實アルモ賃料ハ全部支拂濟ナリト申立テ乙第一號證ヲ提出シ甲第一號證ノ成立ヲ認メタリ
按ズルニ甲第一號證ノ記載及證人海田八十治ノ證言等ヲ綜合シ乙第一號證ノ金員ハ未タ支拂濟ニアラズト認定スルヲ相當トス仍テ原告ノ請求ハ理由アリ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法第七十二條ニヨリ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理事廳

副理事官 河村尙德



1908년 10월 18일 수원-남양

역문

융희2년 민제166호

결석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토진면土津面 옹포壅浦 거주

원고 박성범朴聖範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목金正穆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궁평宮坪 거주

피고 정인하鄭寅夏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방현尹邦鉉

위 당사자 간의 중선中船 인도引渡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선中船 1척隻과 별지別紙의 기재와 같이 부속품을 모두 인도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750환圓에 상당하는 중선中船 1척隻과 이에 대한 부속품을 별지에 기재한 것과 같이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申立]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작년 2월경 소외인訴外人 정인원鄭寅源<피고 종제從弟>와 합자合資하여 조기[石魚] 어업을 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55,000냥과 본건 계쟁係爭의 중선 1척<부속품까지>을 내고, 소외인 정인원은 45,000냥을 내서 바로 생조기 30동同을 잡았다. 그런데 소외인 정인원은 위 조기를 40,000여 냥에 매매賣買하고 그 이익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원고와 동업한 계약을 취소하고 어업을 정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위 이익배당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 피고는 원고를 불러서 말하기를, “올봄에 종제와 하던 어업은 실패하였다고 들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오는 봄에 나와 공동으로 함께 분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자본은 내가 낼 수 있으니 배는 당신이 내라.”고 하였다. 피고는 지방의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승낙하였다. 피고는 위의 준비를 위하여 배를 자기 집 앞 항구에 정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서 남양군南陽郡 피고의 집 근처에 정박한 것이 작년 음력 12월 2일이다. 이후 피고는 위 자금을 내지 않아서 원고가 이를 독촉하였다. 그런데 피고 가 위의 배를 자기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처럼 거짓 문권을 작성하면 이를 가지고 돈을 구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그 말에 따라서 위 문권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넘겼다. 이후에도 위 자금을 조달해 주지 않아서 독촉하였더니, 피고는 이내 본건 계쟁배는 부속품과 함께 45,000냥에 소외인 정인원이 취득하였다고 말하고, 마침내 배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본 소송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호출장을 받고도 1908년 10월 18일 심문기일에 출두하지 않았다. 따라서 살펴보니, 피고는 호출장을 받고 심문기일에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피고는 원고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爭持]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8년 10월 18일 재판 선고

재판소서기 원구원칠랑原口源七郎

별지

닷삼월니 1건

길압히숙히 1건

장지리 1건

노 2개

장밋 1개

숫 2좌坐

슈항 2좌

북 1좌

장군 3좌

화로 1좌

광쇠 2개

무잠 1개

상아티 5개

지씨 5개

지폭 7건

선전 1개

통 2좌

독지 2개

각귀 2개

슬 2개

덕피 1개

원문

隆熙二年 民第一六六號

缺席判決

京畿道 水原郡 土津面 甕浦 居

原告 朴聖範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金正穆

京畿道 南陽郡 官坪 居

被告 鄭寅夏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尹邦鉉

右當事者間 中船引渡訟事件에 對하여 審理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被告는 原告에 對하여 中船一隻에 別紙記載와 如히 附屬品을 并引渡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에 負擔함

事實及理由

原告代人是 被告는 原告에 對하여 金壹千五百圓에 相當한 中船一隻과 此에 附屬品을 別紙記載와 如히 原告에 引渡함이 可하고 訴訟費用은 被告에 負擔이 可하다는 判決을 求한다 申立함 其事實로 原告는 昨年二月分 訴外人 鄭寅源<被告從弟>과 合資하여 石魚漁業을 營하고 企하고 原告는 金五萬五千兩과 本件係爭에 中船一隻<附屬品까지>을 出하고 訴外人 鄭哥는 金四萬五千兩을 出하고 直히 生石魚三十同을 獵獲하였다가 訴外人 鄭哥는 右石魚를 金四萬餘兩에 賣買하고 其利益을 原告에 配當아니하고 仍하여 同人과 營하던 同業契約을 取消하고 漁業을 停止하여 右利益配當請求訴訟을 提起코자할 際에 被告는 原告를 招하여 謂曰 今春從弟와 營하던 漁業은 失

敗혔다 聞히고 不安하니 來春은 自分과 共同으로 一番奮發함이 何如오
 其資本은 自己이 此를 出하기 可하니 船은 君이 出하라고하기에 被告는 土
 地에 兩班이라 因하야 其言을 信하고 承諾하여더니 被告는 右準備를 爲하
 야 船을 自分家前港에 運泊하라고 指導하니 其指導를 從하야 南陽被告近
 海에 運泊하여는디 昨年陰十二月初二日也 然헌디 被告는 右資金을 出하
 지아니하니 原告는 此를 督促하여는디 右船을 被告에 賣渡한 樣으로 假文
 券을 作成하면 此를 持하고 金을 得한다하니 其言에 從하야 右文券을 作成
 하야 被告에 渡하여더니 其後도 右資金을 調給하지아니함으로 督促하여
 더니 被告는 遂히 本件係爭船은 附屬品과 金四萬五千兩에 訴外人鄭寅源
 이가 取得하여다 云하고 遂히 船을 占有하여스니 本訴에 及하였다 演述함
 被告는 適法에 呼出狀을 受하고도 隆熙二年十月八日審問期日에 出頭하지
 아니함 依하야 案하니 被告는 呼出狀을 受하고 審問期日에 出庭치 아니함
 바로 推究하면 被告는 原告事實上主張에 對하야 爭下하지 못할 者로 認하
 고 原告訴求는 正當함으로 認定하야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二部
 裁判長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二年 十月 十八日 裁判言渡
 裁判所書記 原口源七郎

別紙
 닷삼월니 一件
 길압히숙히 一件
 장지리 一件
 노 二個
 장밋 一個
 솟 二坐

슈항 二坐
 북 一坐
 장군 三坐
 화로 一坐
 광쇠 二個
 무잡 一個
 상아더 五個
 지석 五個
 지꼭 七件
 선전 一個
 통 二坐
 독지 二個
 각귀 二個
 쓸 二個
 디픽 一個





상품 대가代價에 관한 건

1908년 10월 26일 수원-용인

역문

융희2년 민제11호

결석판결

경기京畿 수원읍水原邑

공소인 최명윤崔明潤

위 대리인 변호사 김정목金正穆

경기京畿 용인읍龍仁邑

피공소인 김의경金義卿

위 당사자 간의 상품대가商品代價 청구소송 공소사건에 대하여 본 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원 판결은 취소[撤消]한다.

피공소인은 공소인에 대하여 당오전當五錢 3,796냥을 갚아야 한다.

공소인의 기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2심을 아울러 피공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공소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공소인은 공소인에 대하여 당오전 3,896냥에 이자를 덧붙여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소인과 피공소인이 각자 장사를 하면서 상품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작년 7월 말일에 전후 셈[細算]을 계산했더니 공소인이 받아야 할 돈[當擄條]이 당오전[當坪] 9,528냥이었다. 그 뒤에 3차례 와서 갚았고, 남은 돈 3,796냥은 아직 미루며 갚지 않으므로 용인군龍仁郡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더니 피공소인이 850냥을 공소인의 차인[差入] 박덕균[朴德均]에게 이미 갚았으니, 장차 갚아야 할 것이 2,928냥뿐이라 항변하여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여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덕균은 과연 공소인의 차인이지만 공소인이 금전을 받아 오라고 위임하여 보낸 일이 없으므로 이는 공소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청구 중에 160,000냥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도 역시 갚지 않아서 이렇게 공소하게 되었다 하여 강제1호증甲第一號證으로 입증立證하였다. 피공소인은 적법한 호출을 받고도 이번 달 21일 변론[辯論] 속행 기일에 출두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공소인의 채권債權이 있다는 것은 강제1호증에 의거하여 명백하고, 차인의 행위는 본래 그 주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공소인이 박덕균을 위임하여 보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박덕균이 피공소인에게 가서 금전을 받아서 유용했다는 것은 곧 대리권한[代理權限] 밖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 책임이 있는 주인이 차인 박덕균을 위임해서 보냈다면, 피공소인의 수표手票<강제1호증>를 가지고 갔을 것이고, 피공소인은 금전을 내준 뒤에 그 금액을 수표 상에 기재하거나 공소인의 대리인 명의로 박덕균의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례이다. 그런데 본건은 이와 같은 증거證據가 없으니 피공소인은 강제1호증의 잔액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전과 다름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이유는 타당하지 못하고, 또 피공소인이 출두하여 항변[抗辯]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인의 공소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의 청구는 공소인이 원심을 시행한 군郡에서 기소하지 아니

하였고, 또 판결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공소심控訴審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중촌시장中村時章

판사 박만서朴晩緒

1908년 10월 26일 선고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서기 본전영本田榮

위의 원본에 의하여 이 등본을 작성한 것이다.

1908년 11월 2일

경기지방재판소

재판소 서기 김기환金基煥

원문

隆熙二年 民第一一號

缺席判決

京畿 水原邑

控訴人 崔明潤

右代理人 辯護士 金正穆

京畿 龍仁邑

被控訴人 金義卿

右當事者間의 商品代價請求訟 控訴事件에 對하여 本所에서 審判함이 如左

主文

原判決은 此를 繳消함

被控訴人은 控訴人의 對하여 當五錢 三千七百九十六兩을 辦償함이 可함

控訴人의 其他請求는 此를 棄却함

訴訟費用은 第一審二審을 并하여 被控訴人의 負擔함

事實及理由

控訴人은 原判決을 繳消하고 被控訴人은 控訴人의 對하여 當五錢 三千七百九十六兩에 利息을 付하여 辦償함이 可할 旨의 判決을 求하고 其事實의 主張은 控訴人與被控訴人이 俱是 商業으로 有商品 去來 하여 昨年 七月晦日에 前後細音을 計算한즉 控訴人의 當捧條가 當坪 九千五百二十八兩인디 其後에 三次來報하고 零條 三千七百九十六兩을 尙拖不報故로 往訴于 龍仁郡이더니 被控訴人이 八百五十兩을 控訴人의 差人 朴德均의 對에 已報하였고 且當報가 二千九百二十八兩뿐이라 抗下하여 原審에서 認此判決한지라 朴德均은 果控訴人의 差人이나 控訴人의 對에 金錢受捧次로 委送한 事이 無하니 此는 控訴人의 不知한 바이오 請求中 十六萬兩을 理由없이 棄却함도 亦不報함으로 至此控訴라하여 甲第一號證으로 立證함

被控訴人은 適法의 呼出을 受고도 本月 二十一日 辯論續行期日에 出頭 치 아니함

按하건디 控訴人의 債權存在는 甲第一號證에 證하여 明白하고 差人의 行爲는 本來其主人의 責任이로디 控訴人이 朴德均을 委送한 證據가 不充分 하니 朴德均이 被控訴人의 對에 往하여 金錢을 受捧挪用함은 卽代理權限外에 屬한 者에 不過한지라 然則其責任이 主人이 其差人 朴德均을 若委送한 若스면 被控訴人의 手票<甲第一號證>를 持往할터이오 被控訴人은 金錢을 出給한 後에 其金額을 手票上에 記載하거나 控訴人의 代理人名義로 朴德均의 領證을 受取함이 當然한 事例인디 本件은 如斯한 證跡이 無하니 被控訴人은 甲第一號證의 殘額全部를 履行할 義務가 依然存在한 者로 認함이 可한지라 故로 原判決의 理由는 妥當치 못하고 且被控訴人이 出頭抗下치

아니함으로 控訴人의 控訴는 理由가 有함者로 認호지라 然이나 利息의 請求
는 控訴人이 原審郡에서 起訴치 아니호얏고 且判決을 經호 者이 아닌즉 控訴
審에 至호야 請求를 擴張함은 正當치 못함으로써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一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中村時章
判事 朴晚緒
隆熙二年 十月 二十六日 言渡
於同廳
書記 本田榮

右原本을 依호야 此謄本을 作호호 事
隆熙二年 十一月 二日
京畿地方裁判所
裁判所 書記 金基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8년 10월 31일 수원-용인

역문

융희2년 민공제12호
결석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산루동山樓洞 상업
항소인 최명윤崔明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余面 김량金良 거주
피항소인 이기홍李基弘

위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소송[債訟] 항소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12,605냥을 갚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제1·2심 모두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항소인은 위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그 사실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항소인은 포목상인데, 1907년 음력 11월 피항소인에 대해, 외상으로 포목 당평當舖 7,100여 냥 어치를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음력 3월 피항소인과 만나 다시 협의한 후, 피항소인은 위 대금에 손해금을 건적하여 당계當舖 12,605냥을 올해 4월까지 지급한다는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항소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기한이 경과하여도 그 상환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본소本訴에 이르게 되었다.

피항소인은 적법한 호출을 받았으면서도, 1908년 10월 29일 오전 9시의 심문 기일에 출두하지 않았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피항소인이 항소인으로부터 대금 7,100여 냥어치 포목을 매수하고, 1908년 음력 3월 위 포목 대금에 손해금을 더하여 12,605냥을 지급할 의무를 새로이 피항소인에게 부담하였음은 제1심에서도 인정할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항소인은 적법한 호출을 받았으면서도 심문 기일에 출두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인의 당심當舖에서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사실은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며, 항소인의 본소 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1심에서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해 7천 몇 백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되지 않은 주문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항소인의 본건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8년 10월 31일 재판 선고

재판소 서기 원구원칠랑原口源七郎

위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1908년 11월 4일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이희철李熙[玉+△]

위는 등본임.

1908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노중식盧中植

원문

隆熙二年民控第一二號

關席判決

京畿道 水原郡 山樓洞 商

控訴人 崔明潤

同道 龍仁郡 水余面 金良居

被控訴人 李基弘

右當事者間ノ債訟控訴事件ニ付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第一審判決ヲ取消ス

被控訴人ハ控訴人ニ對シ金壹萬貳千六百五兩ヲ辨償スヘシ

訴訟費用ハ第一審第二審共被控訴人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控訴人ハ前記主文ノ如キ判決ヲ求ムル旨申立テ其事實關係ニ付テ控訴人ハ布木商ナル處隆熙元年陰十一月被控訴人ニ對シ懸賣ニテ布木當坪七千餘百兩ヲ賣渡シタルモ其後之レカ支拂ヲ爲サス然ルニ本年陰三月被控訴人ト出會シ更ニ協議上被控訴人ハ右代金ニ損害金ヲ見積リ當計一萬

二千六百五兩ヲ本年四月マテ支拂フ可キ證書ヲ作成シ之ヲ控訴人ニ交付
シナカラ期限經過スルモ之レカ辨償ヲ爲ササルニヨリ本訴ニ及ヒタル旨
演述シタリ

被控訴人ハ適法ノ呼出ヲ受ケナカラ隆熙二年十月二十九日午前九時ノ審
問期日ニ出頭セス

依テ案スルニ被控訴人カ控訴人ヨリ代價七千餘百兩ノ布木ヲ買受ケ隆熙
二年陰三月右布木代金ニ損害金ヲ加ヘ一萬二千六百五兩ヲ支拂フ可キ義
務ヲ新ニ控訴人ニ負擔シタルコトハ第一審ニ於テモ其認ムル所ナルノミ
ナラズ被控訴人ハ適式ノ呼出ヲ受ケナカラ審問期日ニ出頭セサルニヨリ
控訴人ノ當審ニ於ケル右ト同趣旨ノ主張事實ハ之ヲ抗爭セサルモノト認
メ控訴人ノ本訴請求ヲ正當トス然ルニ第一審ニ於テ被控訴人ハ控訴人ニ
對シ七千餘百ヲ辨償スヘキ旨不確定ナル主文ノ言渡ヲ爲シタルハ不當ニ
シテ控訴人ノ本件控訴ハ其理由アルモノト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二年十月三十一日 裁判言渡

裁判所書記 原口源七郎

右裁判長의命을依하야懸註함

隆熙二年十一月四日

京城地方裁判所

裁判所書記 李熙[玉+△]

右謄本也

隆熙二年十一月六日

於同廳

裁判所書記 盧中植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8년 11월 10일 한성-수원

역문

융희2년 민공제2호

판결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만리현萬里峴

항소인 심사문沈士文

소송 대리인 변호사 심종대沈鍾大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만의萬儀

피항소인 송병두宋秉斗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택金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용상李容相

위 당사자 사이의 융희2년 민공제2호 사건에 관해 당 재판소가 선고한 결석 판결에 대한 항소인의 이의[故障]를 수리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1908년 9월 10일 선고한 결석 판결을 폐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인은 소외인訴外人 산본리칠山本利七 외 1인이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

原郡 매곡면梅谷面 서원리書院里의 산<소외인 공성래孔聖來의 부모 무덤은 이미 이장함>에서 별채한 송추松楸<같은 장소 현재>는 피항소인의 소유임을 확인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제1·2심 모두 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항소 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항소 대리인은 주문 제2·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그 청구 원인 사실에 관해 피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항소인은 경기도 수원군 매곡면 천천川泉 서원리書院里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항소인이 올해 양력 2월경 그 산국山局 내인, 공성래 부모 무덤을 이미 이장한 장소에 자라 있던 송추 800그루를 별채하고 일본인 산본리칠山本利七 외 1인에게 매각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막았다. 그런데 항소인이 위 입목立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기에 본소本訴에 이르게 되었다. 입증으로 강제1~6호증을 제출하고, 인证人證을 신청한다.

항소 대리인은 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올해 음력 1월 공성래 부모 무덤이 이미 이장된 장소에 자라고 있던 송추 800그루를 일본인 산본리칠山本利七 외 1인에게 매각하였고, 산본리칠山本利七 외 1인이 대략 100그루를 별채하였다. 그런데 피항소인은 자기 산에 속하는 나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그곳은 매곡면 천천리川泉里 안에 있지, 천천 서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천천리의 산은 항소인이 5대 전부터 산소를 가지고 있어 항소인 소유이므로, 피항소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입증으로 올해1호증을 제출하고, 인증을 신청한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본소의 입목을 별채한 곳이 수원군 매곡면의 산국 내인, 공성래 부친 무덤을 이미 이장한 장소라는 것은, 쌍방 다툼이 없는 증인 이재구李在九의 "위 공성래 부모 무덤을 이미 이장한 장소는 피항소인 소유의 산이므로, 공성래의 산소를 다른 데로 이장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신용할 수 있고, 본건 수목은 피항소인 소유 산중에 자라고 있

던 것이므로 피항소인의 소유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을제1호증 및 이치성 李致成의 증언은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항소인의 청구는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항소인이 본건 송추를 벌채한 것은 이유가 없고 패소시킨다.”라고 확정되지 않은 주문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8년 11월 10일 판결 선고

재판소 서기 원구원칠랑原口源七郎

위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1908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이희철李熙撤

위는 등본임.

1908년 11월 20일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노중식盧中植

원문

隆熙二年民控第二號

判決

漢城府 西部 萬里峴

控訴人 沈士文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沈鍾大

京畿道 水原郡 萬儀

被控訴人 宋秉斗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金澤

同上 李容相

右當事者間隆熙二年民控第貳號事件ニ付キ當裁判所ガ言渡シタル關席判決ニ對スル控訴人ノ故障ヲ受理シ更ニ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隆熙貳年九月十日言渡シタル關席判決ヲ廢棄ス

第一審判決ヲ取消ス控訴人ハ訴外人山本利七外一人ガ京畿道水原郡梅谷面書院里ノ山中ク訴外人孔聖來親塚已掘ニ於テ斫り倒シタル松楸ク同所現在ニ於テ被控訴人ノ所有タルコトヲ確認スベシ

訴訟費用ハ第一二審共控訴人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控訴代理人ハ第一審判決ヲ取消シ被控訴人ノ請求棄却ノ判決ヲ求メ被控訴人代人ハ主文第二三項記載ト同趣旨ノ判決ヲ求メ其請求ノ原因タル事實トシテ被控訴人ハ京畿道水原郡梅谷面川泉書院里ニ山所ヲ有スル處控訴人ハ本年陽曆二三月頃其山局內ナル孔聖來親塚已掘ノ場所ニ生ヒ立チタル松楸八百株ヲ伐採シ日本人山本利七外一人ニ賣却セントシタルヨリ

之ヲ差止メタルニ控訴人ハ右立木ハ自己ノ所有ナリト主張スルヲ以テ本
訴ニ及ヒタリト演述シ其立證トシテ甲第一號證乃至第六號證ヲ提出シ且
ツ人證ノ申立ヲ爲シ

控訴代理人ハ事實トシテ本年陰正月中孔聖來親塚已掘ノ場所ニ生ヒ立チ
タル松楸ヲ日本人山本利七外一人ニ賣却シ同人等ガ凡ソ貳百本斫り倒シ
タル處被控訴人ハ自己ノ山ニ屬スル木ナリト主張スルモ元來同所ハ梅谷
面川泉里内ニシテ川泉書院里ニアラサルノミナラズ川泉里ノ山ハ控訴人
ガ五代前ヨリ山所ヲ有シ控訴人ノ所有ナルニヨリ被控訴人ノ請求ハ不當
ナリト述べ其立證トシテ乙第一號證ヲ提出シ且ツ人證ノ申立ヲ爲シタリ
依テ案スルニ本訴ノ立木ヲ斫り倒シタルハ水原郡梅谷面ノ山局内ナル孔
聖來親塚既掘ノ場所ナル事ハ雙方爭ナキ所ニ係ル證人李在九ノ右孔聖來
親塚已掘ノ場所ハ被控訴人所有ノ山ナルニヨリ孔聖來ノ山所ヲ他ニ移掘
シタル旨ノ供述ヲ信用シ本件ノ樹木ハ被控訴人所有ノ山中ニ生ヒ立チシ
モノニシテ被控訴人ノ所有ナリト認定ス而シテ乙第一號證及李致成ノ證
言ハ右認定ヲ覆スニ足ラメザルニヨリ被控訴人ノ請求ハ相當ナリトス然
ルニ原審判決ハ控訴人ガ本件ノ松楸ヲ斫りタルハ理由ナク落科スト不確
定ナル主文ノ言渡ヲ爲シタルハ不當ナルニヨリ之ヲ取消シ訴訟費用ハ民
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貳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二年十一月十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原口源七郎

右裁判長의命에依ᄃ야懸註ᄃᄂ

隆熙二年十一月十七日

京城地方裁判所

裁判所書記 李熙撤

右臆本也

隆熙二年十一月二十日

於同廳

裁判所書記 盧中植





1908년 11월 17일 수원-수원

요문

융희2년 민제264호

결석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초평면楚坪面 오동五洞

원고 이병주李秉胄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목金正穆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안녕면安寧面 배양동培養洞

피고 김한수金漢洙

위 당사자 간의 담보 의무 이행 소송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40환圓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訴外人 김영선金永先을 보

증한 책임으로 김영선이 범포犯逋^{*}한 14환圓을 증서[票證]와 같이 부담하여 갚아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일정한 신청[申立]을 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초평면楚坪面 면장面長으로 작년 결전結錢을 수납하였는데, 피고가 소외인 김영선을 결전의 영수원領受員으로 천거하였다. 해당 김영선이 결전을 범포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피고가 부담할 뜻으로 증서[票]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김영선이 초평면 결전 중에서 560환圓을 포흠逋欠하여 도주하였으니, 해당 돈을 피고가 당연히 액수대로 물어내야 하는데, 약간만 물어내고 남은 액수 240환은 완납하지 않아서 피해가 원고에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막중한 공납公納을 깨끗이 마감해야 한다고 여러 번 독촉하여도 피고는 그 담보책임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소송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갑제1호증甲第一號證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호출장을 받고도 1908년 10월 17일 심문기일에 출두하지 않았다. 따라서 살펴보니, 피고가 호출장을 받고 심문기일에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항변[辯]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民事訴訟費用規則 제1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8년 11월 17일 판결선고

재판소서기 원구원칠랑原口源七郎

* 범포(犯逋): 나라에 바칠 돈이나 곡식을 써 버리는 것을 뜻한다.

원문

隆熙二年 民第二六四號

缺席判決

京畿道 水原郡 楚坪面 五洞

原告 李秉胄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金正穆

京畿道 水原郡 安寧面 培養洞

被告 金漢洙

右當事者間 擔保義務履行訟事件에 對하여 審理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被告는 原告에 對하여 金貳百四拾圓을 辦償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에 負擔함

事實及理由

原告代人是 被告는 原告에 對하여 訴外人金永先을 擔保한 責任으로 金永先에 犯連한 錢貳百四拾圓을 票證과 如히 擔當辦償함이 可하고 訴訟費用은 被告에 負擔이 可하다는 判決을 求한다 一定申立함 其事實로 原告가 本面面長으로 昨年結錢을 收納한디 被告가 訴外人金永先을 結錢領受員으로 薦擧한디 該金永先이 結錢을 犯連한 弊가 有한즉 被告가 擔當할 意로 成票이더니 金永先이 本面結錢中 五百六拾圓을 欠連逃走하여는 즉 該錢을 被告가 當然히 準數徵納이온디 若干만 徵納하고 零額貳百四拾圓은 完納하지 아니하여 禍가 原告의게 及하는 故로 莫重公納에 淸勘을 屢督하여 하여도 被告는 其擔保責任을 不應함으로 遂히 本訴에 及하였다 陳述하고 甲第壹號證을 提出함 被告는 適法에 呼出狀을 受하고도 隆熙二年十月十七日 審問期日에 出頭하지 아니함 依하여 案하니 被告는

呼出狀을 受하고 審問期日에 出庭치아니한바로 推究한즉 被告는 原告 事實上主張에 對하여 爭下하지 못할 者로 認함이 可한지라 原告에 訴求는 相當함으로 認定하고 訴訟費用은 民事訴訟費用規則 第一條에 依하여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二年 十一月 十七日 裁判言渡

裁判所書記 原口源七郎





1908년 12월 1일 수원-용인

역문

판결서 제4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남창동南昌洞 거주 상업商業

나성규羅聖奎 31세

피고 용인군龍仁郡 지내면枝內面 덕현德峴 거주 학업學業

이영선李英善 20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론[答卡]이 부당하다. 원고가 종손宗孫에게 매득買得한 산국山局인데, 피고가 지손支孫으로서 다툰다고 승소할 이치가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卡]과 증거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부모의 무덤을 옮겨서 장사지내기 위하여 산을 구하고 있을 때에, 올 5월 용인군龍仁郡에 사는 이유선李裕善이 저를 찾아와서 수원군水原郡 장주면長洲面 저미개低眉介에 소재한 그의 산을 방매放賣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오전[當坪] 15,000냥으로 값을 정하

여 신구新舊 문권文券을 받고 매득買得하였습니다. 값 중에서 4,650냥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이유선이 그 6대조의 무덤을 다른 곳에 이장移葬한 이후에 모두 줄 뜻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유선의 지손支孫으로서 멋대로 농간을 부려서 이유선을 내쫓고, 도망가서 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유선이 그 조부의 무덤을 파내어 옮기는 것을 제가 사주하였다는 뜻으로 터무니없게 거짓으로 위어서 경향京鄕에 분소奔訴하였습니다. 산판 매매에서는 종손宗孫이 주인이 되니, 제가 그 신구 문권을 받아서 매수買收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렇게 지어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분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피고를 조사하시고, 해당 산을 전의 계약대로 매득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5월경에 산을 매득하였고, 처음부터 피고의 집에서 산의 매득을 물어본 일이 없으므로 그 후에 피고가 매득하지 말라고 와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유선이 스스로 그 무덤을 파낸 것을, 피고는 제가 이유선을 쫓아서 무덤을 파내고 관을 드러냈다고 말한 것도 모함한 것입니다. 그러니 밝게 조사하여 처분하시길 앞드려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所供]은, “저의 5대조의 분묘墳墓가 수원군 장주면 제포堤浦에 있습니다. 원고가 사람을 시켜 거간居間하여 이유선에게 산국을 매득하겠다고 하기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이유선을 불러와서 질문하니 답변에,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족인族人 이의선李義善을 보내서 질문하니 역시 ‘없었다.’고 하므로, 부탁하기를, ‘종손 이유선이 방매하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절대로 매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들으니, ‘15,000냥에 산을 매득한 것이 분명하고 3,000냥을 먼저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한곳에 모여 이유선을 꾸짖었더니,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누명累名을 썼다.’라고 스스로 말하며 문권을 찢고서, 여러 선산의 문권과 여러 대의 사위嗣位를 종중宗中에 내어 놓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물어보니 답변하기를, ‘이미 신구 문권을 종손에게 매득하였으니 지손이 시비를 가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 거간인 김정원金正源의 집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김정원이 답변하기를, ‘전에 종손이 받은 돈을 종중에서 마련해

내서 갓으라고 하였더니, 음력 9월 14일 초에 원고가 이유선을 그의 집으로 몰아 끌고 가서 그 밤에 원고가 무뢰배 10인을 시켜서 이유선을 강제로 끌고 가서 저의 5대조 무덤을 파내고 관을 드러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집안에서 가서 그것을 금지하였더니, 그들이 이유선을 다시 잡아서 원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제가 다른 지방의 재판소에 정소로 訴하였으나 불기소不起訴 처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니, 원고와 피고의 진술(供辭)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증사인 證查人 이유선이 와서 대령하여 변론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고의 친구 문권으로 산을 매득한 것은 이미 관정(官庭)에서 조사할 때에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피고의 진술에서, “이유선이 무덤을 파낼 때에 원고가 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모함으로 엮은 것은 말이 이치에 가깝지 않다. 이것은 형사(刑事)와 관련되니 수원군에서 판정할 수 없다. 원고는 중손에게 산국을 매득하였는데 피고가 지손으로서 다루는 것이 부당하다. 이에 판결한다.

1908년 12월 1일

수원군(水原郡)

군수 서병숙(徐丙肅)

주사 차재형(車載衡)

원문

判決書 第四號

原告 水原郡 南部 南昌洞 居 商業

羅聖奎 年三十一

被告 龍仁郡 枝內面 德峴 居 學業

李英善 年二十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對하야 答下하미 不當하니 原告는 宗孫에게 買有한 山局인디 被告가 以支孫으로 爭詰한다고 得訟할 理가 無한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據에 照하야 認直事 此訟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以爲親山緬禮次로 求山之際에 今五月 龍仁居李裕善이 來見矣身하고 本郡長洲面低眉介所在渠山을 欲賣이기 定價當坪壹萬五千兩하야 新舊文券을 受하고 買得 而價中四千六百五拾兩은 先給하고 餘錢은 李裕善이 其六代祖塚移葬他處後에 畢給之意로 相約矣러니 被告가 以李裕善之支孫으로 橫出作戲하야 驅逐裕善하야 使之隱避하고 裕善이 其祖塚掘移를 以矣身指使之意構誣하야 奔訴京鄉이온즉 山坂賣買의 宗孫爲主인디 矣身이 受其新舊文券買收가 可謂正當 而被告之如是作稱이 豈不憤冤乎잇가 被告處에 查問하시고 該山을 依前約買有케하시며 且曰五月分買山 而初無被告家에서 來問買山之事러니 其後에 被告가 來言勿買之說이 不當이옴고 裕善이 自掘其塚하거설 被告는 曰 矣身이 驅引裕善하야 破掘露棺之說 亦是構陷이오니 明查處分을 伏望이라하며 被告所供은 矣身五代祖墳墓가 在於水原郡長洲面堤浦上이러니 山局을 原告가 使人居間하야 裕善에게 買得云이기 家族이 會同하야 招致裕善質問 則答以初無是事라하기 原告處에 族人義善을 送之質問 則亦曰無有라하기로 付托하기를 宗孫裕善이 欲放賣라도 不得任意니 切不買之하하여드니 其後更聞壹萬五千兩에 買山分明이고 三千兩先給云이기 一家會同하야 責及裕善한직 吾爲不肖 而聞此累名이라고 自謂罷券하고 各處先山文券과 累代祠位를 宗中에 出置이기로 問于原告 則答以新舊文券으로 宗孫處에 買得인즉 支孫是非는 無關이라하기 往于居間人金正源家詰問 則正源이 答以既往宗孫推錢을 自宗中辦出償還하하더니 陰曆九月十四日初에 原告가 裕善을 渠家로 驅引以去하며 其夜에 原告가 無賴輩十餘人을 命送하야 勒引裕善하야 被告五代祖塚을 破掘露棺이기로 矣身家에서 往而禁之 則渠等이 裕善을 還執하야

原告家로 歸去이온바 矣身이 呈訴于地方裁判所 而至於不起訴로 處分이
라흔바 查此原被告供辭가 一切相反 而證查人李裕善不爲來待以下인디 原
告之新舊文券으로 買山은 已於官庭問查時에 詳考이고 被告所供裕善破掘
之時 原告가 不爲往參云흐니 如是構陷이 語不近理라 此係刑事 則郡不可
裁決이고 原告는 宗孫에게 買有山局인디 被告가 以其支孫으로 爭詰이 不
當함으로 判決함

隆熙二年 十二月 一日

水原郡

郡守 徐丙肅

主事 車載衡



1908년 12월 4일 남양-남양

역문

융희2년 민제125호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수면雙守面 송정동松亭洞

원고 이성림李盛林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중雙中

피고 김장원金壯元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중雙中

피고 최건원崔建元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중雙中

피고 최덕현崔德玄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중雙中

피고 최순현崔順玄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중雙中

피고 최덕순崔德順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중雙中
피고 김영현金永玄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쌍하雙下
피고 김정초金正初

위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소송[債訟] 사건에 관해 원고는 소송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않으므로 본건 소를 각하한다.

1908년 12월 4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관사 경장삼랑境長三郎

관사 김철현金喆鉉

관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원문

隆熙二年民第一二五號

京畿道 南陽郡 雙守面 松亭洞

原告 李盛林

京畿道 南陽郡 雙中

被告 金壯元

同所

同 崔建元

同所

同 崔德玄

同所

同 崔順玄

同所

同 崔德順

同所

同 金永玄

京畿道 南陽郡 雙下

同 金正初

右當事者間ノ債訟事件ニ付原告ハ訴訟費用ノ豫納ヲ爲ササルヲ以テ本件
訴ハ之ヲ却下ス

隆熙二年十二月四日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상품 대가代價에 관한 건

1908년 12월 14일 수원-용인

역문

융희2년 민공제11호

판결

경기京畿 수원읍水原邑

공소인 최명윤崔明潤

위 대리인 변호사 김정묵金正穆

경기京畿 용인읍龍仁邑

피공소인 김의경金義卿

위 당사자 간의 상품商品 대가代價 청구에 대하여 전에 행했던 결석판결은 적법適法한 이의[故障]의 신청[申提]에 의거하여 다시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판결은 기각한다.

피공소인은 공소인에 대하여 당오전當五錢 3,036냥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을 아울러 양쪽이 함께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공소인은 원판결을 취소[撤消]하고 피공소인은 공소인에 대하여 당오전 3,796냥에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소인과 피공소인이 각자 장사를 하면서 상품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작년 7월 말일에 전후 셈[細算]을 계산했더니 공소인이 받아야 할 돈[當捧掬]이 당오전[當鄂] 9,528냥이었다. 그 뒤에 3차례 와서 갚았고, 남은 돈 3,796냥은 아직 미루며 갚지 않으므로 용인군龍仁郡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랬더니 피공소인이 850냥을 공소인의 차인差人 박덕균 朴德均에게 이미 갚았으니, 장차 갚아야 할 것이 2,928냥뿐이라 항변하여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여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덕균은 과연 공소인의 차인이지만 공소인이 금전을 받아 오라고 위임하여 보낸 일이 없으므로 이는 공소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청구중에 160,000냥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도 역시 갚지 않아서 이렇게 공소하게 되었다 하여 강제 1호증으로 입증立證하였다.

피공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소인의 주장과 같이 1908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도합 5,732냥 5전을 갚은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공소인이 그뒤 받은 일이 없다고 신청[申提]할지라도 피공소인은 공소인의 차인 박덕균에게 같은 해 11월 12일에 250냥, 같은 달 27일에 500냥, 올해 3월 3일에 100냥 도합 850냥을 갚았다. 그런데 공소인은 그 차인 박덕균이 전출轉出된 것을 틈타 850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제1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결국 패소하였는데 지금 또 공소하였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공소인이 갖고 있는 채권債權 중에 850냥을 제외하면 서로 간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850냥에 대해서는 공소인이 차인 박덕균을 위임하여 보내서 독촉하여 받을 때에 해당 진표錢票를 내보였으니 의심 없이 갚았다고 한 것은 피공소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증인 김후동金厚東의 구술口述에 의거하여도 명백하다. 그러니 차인의 행위가 어찌 본인[主事]과 다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맨 마지막 100냥에 대하여 공소인이 “올해 1월에 해당 차인을 전출轉出하였다.”고 하고 피공소인은 “올해 3월 3일에 내어 주었다.”고 하니 그때는 차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공소인이 경솔하게

내어준 것은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100냥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아직 존재한다.

따라서 피공소인은 750냥에 대하여는 의무가 없지만, 그 나머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공소인의 청구에 응해야 한다. 이자는 원판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을 공소심控訴審에서 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1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중촌시장中村時章

판사 김의균金宜均

1908년 12월 14일 선고

같은 관청에서

재판소서기 목등진무木藤眞武

위는 등본이다.

1912년 10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재판소서기 김기환金基煥

원문

隆熙二年 民控第一一號

判決

京畿 水原邑

控訴人 崔明潤

右代理人辯護士 金正穆

京畿 龍仁邑

被控訴人 金義卿

右當事者間 商品代價 請求에 對하여 前에 行하였든 缺席判決은 適法의 故障의 申提를 依하여 更히 審決함이 如左함

主文

原判決은 此를 棄却함

被控訴人은 控訴人에 對하여 當五錢 三千三十六兩을 辦償함이 可함

控訴費用은 第一審第二審을 并하여 兩方의 負擔으로함

事實及理由

控訴人은 原判決을 繳消하고 被控訴人은 控訴人에게 對하여 當五錢 三千七百九十六兩에 利息을 付하여 辦償케하는 判決을 求하고 其事實의 主張은 控訴人與被控訴人이 俱是商業으로 有商品去來하여 昨年陰七月晦日에 前後細音을 計算한즉 控訴人의 當捧條가 當坪九千五百二十八兩인 디 其後에 三次來報하고 零條三千七百九十六兩을 尙拖不報故로 往訴于 龍仁郡이더니 被控訴人이 八百五十兩을 控訴人의 差人 朴德均에게 已報하였고 且當報가 二千九百二十八兩뿐이라 抗下하여 原審에서 認此判決은 지라 朴德均은 果爲控訴人의 差人이나 被控訴人에게 金錢受捧次로 委送한 事가 無하니 此는 控訴人의 不知는바인즉 理由업시 八百五十兩에 對하여 棄却을 當함은 不服이기 至此控訴라하여 甲第一號證으로 立證함 被控訴人은 主張은 控訴人의 主張과 如히 隆熙二年 八月 九月 兩次에 都合五千七百三十二兩五錢을 辦償함은 相左치 아니하디 控訴人이 其後受捧한 事이 無하다 申提홀지라도 被控訴人은 控訴人의 差人 朴德均에게 全年十一月 十二日에 二百五十兩과 全月二十七日에 五百兩과 本年三月三日에 百兩都合八百五十兩을 辦報하였는디 控訴人은 其差人 朴德均의 轉出됨을 乘하여 八百五十兩을 受치 아니함으로 主張하고 第一審에 起訴하였다가 遂至落科러니 今又控訴라하니

按컨디 控訴人의 債權存在中 八百五十兩을 除흔 外에는 互相異議가 無하
나 八百五十兩에 對하야는 控訴人이 使其差人朴德均으로 委送督捧時에
出示該錢票故로 無疑辦報라함은 被控訴人의 主張뿐아니라 證人金厚東의
口述을 依하야도 明白흔즉 差人之所爲가 何異於本人이리오 然이나 最後
百兩에 對하야는 控訴人에 本年正月에 該差人을 轉出하얏다하고 被控訴
人은 本年三月三日에 出給하얏다하니 其時는 差人이 아니어늘 輕忽出給
함은 難免其責즉 百兩에 對하야는 其義務가 尙存홀지라
然함으로 被控訴人은 七百五十兩에 對하야는 義務가 無하되 其餘의 債務
에 對하야는 控訴人의 請求에 應함이 可하며 利息은 原判決을 經치 아니함
을 控訴審에서 定함은 正當치 못하기로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一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中村時章
判事 金宜均
隆熙二年 十二月 十四日 言渡
於全廳
裁判所書記 木藤眞武

右臚本也
大正元年 十月 八日
京城地方法院
朝鮮總督府 裁判所書記 金基煥



1908년 12월 14일 죽산-수원

역문

판결서 제80호

원고 죽산군竹山郡 원삼면遠三面 거주 직업 농민
윤필구尹弼求 74세

피고 수원水原 남부南部 산루동山樓洞 거주 직업 상인
이만성李萬成 33세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答辯)할 이유가 있다. 피고가 입장(入葬)한 곳은 원고가 간섭하며 금단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詰)과 증거 및 조사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소송에 대한 원고의 진술(陳述)은, “저의 증조의 분묘(墳墓)와 모친의 분묘가 같은 산기슭 유천(柳川) 동쪽에 있어서 200여 년 동안 폐단 없이 수호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번 달 음력 7일에 피고가 부친상을 당하여 부친을 저의 선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함부로 매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파내라고 독촉하기 위해 정소(呈訴)하였습니다. 해당 산에 대하여 현재 증거할

만한 문적^{文蹟}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선대의 분묘를 입장하기 전에는 주인 없는 공산이었으니 입장 후에 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所供}은, “저의 부친 무덤을 유천 동쪽 산기슭의 이돈용^{李敦容}의 산국^{山局} 내에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돈용에게 피소^{被訴}되어 이장^{移葬}할 때에, 지금의 장지^{葬地}를 조상을 장사지낼 곳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돈용이 이에 대하여 말하길 ‘이곳도 나의 산국 내인데 지난번에 입장한 곳은 10보^步 이내이므로 금장한 것인데, 이곳은 10보 밖이니 비록 나의 산이지만 특별히 입장을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 김성오^{金成五}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의 산이다.’고 하기에, 제가 ‘나는 지금 무덤이 파내어져 달리 입장할 곳이 없다. 지금 이돈용이 산을 허락한다는 말을 듣고 입장하였다. 그런데 당신이 또 와서 금단하니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니 김성오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는 그 선조의 무덤 안산^{案山}이라고 하고 금장^{禁葬}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산의 주인은 이돈용이 아니라 김성오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그의 산이라고 하고, 다투며 꾸짖는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증사인^{證查人} 김성오^{金成五}의 진술은, “저의 선산 산기슭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로지른 산기슭입니다. 윤필구^{尹弼求}의 선산은 그 북편이 있어서 중간에 골짜기 하나를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필구가 그 산기슭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안산^{案山} 국내이다.’라고 하고서 빼앗았으니 일이 부당합니다. 지금 이만성^{李萬成}이 저의 산등성이 한 기슭에 입장하였는데 해당 땅은 저의 뒷기슭이고, 이돈용의 산기슭과 경계인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하니, 피고가 입장한 곳을 원고는 선산의 안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산에서 한 골짜기를 넘으면 김성오의 선산 뒷기슭이다. 또한 이돈용 선산의 여록^{餘麓}과 경계한 곳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의 선산이라고 금장한 것

* 여록(餘麓): 못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주산(主山)과 청룡과 백호와 안산(案山)밖에 있는 산이다.

은 부당하다.

1908년 12월 14일

수원군^{水原郡}

군수 서명숙^{徐丙肅}

주사 차재형^{車載衡}

원문

判決書 第八十號

原告 竹山郡 遠三面 居業農

尹弼求 年七十四

被告 水原 南部 山樓洞 居業商

李萬成 年三十三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對하야 被告는 答下할 理由가 有하니 被告入葬處달 原告가 不可干預禁之事

訴訟費用은 原告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查에 證하야 認直事 此訟의 對原告의 陳供은 以爲 矣身曾祖墳墓와 母墳墓가 同原一麓으로 在於 柳川東便하와 二百餘年 無弊守護러니 不意 今月陰曆初七일에 被告가 其父喪를 勒埋於 矣身先山 逼近處이온즉 緣由督掘次 呈訴이오나 該山이 現無文蹟之證據나 矣身先代墳墓入葬前에는 無主空山이러니 入葬後에 矣身에 所有이오다하며 被告所供은 以爲 矣身父塚을 葬于 柳川東麓 李敦容山局內라가 被訴移葬時에

今葬地를 欲爲瑩葬 則李敦容이 是之日 此亦吾山局內 而已往入葬地는 十步以內 故로 禁之러니 今此地는 爲十步以外며 雖吾山이나 特爲許葬 故로 過葬이요 又金成五가 來見言之曰 吾山이라호기 矣身이 答以吾今被掘 而他無葬地호고 今聽李敦容山許之而入葬인디 君又來禁호니 願爲我許호라호즉 金成五가 亦許이온디 至今原告는 謂以其先祖塚案山 而禁葬이 不當호거시 山之爲主가 非李則金이온디 原告之謂以渠山而爭詰이 無據라호며 證查人金成五所供은 矣身先山麓 自東向西橫麓이고 尹弼求의 先山이 在其北便 而中間有一谷爲界온디 近者에 尹家는 稱之曰吾之案山局內라호고 侵奪이 事係不當이온디 至今李萬成이 矣身山嶺麓一處의 入葬이온디 該地가 爲矣身山後麓 而李敦容山麓으로 交界處라호니 此是查호니 被告入葬處를 原告는 謂以先山案對逼近處라호나 原告所有된 確證이 無호고 原告山에서 越一谷호디 金成五之先山後麓 而與李敦容先山餘麓交界호 處인즉 是로 以호야 原告가 以其先山으로 禁葬이 不當호 事

隆熙二年 十二月 十四日
水原郡
郡守 徐丙肅
主事 車載衡



1908년 12월 15일 수원-남양

역문

융희2년 민제166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토진면土津面 옹포襄浦 거주
원고 박성범朴聖範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목金正穆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궁평宮坪 거주
피고 정인하鄭寅夏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방현尹邦鉉

위 당사자 간의 중선中船 인도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원상회복을 신청[申立]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판결요지

피고의 원상회복 신청[申提]은 각하한다.
위 신청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저에 대한 융희2년 제166호 중선中船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하여 결석판결 등본을 송달한 1908년 10월 24일 이전에, 저는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에 갔습니다. 이후에 중도에 폭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폭도가 진정된 후 같은 해 11월 14일에 이르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의[故障]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을 신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살펴보니 피고의 대리인은 위의 주장에 관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舉證}도 신청하지 못하였고, 다른 증거도 인용^{認容}할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 신청을 채용^{採用}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런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8년 12월 15일 재판선고

재판소서기 원구원칠랑^{原口源七郎}

원문

隆熙二年 民第一六六號

判決

京畿道 水原郡 土津面 甕浦 居

原告 朴聖範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金正穆

京畿道 南陽郡 宮坪 居

* 원상회복(原狀回復) : 일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래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상태를 만드는 일을 뜻한다.

被告 鄭寅夏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尹邦鉉

右當事者間 中船引渡事件에 對하여 被告로부터 原狀回復의 申立을 함으로 審理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被告에 原狀回復의 申提는 此를 却下함

右申提에 關한 費用은 被告에 負擔함

理由

被告代人是 原告로부터 被告에 對한 隆熙二年 第一六六號 中船引渡請求事件에 缺席判決謄本送達한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以前에 被告는 忠淸南道 洪州地方에 往한 後 中途에 暴徒가 起한 故還家함을 得지 못하고 暴徒鎭定後 同年十一月十四日에 至하여 還家함으로 故障其間을 遵守치 못하고 原狀回復의 申立함이라 演述함 依하여 案하니 被告代人は 右主張事實에 對한 何等에 舉證을 申立하지 못하고 其他證據도 認容할바이 無한 故로 該申提를 採用함이 不當한 理由에 依하여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二年 十二月 十五日 裁判言渡

裁判所書記 原口源七郎



1908년 12월 17일 수원-수원

역문

융희2년 민제264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초평면楚坪面 오동五洞

원고 이병주李秉胄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목金正穆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안녕면安寧面 배양동培養洞

피고 김한수金漢洙

위 당사자 간의 담보 의무 이행 소송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1908년 11월 17일에 선고한 결석판결에 대한 피고의 이의[故障] 신청을 수리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908년 11월 17일에 선고한 결석판결은 폐기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앞서 제시한 결석판결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240환圓을 갚아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일정한 신청[申立]을 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수원군水原郡 초평면草坪面 면장面長으로 결전結錢 수입收入의 소임[役]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결전 수입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인訴外人 김영선金永先에게 그 소임[役]을 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김영선은 일찍이 모르는 사람이므로 피고가 보증하면 그 소임[役]을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말하여, 피고는 그 보증을 하고 수표手票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신용하여 비로소 김영선을 시켜서 결전 수입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김영선은 결전으로 560환을 거둬들이자 그대로 휴대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보증인이 된 피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그랬더니 위의 보상으로 32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남은 240환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아서 본 소송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강제1호증甲第一號證으로 피고가 김영선을 보증한 사실을 입증立證하였다. 강제2, 3, 4호증으로 원고는 피고의 변론[答辯]과 같이 본 소송에서 청구한 240환을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피고가 주장한 사실 변론 중에 재무고문財務顧問이라고 운운한 것은, 재무서財務署로부터 재무주사財務主事 이재극李載克이 와서 원고가 작성해 준 것을 가져간 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는 본건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원군 초평면에서 작년 결전 수입에 관하여, 소외인 김영선을 면장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그때에 원고에게 김영선의 신분이 이상이 없음을 보증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김영선이 거둬들인 결전 560환을 휴대하여 도주한 일로 재무고문부에서 검사한 결과, 320환은 피고가 갚아야 하고 240환은 원고가 소비한 바라고 확정하였다. 피고는 앞서 기재한 담보 부분에 대한 320환을 이미 갚았으니, 이번에 원고가 부담한 부분에 대한 본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변론하였다. 강제1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지만, 강제2, 3, 4호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청원한 일은 인정하더라도, 입증의 취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 신청하였다.

따라서 안건을 살펴보니, 피고가 소외인 김영선의 신분을 보증한 것과 결 전 560환 중에서 320환을 위 소외인이 소비한 것은 다름 바가 아니다. 원 고의 대리인은 위 결전 560환 전부를 김영선이 소비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 갑제2, 3, 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는 원고가 소비하 지 않았다는 것을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검사가 보고한 서면書面만 존재하 기에, 김영선이 위의 결전을 전부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채택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기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民 事訴訟費用規則 제1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8년 12월 17일 재판선고

재판소서기 원구원칠랑原口源七郎

원문

隆熙二年 民第二六四號

判決

京畿道 水原郡 楚坪面 五洞

原告 李秉胄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金正穆

京畿道 水原郡 安寧面 培養洞

被告 金漢洙

右當事者間 擔保義務履行訴訟事件에 對하야 當裁判所는 隆熙二年十一月 十七日 宣告한 缺席判決에 對한 被告에 故障申提를 受理하고 更히 判決함 이 左와 如함

主文

隆熙二年 十一月 十七日 宣告한 缺席判決은 廢棄함

原告訴求는 此를 棄却함

訴訟費用은 前掲缺席判決에 關하야 生은 部分은 被告에 負擔으로하고 其 餘는 原告에 負擔함

事實及理由

原告代人是 被告는 原告에 對하야 金貳百四拾圓을 辦償함이 可하고 訴訟 費用은 被告에 負擔이 可하다는 判決을 하여달나 一定申立하고 其事實로 原告는 水原郡楚坪面面長으로서 結錢收入에 役을 하니 然함으로 昨年結 錢收入에 關하야 被告는 訴外人金永先을 使役하여달나하니 同人은 曾히 不知에 이기기로 被告에 保證을 하면 使役하여도 關係가 無하다 言하야 被告는 其保證을 하고 手票를 原告에 交付함으로 被告를 信用하야 始에 金永先을 使하야 結錢收入에 往行하여더니 金永先은 結錢으로 金五百六 拾圓을 收入한디로 携帶逃走함으로 保證人된 被告에 對하야 其辦償함이 可하다 督促하여더니 右辦償으로 金參百貳拾圓을 原告에게 支拂하고 殘 貳百四拾圓에 對하야 此를 支拂하지 아니함으로 本訴에 及하였다 演述하 고 甲第一號證으로 被告가 金永先에 擔保함 事實을 立證하고 甲第二三四 號證으로 原告에게 被告答辯함과 如히 本訴請求貳百四拾圓을 消費한 事 實이 無함을 立證하고 被告主張한 事實答辯中 財務顧問云云은 財務署로 부터 財務主事 李載克이가 來하야 原告로부터 書付한거슬 取行한 事를 指 하나 右는 本件에 關한 事이 아니라 申立함 被告는 原告에 請求棄却한 判決을 求한다 申立하고 其事實로 原告에 主張한것과 如히 水原郡楚坪面 에서 昨年結錢收入에 關하야 訴外人金永先을 面長原告에 紹介하야 其時原 告에 對하야 金永先에 身分을 引受함이 可한 保證을 爲한거슬 相違가 無

하나 金永先收入한 結錢五百六拾圓을 携帶逃走한여라는 事로 財務顧問部에서 檢査한 結果에 金參百二拾圓은 被告가 此를 辦償함이 可하고 貳百四拾圓은 卽原告에 消費한바이라 確定하고 被告는 前記負擔部分에 對한 參百貳拾圓을 已爲辦償한여스니 今日原告負擔部分에 對한 本訴求에 應할 義務가 無하다 答辯하고 甲第一號證은 其成立을 認하나 甲第二三四號證은 如此請願한 事는 此를 認하나 立證趣旨를 不認한다 申立함 依야 審案하니 被告가 訴外人金永先身分을 保證한것과 結錢五百六拾還內 參百貳拾圓을 右訴外人이 消費한것다함은 爭할바이 아니라 原告代理人은 右結錢五百六拾圓 全部를 金永先에 消費한거시라 主張하고 其立證으로 甲第二三號證을 提出하나 同證은 原告에 消費함은 有치 아니한 事를 京畿裁判所檢事에 告한 書面만 存在하고 金永先이 右結錢全部消費한 事實을 認할 資料로 採聽함의 足지 못하고 其他原告代理人에 主張을 認할 證據가 無한 故로 原告에 訴求는 排斥하고 訴訟費用은 民事訴訟費用規則 第一條에 依야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二年 十二月 十七日 裁判言渡
 裁判所書記 原口源七郎



1908년 12월 19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83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장주면章洲面 산남리山南里 거주 상민商民
 송의선宋義善 34세

피고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구천동龜川洞 거주 상민商民
 김사옥金思玉 46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받은 빚돈(債錢)을 억지를 부려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이치에 어긋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소장訴狀과 대질[質下] 및 증거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述]은 “제가 올해 음력 5월 14일에 피고에게 당오전[當錢] 3,000냥을 매월 5푼[分]의 이자로 빌려 썼습니다. 그 후에 제가 우상牛商으로 소 1마리[隻]를 8월 29일 시장에서 2,500냥에 구매

斥賣하여 소 증개인(證人) 최헌경(崔軒卿)*을 시켜서 값을 피고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일 저녁에 제가 피고에게 찾아가서 장부(置簿)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피고가 답변하기를,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마땅히 기록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또 산남리(山南里)에 사는 류명백(柳明白)에게 500냥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일 피고에게 소를 방매하여 갚은 돈에서 500냥을 다시 빌려서 류명백에게 갚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 곳이 있어서 50냥을 역시 빌려 썼습니다. 이번 10월 말일에 이르러 피고에게 정산하여 다 갚을 때에 피고가 예전에 소를 방매하여 갚은 돈인 2,500냥을 마련해 준 것 중에서 550냥을 다시 빌려 써서 마땅히 갚아야 하는 1,950냥을 받지 못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빚을 갚으라며 12월 9일에 시장에서 제가 가진 소 1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해당 증사인(證人) 송영심(宋榮心)의 진술(所供)은, "저의 소와 송의선(宋義善)의 소를 모두 팔기 위해서 우전(牛廐)에 함께 가서, 최헌경에게 팔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소는 값이 맞지 않아서 팔지 않았고, 송의선의 소는 당오전(當坪) 2,500냥에 팔 때에, 소의 고삐를 잡은 사람이 팔리지 않았다고 거짓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헌경이 강제로 방매를 권하여 소를 사간 사람이 소값을 가지고 와서, 김사육이 해당 돈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증사인 류명백이 말하기를, "송의선에게 받을 돈 500냥이 있었습니다. 8월 29일에 송의선이 김사육에게 추심하라고 말하였으므로, 김사육에게 지화(紙貨) 1원(兩) 10장을 추심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은, "제가 음력 5월경에 빚으로 당오전(當坪) 3,000냥을 원고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9월경에 이르러 독촉하였는데, 원고가 얼마 간 기한을 늘려 주길 청구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 이르러 원고가 빚에서 1,950냥만 갚았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본전이 3,000냥이고, 이자가 900냥이니 합 3,900냥이다. 그런데 어찌 1,950냥만 갚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 원문에는 '崔軒京'이나 뒤에 '崔軒卿'으로 나오고 또한 다른 판결문에도 '崔軒卿'으로 기록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다. 원고가 말하기를, '1,950냥은 이미 8월 말일에 소를 방매하여 갚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8월 말일에 네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은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말하기를, '최헌경의 집에서 소를 팔아 갚았다.'고 하였으나 저는 받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증인 최헌경이 말하기를, "8월 29일에 원고의 소를 방매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증인 김희경(金禧慶)이, "원고의 흑우(黑牛) 1척을 2,200냥에 팔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니, 원고와 피고 및 각 증인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사실만을 참고하니, 소 증개인 최헌경은 원고의 소를 방매하지 않았다고 하며, 김희경이 소를 팔았다고 의심스러운 행적을 아뢰었으나, 원고가 소를 방매할 때에 송영심과 고삐를 잡은 사람이 곁에서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최헌경이 소를 방매하였다는 사실을 속이기 어렵다. 소값을 피고에게 갚을 때에 류명백도 500냥을 찾아 갚으니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피고는 그 빚을 받지 않았다고 핑계 대고, 강제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나중에는 원고의 소를 다시 끌고 가서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일이 매우 근거 없다. 따라서 피고를 패소시키고 원고에게 다시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한다.

1908년 12월 19일

수원군(水原郡)

군수 서병숙(徐丙肅)

주사 차재형(車載衡)

원문

判決書 第八三號

原告 水原郡 章洲面 山南里 居 商民

宋義善 年三十四

被告 水原郡 南部 龜川洞 居 商民
金思玉 年四十六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의 對하야 債錢已捧흔거설 生臆更捧하미 甚無理흔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訴狀과 質下證據에 照하야 認直事 此訟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以爲矣身이 今陰曆五月十四日에 被告處에 當錢參千兩을 以每朔
五分邊으로 價用하옴고 其後에 矣身이 牛商으로 牛一隻을 八月二十九日
場에 貳千五百兩에 斥賣하야 使牛噲人崔軒京으로 價錢을 拮据于被告하고
矣身이 當日夕에 往見被告하야 使之置簿 則被告가 答以今則紛擾하니 第
當記錄矣리니 勿慮하라 爲하옴하오며 矣身이 又於山南里居柳明白處에 五百
兩所負가 有하기로 當日被告處에 賣牛報錢中 五百兩을 更貸하야 俾報柳
民하고 矣身에 有所用하야 五拾兩을 亦爲貸出用之하고 至於今十月晦日에
被告處에 細音畢報時에 被告가 前次賣牛所報錢貳千五百兩吉居內 五百五
拾兩 更貸用하야 當報壹千九百五拾兩을 未捧이라하고 生臆하고 又復報
債하라하며 十二月初九日市에 矣身所持牛隻을 牽去하오니 豈不抑鬱이라
하며 該證查人宋榮心所供은 曰渠之牛隻과 宋義善牛隻을 并爲放賣次 同
往牛塵하야 使崔軒卿賣之하는디 渠牛는 價不稱意하야 不賣하고 宋義善牛
隻은 當坪貳千五百兩에 賣之하는디 其時牛轡所執之人은 假稱不賣 則崔
軒卿이 強勸賣之而買牛者가 牛價持來 則使金思玉으로 該錢推去함을 見
之라하고 又證查人柳明白은 曰矣身이 有所捧錢五百兩於宋義善處리니 八
月二十九日에 宋民이 金思玉處에 推尋爲言 故로 金民處에 紙貨壹円枚拾
張를 推尋이라하는디 被告所供은 以爲矣身이 陰曆五月分에 債錢當坪參
千兩을 給于原告리니 至於九月分에 矣身이 催促則原告가 幾許間 寬限하
기를 請求하더니 至於十月三十日에 原告가 債錢中 壹千九百五拾兩만 報
來하기로 矣身曰 本錢이 參千兩이요 邊錢이 九百兩 合參千九百兩인디 何

一千九百五拾兩만 報來耶아하흔즉 原告曰 一千九百五十兩은 已於八月晦日
에 賣牛報給云이기 矣身이 曰八月晦日에 汝以何樣錢報來耶아하흔즉 原告
曰 崔軒卿宅에서 賣牛以報라하나 矣身은 無有所捧이라하며 該證人崔軒
卿은 曰八月二十九日에 原告牛賣之흔 事이 無하다하고 又證人金禧慶이
原告에 黑牛一隻을 貳千貳百兩에 賣之라하마 查此兩隻及各證人所供이
一切相反하고 以事實上으로 參考하흔즉 牛僧人崔軒卿은 原告에 牛隻을 不
賣云 而金禧慶이 賣牛라하야 疑眩의 形跡을 모하나 原告牛隻放賣時에 宋
榮心及牛轡牽執하흔 人이 傍參이 分明하니 崔哥之賣牛를 難欺요 牛價을 報
于被告時에 柳明白이 亦五百兩推去하니 被告之捧錢을 可知라 奈何被告
는 不捧其債라 稱託하고 強制에 思想行爲를 施하야 追後에 原告에 牛隻을
更爲牽去而相持하미 事甚無據라 是로 以하야 被告를 置之落科하고 原告
處에 更不得侵責케할 事

隆熙二年 十二月 十九日

水原郡

郡守 徐丙肅

主事 車載衡





1908년 12월 26일 수원-수원

의문

{융희3년 보제575호, 융희3년 민공9호}

판결서 제87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가토면佳土面 권관리權管里 농업
이병하李丙夏 30세

피고 수원군水原郡 현암면玄岩面 궁리宮里 거주 농업
이주성李周成

대인인 이범구李範九 35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答下할 이유가 없으니 해당 입장지入葬地가 원고가 매장을 금지하며 수호한 범위 이내이므로 피고의 무덤은 굴이掘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 조사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은, “저의 7대조 이하 분묘가 가토면佳土面 제장산第場山에 있습니다. 일찍이 지난 1879년<30년 전>에 장필원張弼元

이 저의 선산 뇌후腦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偷葬했으므로 정소모訴하여 이장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수호해왔습니다. 올해 8월에 피고가 자신의 아내 상을 당하고, 장씨가 이미 굴이해 간 땅 아래에 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문장門長을 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근거하여 책망하였다. 그러자 피고의 답변은 ‘장씨네 무덤을 굴이한 것은 나 역시 충분히 알고 있다. 결국 마땅히 이장하겠다.’고 말하면서 기한이 한 달이 지나도 굴이하지 않으니 해괴합니다. 산의 경계는 장씨네 무덤을 굴이한 땅 이하는 저의 선산 국내이며, 이상은 피고의 산국山局입니다. 또 저의 7대조가 통훈대부通訓大夫이고 5대조가 좌승지左承旨를 증직贈職받았으니 분묘계한墳墓界限이 역시 마땅히 금지해야 하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은, “조부의 무덤, 부모 무덤[親塚], 형수 무덤이 입장한 산이 가토면佳土面 두호斗湖 금당곡金當谷에 있습니다. 그 동남양東南陽은 곧 원고의 산국인데 음력 8월경에 제가 아내 상을 당하고 형수 무덤 아래에 입장入葬하였습니다. 이곳은 저의 산국 내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자기네 산소의 후뇌後腦라고 하고 정소하여서 도형圖形해 왔는데, 이른바 장씨가 이미 굴이한 땅은 산 동쪽에 있는데 산 서쪽에 있다고 잘못 썼으며, 새 장지는 곧 제 산의 국내局內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수하[耳目]를 파견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도형하였더니, 피고 아내를 새로 장사지낸 땅의 북쪽에 장씨가 이미 굴이해 간 땅이 적확하고, 원고 7대조 및 5대조는 증직이고, 또 피고가 소지한 산소 문권 및 장택기葬擇記에 모두 간산良山으로 써져 있었다.

이를 조사하니 원고의 7대조 이하 분묘의 땅인데 장씨가 입장한 것을 관에 고하여 굴이하였으니 원고 소유가 분명하다. 피고는 간산의 기습 하나를 수호해 왔으므로 피^{**}차 산국山局이 분별되니 피고의 새 장지가 원고의 산소 국내이고, 계한界限의 이내이며, 피고에게 해당하지 않는 땅이다. 따라서 해당 무덤의 땅을 원고가 입장을 허락하지 않고 마땅히 금해야 할 일이다.

* 뇌후(腦後) : 무덤의 뒤쪽을 말한다.

** 피(彼) : 원문은 ‘被’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彼’로 고쳤다.

1908년 12월 26일

수원군水原郡

군수 서명숙徐丙肅

주사 차재형車載衡

원문

{隆熙 3年 保第575號, 隆熙 3年 民控9號}

判決書 第八十七號

原告 水原郡 佳土面 權管里 業農

李丙夏 年三十

被告 水原郡 玄岩面 宮里 居 業農

李周成

代言人 李範九 年三十五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對하야 答下할 理由가 無하니 該入葬地가 原告가 禁葬守護호는 範圍以內인즉 被告塚을 當掘호는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査에 照하야 認直事 此訟에 對하야 原告에 陳供은 以爲矣身七代祖以下六墳墓山이 在於佳土面 第場山이온바 曾往己卯<三十年>前에 張弼元이 矣身先山腦後壓近處偷葬故로 呈訴掘去이옵고 至今守護러니 今八月分에 被告가 其妻喪을 偷葬於張民已掘之地以下故로 被告門長을 據責其法外事호는 被答以張塚已掘은 吾亦慣知라 終當移葬云 而過限一朔不掘이 可駭이오다 山界則張塚已掘地以下는 矣身先山局內요

以上은 被告山局이옵고 且矣身七代祖가 通訓이요 五代祖가 左承旨贈職이오니 墳墓界限에 亦當禁이라호며 被告所供은 以爲祖父塚親塚兄嫂塚入葬山이 在於佳土面 斗湖 金當谷이온바 其東南陽는 卽原告山局이온디 陰曆八月分에 被告妻喪을 葬于兄嫂塚下則 是被告山局內이온디 原告가 稱以渠山後腦라호고 呈訴而圖形以來이온바 所謂張民已掘地는 在於山東邊而誤書在山西이오며 新葬處가 卽被告山局內라호기로 更派耳目하야 詳査圖形則被告妻新葬地北便에 張民已掘地가 的確이고 原告七代祖及五代祖는 爲贈職이고 又被告所持山文券及葬澤記에 皆以良山書之인바 查此原告에 七代祖以下墳墓地而張民入葬을 告官掘移호니 原告所有가 分明이고 被告는 良山一麓守護인즉 被此山局을 下而被告新葬地가 爲原告山局內요 爲界限內요 爲被告不當地인즉 該塚地을 原告가 不許入葬而當禁호는 事

隆熙 二年 十二月 二十六日

水原郡

郡守 徐丙肅

主事 車載衡





1909년 1월 28일 수원-천안

역문

융희3년 민상제10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포내면浦內面 운정리云井里 거주

상고인 이민성李敏星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군天安郡 소동면小東面 중리中里 거주

피상고인 윤좌모尹佐模

위 당사자 사이의 산송 사건에 관하여 1908년 12월 26일에 공주지방법판
소公州地方裁判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해 1909년 1월 18일에 상고인이 상고
신청을 하였다. 이에 당 대심원大審院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취지 첫 번째 점은 다음과 같다.

상고인의 어머니 무덤 소재지는 지난 1898년 4월에 소외인訴外人 윤조이

[尹召弼]로부터 당전當錢 2,500냥에 산 것이고 그 입증으로 갑제1~6호증
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1·2심 재판소가 이를 채용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짓 진술을 신용하여 상고인을 패소시킨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은 오로지 사실
을 심리하는 재판소의 직권에 속하므로, 그 심판에 위법한 조치가 없는 이
상에는 이를 비난하며 상고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본건은 원 재
판소의 심판에 아무런 위법한 점이 없다. 따라서 본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에 속한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상고
의 적법한 이유가 없다.

상고 취지 두 번째 점은 다음과 같다.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아버지가 판임관判任官이었던 것을 부인한다. 따라
서 해당 판임관 첩지帖紙 및 관보와 신문지를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하였
는데 제출 기간을 불문에 부치고 판결한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심문 조서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에서 갑제1~6호증을 제출한 것
외에 증거물을 제출하기 위해 기간을 정할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또 원
재판소도 그 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원
심이 증거물 제출 기간을 불문에 부치고 판결한 것 같은 위법이 있었고 할
수 없으므로 본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 취지 세 번째 점은 다음과 같다.

분묘계한塹墳墓界限律의 성질을 연구하건대, 자기 소유의 산판山坂 내라고
해도 타인의 무덤 경계에 저촉하여 매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고인의 진
술과 같이 상고인이 못자리를 사들여 매장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상고인
도 못자리를 빌려서 매장하였으므로 계한에 저촉한 무덤은 이장해야 한
다. 그런데 상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이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인의
어머니의 남편이 판임관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않았고, 계쟁係爭 무덤이

* 관아에서 구실아치와 노비를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辭令狀이다.

15보步 반 떨어져 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상고인은 분묘계한墳墓界限 내에 매장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상고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본 논지는 원판결의 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공격적이고 결국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가 없음은 명백하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본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 제42조, 제33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1월 28일

대심원 민사부

재판장 판사 증산승지조中山勝之助

<하>판사 목산영수牧山榮樹

<상>판사 홍우석洪祐皙

판사 석천정石川正

판사 함태영咸台永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번역관 고도오팔高島五八

원문

隆熙三年民上第一〇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浦内面 云井里居

上告人 李敏星

忠清南道 天安郡 小東面 中里居

被上告人 尹佐模

右當事者間ノ山訟事件ニ付隆熙二年十二月二六日公州地方裁判所カ宣告シタル判決ニ對シテ隆熙三年一月十八日上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上告人ノ負擔トス

理由

上告趣旨第一點ハ上告人ノ母塚所在地ハ去戊戌四月ニ訴外人尹召史ヨリ當錢二千五百兩ヲ以テ買得シタルモノニシテ其立證トシテ甲第一號乃至第六號證ヲ提出シタリ然ルニ第一二審裁判所カ之ヲ採用セスシテ却テ信スルニ足ラサル誣供ヲ信用シテ上告人ヲ敗訴ニ歸セシメタルハ違法ナリト云フニ在シトモ證據ヲ調査シテ事實ノ當否ヲ判定スルコトハ一ニ事實ヲ審理スル裁判所ノ職權ニ屬スルヲ以テ其審判上ニ違法ノ措置アラサル以上ハ之ヲ批難シテ上告ノ理由ト爲スヲ得ヘキモノニアラス而シテ本件ハ原裁判所ノ審判上ニ於テ何等違法ノ點ナキニ依リ本論旨ハ結局原審ノ職權ニ屬スル證據ノ取捨事實ノ認定ヲ批難スルニ外ナラサルヲ以テ上告適法ノ理由ナシ

同第二點ハ被上告人ハ上告人ノ父カ判任官タリシコトヲ否認スルヲ以テ該判任官帖紙及官報ト新聞紙トヲ證據物トシテ提出セントシタルニ提出期間ヲ不問ニ付シテ判決シタルハ違法ナリト云フニ在レトモ審問調書ニ依ルニ上告人ハ原審ニ於テ甲第一號乃至第六號證ヲ提出シタル外ニ證據物ヲ提出スル爲メ期間ヲ定メンコトヲ申出テタル事蹟ナク又原裁判所モ其期間ヲ定メタル事實ノ認ムヘキモノナキヲ以テ從テ原審ニ於テ證據物提出ノ期間ヲ不問ニ付シテ判決シタルカ如キ違法アリト謂フヘカラサルニ付本論旨ハ其理由ナシ

同第三點ハ墳墓界限律ノ性質ヲ研究スルニ自己ノ所有山坂内ト雖他人ノ

塚ノ界限ニ抵觸シテ入葬スルコトヲ得サルニ付被上告人陳供ノ如ク上告人ハ一墳ノ地ヲ買得入葬シタリト假定スルモ被上告人モ一墳ノ地ヲ借用入葬シタルモノナレハ界限ニ抵觸シタル墳墓ハ移屈セサルヲ得ス然ルニ上告人ノ請求ヲ排斥シタルハ違法ナリト云フニ在レトモ原判決ニ依レハ原審ハ上告人ニ於テ舉證セサルヲ以テ上告人ノ母ノ夫カ判任官タリトノ事實ハ之ヲ認メス而シテ係爭墳墓カ十五步半ノ距離ヲ有スルコトハ爭ナキヲ以テ被上告人ハ墳墓界限內ニ入葬シタリトハ認ムルヲ得サル旨說示シテ上告人ノ請求ヲ排斥シタルモノナレハ本論旨ハ原判決ノ旨趣ニ副ハサル攻撃ニシテ結局事實ノ認定ヲ批難スルニ歸スルヲ免レサレハ其理由ナキヤ明ナリ

以上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其理由ナキニ付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ルモノナリ

隆熙三年一月二十八日

大審院民事部

裁判長 判事 中山勝之助

<下>判事 牧山榮樹

<上>判事 洪祐皙

判事 石川正

判事 咸台永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함

繙譯官 高島五八



1909년 2월 9일 수원-수원

역문

융희3년 민공제6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구친동龜川洞 14통統 4호戶

공소인 김사옥金思玉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장주면章洲面 산남리山南里

피공소인 송의선宋義善

위 당사자 간의 공소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본 사건의 공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공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공소인은 일정한 신청(申立)으로 제1심 판결은 폐기하고, 피공소인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공소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공소인은 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일정한 신청을 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공소인은 공소인에게 1908년 5월에 3,000냥을 빌려서 소를 매득(買得)하였다. 같은 해 8월에 그 소를 2,500냥으

로 하여 소외인(訴外人) 최헌경(崔軒卿)에게 매각하였더니, 그때에 공소인도 와서 그 대여금을 청구하며 소의 대금으로 지급하라고 거듭 말하였다. 그래서 대여금 중 1,950냥을 최헌경이 직접 피공소인의 채무 지급으로 공소인에게 주었다. 또 피공소인은 일찍이 류명백(柳明白)에게도 550냥의 채무가 있었는데, 류명백이 그 반환금을 독촉하였기 때문에 2,500냥 중에서 550냥은 류명백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니 피공소인은 공소인에게 아직도 1,050냥의 채무가 있다. 공소인은 해당 돈의 원금과 이에 대한 6개월분의 이자인 900냥을 청구하였다. 피공소인은 그 변제를 하였으나 공소인은 아직도 1,950냥의 채무가 있다고 칭하며 이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의 삭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바라고 진술(演述)하였다.

공소인은 그 변론(答辯)은 다음과 같다. 1908년 음력 5월 14일에 공소인이 피공소인에게 당오전(當五錢) 3,000냥(600환?)을 5푼(分)의 이자로 빌려 주었다. 같은 해 음력 10월 말에 피공소인이 1,950냥을 먼저 갚았기 때문에 900냥은 3,000냥의 6개월 이자로 충당하였다. 1,950냥은 본전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 1,950냥은 빨리 갚을 것을 재촉하였다. 그러자 피공소인이, “위 금액은 지난 8월 말일에 최헌경으로 하여금 흑우(黑牛) 1마리(隻)를 거간(居間)하고 방매(放賣)하게 하여 해당 값에서 갚게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즉시 최헌경을 불러서 대질하니 최헌경이, “애초에 소를 방매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송의선(宋義善)의 돈을 갚았겠는가? 근거 없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일이 매우 의심스러워서 중간에서 조사해 보니 피공소인의 흑우 1마리를 수원군(水原郡) 남문 밖 객주(客主) 김희경(金禧卿)이 거간하고 방매하여, 해당 소값 2,200냥을 그 자리에서 피공소인이 전부 찾아 간 사실이 매우 명백하였다. 이상 이른바 최헌경이 소를 방매하여 빚을 갚았다는 말은 지극히 교묘하게 속인 것이다. 해당 남은 돈을 한층 더 사납게 독촉하니 피공소인이 수원군에 기소(起訴)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질하는 자리에 이르러 최헌경과 공소인을 수원군수(水原郡守)가 불러들여 검증하였다. 그러나 판결서의 이유가 심문사실에 위반된다고 하여 공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의 공소를 제기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살펴보니 피공소인이 공소인에 대하여, 원금 당오전 3,000

냥과 이에 대한 이자인 당오전 900냥의 채무가 있는 일과 함께 1908년 10월 말일에 위의 원금과 이자 내에서 1,950냥을 변제하였다는 일은 쌍방이 다툴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공소인이 같은 해 8월 중에 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1,950냥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증인 송영심(宋榮心)과 증인 류명백의 진술(供述)에 따르면, 피공소인은 위 8월 중에 1,950냥을 지급한 것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인이 아직도 갚은 일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공소인의 청구는 정당하다. 위에 부합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니 공소인의 공소는 이유가 없다. 공소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民事訴訟費用規則) 제1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2월 9일 판결 선고
 재판소서기 중원무(中原茂)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문

隆熙三年 民控第六號
 判決

京畿道 水原郡 南部 龜川洞 十四統 四戶
 控訴人 金思玉

同道 同郡 章洲面 山南里
 被控訴人 宋義善

右當事者間 控訴事件에 對하야 審理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本件 控訴는 此를 棄却함 控訴費用은 控訴人에 負擔으로 함

事實及理由

控訴人은 一定申立으로하야 第一審判決廢棄하고 被控訴人에 請求는 棄却하고 訴訟費用은 被控訴人負擔으로 判決을 求함 被控訴人은 本件 控訴棄却에 判決을 求한다 一定申立하고 其事實로 被控訴人은 控訴人으로부터 隆熙二年五月에 參千兩借用하야 牛를 買하엿더니 同年八月에 其牛를 貳千五百兩으로하야 訴外人崔軒卿에게 賣却하엿더니 其時控訴人도 來하야 其貸金에 請求를 하고 牛代金으로 支拂하라 申言함에 因하야 其內 千九百五十兩을 崔로 直接하야 被控訴人에 債務支拂로 控訴人에 交付하엿더니 被控訴人은 曾히 柳明白에도 五百五十兩에 債務가 有함으로 同人이 其返金を 督促함에 因하야 貳千五百兩內에 五百五十兩은 同人에 支拂하엿스니 被控訴人은 控訴人에 尙히 千五拾兩에 債務가 有한지라 控訴人은 該錢元金과 此에 對한 六個月分利息으로하야 九百兩請求를 함으로 被控訴人은 其辦濟를 하얏스니 然함에 控訴人은 尙히 千九百五拾兩債務가 有하다 稱하고 此를 請求함에 因하야 本訴를 提起하야 其債務消滅에 確認을 求한 次第이라 演述함 控訴人은 其答辯으로 隆熙二年陰五月十四일에 控訴人이 被控訴人에게 當五錢參千兩〈金六十圓〉을 以五分邊債給이더니 同年陰十月晦日에 被控訴人이 壹千九百五十兩을 先爲辦償이기 九百兩은 參千兩에 六朔利息으로 充當하고 壹千九百五十兩은 本額中으로 充當하고 零條壹千九百五十兩은 從速辦償함을 催促하얏스니 被控訴人이 右金은 去八月晦日에 使崔軒卿으로 黑牛一隻을 居間放賣하야 該價中에서 使之 辦償云云 故로 卽招崔軒卿對質하얏스니 崔云初無賣牛之事이거든 以何宋錢으로 報金債乎아 是乃無根之說이라하기 事甚訝惑하야 從中採探하얏스니 被控訴人에 黑牛一隻을 本郡南門外客主金禧卿이 居間放賣하야 該牛價貳千貳百兩을 卽地에 被控訴人이 沒數覓去한 事實이 十分明白이온즉 以上所謂使

崔哥로 賣牛報債之說은 極爲巧詐이옴기 該零條를 一層猛督하얏스니 被控訴人이 起訴本郡이온 故로 及其對質之場에 崔金兩人을 本郡守가 招致檢證하얏스나 判決書理由가 審問事實에 違反하야 控訴人에 請求는 棄却하얏기 本件控訴를 提呈함이라 陳述함 依하야 案함에 被控訴人이 控訴人에 對하야 元本 當五錢參千兩과 此에 對한 利息 當五錢九百兩에 債務가 有한 事와 并隆熙二年十月晦日 右元利金內에 壹千九百五十兩 辦濟하얏다는 事는 雙方에 爭할바이 無한 故本件에 爭點은 被控訴人이 同年八月中 右元利에 對하야 千九百五十兩을 支拂하얏다 否이라 云하나 第一審에 證人宋榮心 同柳明白供述에 依하면 被控訴人이 右八月中에 千九百五十兩 支拂함은 明認함을 得한지라 然함에 控訴人은 尙히 辦償한 事이 無하다하야 被控訴人에게 返還을 督促함은 不當함으로 被控訴人에 請求는 相當이라 함 右 附合한 第一審 判決은 相當으로하야 控訴人에 控訴는 理由가 無한지라 控訴費用은 民事訴訟費用規則 第一條에 依하야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 三月 九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中原茂



1909년 3월 10일 수원-공주

역문

융희2년 민제88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포내면浦內面 운정리雲井里 거주

원고 이민성李敏星

위 대리인 심상정沈相鼎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주미舟尾

피고 전성안全聖安

위 당사자 간의 입장총入葬塚 굴이掘移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산, 즉 공주군公州郡 목동면木洞面 영보동永保洞 후록麓에 입장入葬한 피고의 무덤을 굴이掘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가 진술한 요지는, 공주군 목동면 영보동 후록의 오현梧峴 산판山坂

전국소局을 지난 1894년 3월 29일에 남월南月에 사는 이창李倉에게 매입하여 수호守護하였는데 지난 1900년경에 피고가 위의 산판 안에 입장入葬하였기에 일정一定한 신청申立을 하였으며, 증거로 갑제1, 제2, 제3, 제4, 제5, 제6호증과 호외號外 제1, 제2, 제3,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변론한 요지는, 본 안건에 딸린 해당 산판이 원고의 소유로 되기 전에 이창의 소유로 존재할 때에 피고의 입장지入葬地를 김조이金召弼에게 매득買得하고 동일한 땅을 또한 이창에게 빌려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펴보니, 원고가 1894년에 이창에게 매입한 사실은 갑제4호증과 제5호증에 의거하여 명확할 뿐 아니라 해당 산판이 원고의 소유인 것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는 해당 산판이 원고의 소유로 이전移轉하기 전인 1893년에 피고의 입장지를 김조이에게 매득한 수표手標라며 수표 1통[度]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본 안건 소송의 확증으로 채용하기 어렵다. 그 까닭은 이창이 소유한 산을 이창에게 매득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김조이에게 매득하였고, 게다가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고가 입장한 장소를 이창에게 빌려 얻었다고 하지만 빌렸다는 증거는 없으며, 원고가 해당 산판을 매입한 후 1900년에 피고가 해당 산판에 입장入葬하였다는 사실은 갑호 및 호외 1~4호증에 의거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근거할 만한 반증反證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판사 이필은李弼殷

1909년 3월 10일

재판소서기 김석호金奭鎬

판사의 명에 의하여 이를 현주懸註함.

일본어 통역사무 겸 재판소서기 송종완宋鍾完

원문

隆熙二年 民第八八號

判決書

京畿 水原郡 浦內面 雲井里 居

原告 李敏星

右代理人 沈相鼎

忠清南道 公州郡 南部面 舟尾

被告 全聖安

右當事者間의 入葬塚掘移請求事件에 對하여 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被告는 原告의 所有山 卽公州郡 木洞面 永保洞 後麓에 入葬한 被告의 塚을 掘移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의 負擔으로 함

事實及理由

原告의 陳述한 要旨로는 公州郡 木洞面 永保洞 後麓 梧峴 山坂全局을 去甲午年 三月 二十九日에 南月居 李倉에게 買入하여 守護하더니 去庚子年 分에 被告가 右의 山坂內에 入葬한지라 一定한 申立을 行하고 證據로 甲第一號 第二 第三 第四 第五 第六號證과 號外 第一 第二 第三 第四號證을 提出하였다

被告는 此에 對하여 辯論한 要旨는 本案係屬된 該山坂이 原告의 所有되기 前 卽李倉의 所有로 存在할 時에 被告의 入葬地를 金召史에게 買得하고 同地所를 又李倉에게 借得하였다 陳述한지라

案컨디 原告가 甲午年에 李倉에게 買入한 事實은 甲第四號 第五號證에 據하여 明確한 者될 뿐아니라 該山坂이 原告의 所有됨은 被告도 亦認하느니마

이며 被告는 該山坂이 原告의 所有로 移轉하기 前 卽癸巳年에 被告의 入葬地所를 金召史에게 買得한 手標라하여 手標一度를 提出하나 此를 以하여 本案訴訟의 確證으로 採用키 難한 所以는 李倉의 所有山을 李倉에게 買得치 아니하고 所有者 아닌 金召史에게 買得하였다 할 뿐아니라 原告는 此를 不認하는 者이오 且被告의 入葬한 地所를 李倉에게는 借得하였다거나 借得한 證據는 無한 者이며 原告가 該山坂을 買入한 後 卽庚子年에 被告가 該山坂에 入葬하였다는 事實은 甲號外 一二三四號證에 據하여 認하기 得할 者인마 被告는 此에 對하여 確據할 反證이 無하기 仍하여 主文과 如히 判決함

公州區裁判所

判事 李弼殷

隆熙三年 三月十日

裁判所書記 金奭鎬

判事의 命에 依하여 此를 懸註함

日語通譯事務 兼掌裁判所書記 宋鍾完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9년 3월 11일 죽산-수원

역문

융희2년 민공제34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죽산군竹山郡 원삼면遠三面
 항소인 윤필구尹弼求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부면南部面 산루동山樓洞
 피항소인 이만성李萬成

위 당사자 사이의 산송 사건에 관해 수원水原군수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본건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항소인은 일정한 신청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은 1908년 음력 12월 7일에 수원군水原郡 유천동柳川洞 기슭에 매장한 아버지 무덤을 이장하며 소송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

은 다음과 같다.

수원군 유천동 뒤 기슭은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항소인의 증조 정3품 윤형렬尹衡烈을 매장한 이래 항소인 집안의 묘소로 소유해 왔다. 그런데 피항소인은 1908년 음력 12월 7일에 항소인의 증조 무덤에서 70여 보 떨어진 항소인의 묘지 내에 피항소인의 아버지를 매장하였기에 그 이장을 구하기 위해 본소本訴에 이르렀다. 그런데 수원水原군수는 항소인에게 패소 선고를 하였기에 항소하며, 그 입증으로 강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강인보姜仁甫의 환문喚問을 구하였다.

피항소인은 주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908년 12월 7일에 항소인의 증조 윤형렬의 무덤에서 70여 보 떨어진 곳에 아버지를 매장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장소는 소외인訴外人 김성오金成五의 소유지이고 항소인의 소유지가 아니기에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을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조종필趙鍾弼의 환문을 구하였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피항소인이 수원군 유천동 뒤 기슭의 항소인의 증조 윤형렬의 무덤에서 70여 보 내에 아버지를 매장한 것은 쌍방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따라서 본건 다툼은 피항소인의 부친을 매장한 장소가 항소인의 묘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강제1호증은 본 항소 신청 후에 작성된 것이며 또 근거가 없는 증명서이므로 충분히 신용할 수 없다. 또한 항소인이 신청한 증인 강인보의 진술은 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증인 조종필의 진술에 따르면 본건 장소는 항소인의 묘지가 아니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항소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이에 항소인의 청구를 배척하며 소송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제1심 판결은 상당하고 본건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3월 11일 판결 선고
재판소 서기 중원무中原茂

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현주懸註함.
1909년 3월 26일
경성지방재판소
재판소 서기·통역 겸무 임광우林光宇

위는 정본임.
1912년 9월 2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재판소 서기 김기환金基煥

원문

隆熙二年民控第三四號
判決

京畿道 竹山郡 遠三面
控訴人 尹弼求

京畿道 水原郡 南部面 山樓洞
被控訴人 李萬成

右當事者間山訟事件ニ付キ水原郡守ノ判決ニ對スル控訴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控訴費用ハ控訴人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控訴人ハ一定ノ申立トシテ第一審判決ヲ取消シ被控訴人ハ隆熙二年陰十二月七日水原郡柳川洞麓ニ葬リタル父ノ墓ヲ移堀スベシ訴訟費用ハ被控訴人ノ負擔トストノ判決ヲ求メ其事實トシテ水原郡柳川洞後麓ハ今ヲ去ルコト二百餘年前控訴人ノ曾祖正三品尹衡烈ヲ葬リ爾來控訴人家ノ墓所トシ所有セシニ被控訴人ハ隆熙二年陰十二月七日控訴人ノ曾祖ノ墓ヲ距ル七十餘步内ナル控訴人ノ墓地内ニ被控訴人ノ父ヲ葬リタル故ニ其移堀ヲ求ムル爲メ本訴ニ及ヒタル處水原郡守ハ控訴人ニ敗訴ヲ言渡シタルニヨリ控訴ヲ爲シタリト述ヘ其立證トシテ甲第一號證提出シ證人姜仁甫ノ喚問ヲ求メ

被控訴人ハ主文記載ノ如キ判決ヲ求メ其答辯トシテ隆熙二年十二月七日控訴人ノ曾祖尹衡烈ノ墓ヲ距ルコト七十餘步ノ地内ニ被控訴人ノ父靈ヲ葬リタルコトハ相違ナシ然レトモ其場所ハ訴外人金成五ノ所有地ニシテ控訴人ノ所有地ニアラズ故ニ本訴請求ニ應スル能ハズト陳述シ乙第一號證ヲ提出シ證人趙鍾弼ノ喚問ヲ求メタリ

依テ案スルニ被控訴人ガ水原郡柳川洞後麓控訴人ノ曾祖尹衡烈ノ墓ヲ距ル七十餘步内ニ父ヲ葬リタルコトハ雙方爭ナキ所ナリ故ニ本件ノ爭ハ被控訴人ノ父ヲ葬リタル場所ハ控訴人ノ墓地ナルヤ否ヤニアリ甲第一號證ハ本控訴申立後ノ作成ニ係リ且ツ根據ナキ證明書ナルニヨリ信ヲ措クニ足ラズ尙ホ控訴人ノ申請シタル證人姜仁甫ノ供述ハ未タ以テ控訴人ノ主張ヲ認定スルニ足ラズ却テ證人趙鍾弼ノ供述ニ依レバ本件場所ハ控訴人ノ墓地ニア라ズト認ムルニ足ル故ニ控訴人ノ請求ヲ不當ナリ因テ控訴人ノ請求ヲ排斥シ訴訟費用ハ控訴人ノ負擔トスベキモノトス

右同趣旨ニ出テタル第一審判決ハ相當ニシテ本件控訴ハ其理由ナシ訴訟

費用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キ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三月十一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中原茂

右依裁判長命令懸註
隆熙三年三月二十六日
於同廳 裁判所書記通譯兼務 林光宇
右正本也
大正元年九月二十七日
京城地方法院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金基煥



1909년 3월 27일 용인-수원

역문

융희3년 민공제2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 지내면枝內面 덕동德洞

항소인 이영선李英善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남창동南昌洞

피항소인 나성규羅聖奎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장도張燾

위 당사자 사이의 산송 사건에 관해 수원水原군수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항소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항소 대리인은 항소 기각 판결을 구하였다. 그 사실로서 피항

소 대리인이 진술한 바는 다음과 같다.

피항소인은 1908년 5월에 소외인訴外人 이유선李裕善으로부터 수원군水原郡 장주면章州面 저미동低眉洞 소재 산기슭 한 곳 80보步의 분산墳山을 사들였다. 따라서 위 소외인은 그곳에 있는 분묘를 이전하고자 하였는데, 항소인은 그곳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방해하였다. 이에 항소인에 대해 위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하기 위해 본소本訴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입증으로 강제1호증 1·2, 강제2호증<송부축탁[取寄] 기록>을 제출하고 또 인증人證을 신청하였다.

그 사실로서 항소인이 진술한 바는 다음과 같다.

피항소인이 청구하는 토지는 본래 이익승李翼昇의 소유이다. 그런데 그의 양자인 이유선이 양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승이 사망한 후 상속하자 해당 토지를 매각하였기에 작년 음력 8월 2일에 양가養家를 떠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항소인*도 해당 토지를 사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유선으로부터 사들인 것이기에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을제1·2호증을 제출하고 또 인증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항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본건 토지는 고故 이익승의 소유인 것을 소외인 이유선이 상속한 것이고 이 소외인이 피항소인에게 매각한 것은 군수가 증명한 강제2호증 매매 계약서에 의해 명료하다. 그런데 항소인은 이유선이 양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가養家の 토지를 매각하였고 피항소인은 매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매입하였기 때문에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항소인은 본소 청구에 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 판결은 상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가 없다. 이에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문에는 '被控人'으로 되어 있으나 '被控訴人'의 오키로 판단하여 '피항소인'으로 번역하였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3월 27일 판결 선고

재판소 서기 중원무中原茂

위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1909년 4월 6일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통역 겸무 임광우林光宇

위는 정본임.

1912년 9월 2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재판소 서기 김기환金基煥

원문

隆熙三年民控第二號

判決

京畿道 龍仁郡 枝內面 德洞

控訴人 李英善

京畿道 水原郡 南部 南昌洞

被控訴人 羅聖奎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張燾

右當事者間山訟事件ニ付キ水原郡守が言渡シタル判決ニ對スル控訴審理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控訴費用ハ控訴人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控訴人ハ第一審判決ヲ取消シ被控訴人ノ請求ハ棄却ストノ判決ヲ求メ被控訴代理人ハ控訴棄却ノ判決ヲ求メ其事實トシテ被控訴人ハ隆熙二年五月中訴外人李裕善ヨリ水原郡章州面低眉洞伏在山一麓八十歩ノ墳山ヲ買受ケタル故右訴外人ハ同所ニ在ル墳墓ヲ移轉セントセシニ控訴人ハ同所ハ自己ノ所有ナリト主張シ妨害ヲ爲スニヨリ控訴人ニ對シ右土地ノ所有權確認ヲ求ムル爲メ本訴ニ及ヒタリト述べ其立證トシテ甲第一號證ノ一二同第二號證<取寄記録>ヲ提出シ且ツ人證ノ申立ヲ爲シ控訴人ハ被控訴人請求ノ土地ハ元ト李翼昇ノ所有ナリシカ同人ノ養子ナル李裕善ガ養子ノ身ナルニ拘ラズ李翼昇死亡後相續スルヤ該土地ヲ賣却シタルニヨリ昨年陰八月二日養家ヲ立去ラシメ被控人^{**}モ該土地ヲ買受ケズト云ヒナガラ李裕善ヨリ買受ケタルモノナル故ニ本訴請求ニ應スル能ハズト陳述シ乙第一二號證ヲ提出シ且ツ人證ノ申立ヲ爲シタリ依テ案スルニ控訴人ノ主張ニ據ルモ本件ノ土地ハ亡李翼昇ノ所有ナリシヲ訴外人李裕善ニ於テ相續シタルモノニシテ右訴外人ガ被控訴人ニ賣却シタルコトハ郡守ノ證明シタル甲第二號證ノ賣買契約書ニヨリ明瞭ナリ然ルニ控訴人ハ李裕善ガ養子ノ身ナルニ拘ラス養家ノ土地ヲ賣却シ被控訴人ハ買受ケサル旨云ヒナカラ買受ケタルニヨリ妨害ヲ爲ス旨抗爭スルモ是レ何等理由ナキモノニシテ不當ナルコト明カナリ果シテ然ラバ控訴人ハ本訴請求ニ應スヘキ責務アリト云ハザル可ラズ

** '被控訴人'의 오기로 보인다.

右同趣旨ニ出テタル原審判決ハ相當ニシテ本件控訴ハ理由ナシ因テ訴訟費用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三月二十七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中原茂

右依裁判長命懸註宮

隆熙三年四月六日

於同廳

裁判所書記通譯兼務 林光宇

右正本也

大正元年九月二十七日

京城地方法院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金基煥



대여금 및 손해 배상에 관한 건

1909년 4월 6일 덕산-수원

역문

융희2년 민제201호

결석 판결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내야면內也面 시묘동侍墓洞

원고 최연구崔淵九

위 소송 대리인 정명섭丁明燮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숙성면宿城面 대조두리大潮頭里

피고 김태연金台淵

위 소송 대리인 이건호李建鎬

위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및 손해 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1909년 1월 19일의 심문 기일 변경에 필요한 부분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는 1908년 10월 3일에 피고에게 대여금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적법한 호출을 받았으나 1909년 4월 6일의 심문 기일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에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4월 6일 판결 선고

재판소 서기 중원무中原茂

원문

隆熙二年民第二〇一號

闕席判決

忠淸南道 德山郡 內也面 侍墓洞

原告 崔淵九

右訴訟代理人 丁明燮

京畿道 水原郡 宿城面 大潮頭里

被告 金台淵

右訴訟代理人 李建鎬

右當事者間ノ貸金及損害要償請求事件ニ付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原告ノ訴ハ之ヲ却下ス

訴訟費用中隆熙三年一月十九日ノ審問期日變更ニ要シタル分ハ被告ノ負擔トシ其他ハ原告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原告ハ隆熙二年十月三日被告ニ對シ貸金及損害要償請求ノ訴訟ヲ提起シ適法ノ呼出ヲ受ケナカラ隆熙三年四月六日ノ審問期日ニ出頭セサルニヨリ訴訟費用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四月六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中原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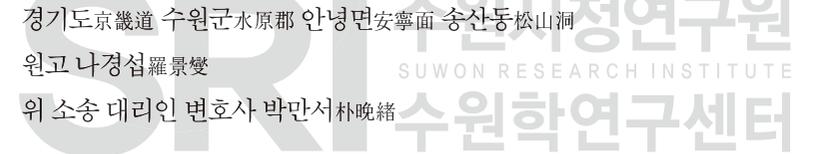


1909년 4월 9일 수원-한성

역문

융희3년 민제164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안녕면安寧面 송산동松山洞

원고 나경섭羅景燮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박만서朴晩緒

한성漢城 중부中部 사동寺洞 4통統 5호戶

피고 유재한劉載漢

위 소송 대리인 등정태랑藤井太郎

위 당사자 사이의 해세海稅 손해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향엽전鄉葉錢 4,750냥 및 이에 대한

1904년 3월부터 본건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금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연 10분의 2의 이자를 변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그 청구 원인 사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1904년 2월에 전라남도全羅南道 관찰사의 사령에 의해 전라남도 무안부務安府 해세감관海稅監官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봄에 반기半期분 해세海稅를 각 객주 및 뱃사람을 독촉하여 생선·소금·미역 등의 세금을 거두고자 하였다. 그때 피고는 당시 해세사검관海稅查檢官이라고 거짓으로 칭하고 또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목포항木浦港 감리서監理署에 무고하여 원고를 구류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객주로부터 북어 6,500척隻의 세금 향엽전(鄕葉) 1,950냥<1척당 3전씩>, 청어 1,400동同의 세금 향엽전 2,800냥<1동당 2냥씩> 합계 향엽전 4,750냥을 가로챘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3월에 전라남도 관찰부에 고소하였고 대질 재판 후 피고 패소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는 소재 불명이었는데, 작년 10월에 경성京城에서 그가 도망간 것을 힐책하고 본건 손해금을 변상할 것을 재촉하였지만 응하지 않았으므로 본소本訴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요컨대 원고가 각 객주로부터 거둘 세금을 피고가 가로채서 원고로 하여금 거두지 못하게 한 것은 곧 피고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입증으로 강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주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그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02년 4월부터 전라남도 무안務安 해세사검관에 임명되어 1904년 3월까지 재임하고 있었고 그동안 직권에 근거하여 해세를 징수하였다. 1904년 2월에 원고 및 소외인訴外人 유재구劉載九로 하여금 징세를 취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거둔 세금을 써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거두어야 할 해세를 피고가 가로채서 그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각 갑호증의 성립은 인정하되 을제1호증을 제출하여 그 입증으로 삼았다.

이유

원고 청구의 취지는 자기가 해세관으로서 각 객주로부터 거둘 세금을 피고가 수세권收稅權이 있다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거둔 것은 곧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피고가 그 관직을 거짓으로 칭하고 객주로부터 세금을 거둔 것은 곧 객주를 속여서 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지, 원고가 객주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침해했을 리가 없다. 원고는 정당한 권리에 근거하여 다시 각 객주로부터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의 불법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은 이상 본건 청구는 주장 사실 자체에 인용할 여지가 없고, 다른 점에 관해서는 설명을 요하지 않아서 원고 패소로 판정해야 한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1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중촌시장中村時章

판사 김의균金宜均

1909년 4월 9일 판결 선고

경성지방재판소

재판소 서기 암산덕병위岩山德兵衛

위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1909년 4월 15일

경성지방재판소

재판소 서기·통역 검무 임광우林光宇

원문

隆熙三年民第一六四號

判決

京畿道 水原郡 安寧面 松山洞

原告 羅景燮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朴晚緒

漢城 中部 寺洞 四統 五戶

被告 劉載漢

右訴訟代理人 藤井太郎

右當事者間ノ海稅損害金請求事件ニ付當裁判所ハ審理判決スルコト如左

主文

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原告ノ負擔トス

事實

原告訴訟代理人ハ被告ハ原告ニ對シテ鄉葉錢四千七百五拾兩及ヒ之ニ對スル光武八年三月ヨリ本件判決執行濟迄元本ヲ超過セサル限度ニ於キテ年十分之二ノ利息ヲ辨償ス可シ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トノ判決ヲ求ムル旨申立ヲ爲シ其請求ノ原因タル事實ハ原告カ光武八年二月分全羅南道觀察使ノ辭令ニ因リ同道務安府海稅監官ニ任命セラレ同年春半期海稅ヲ各客主及船人ニ督シ魚鹽薑等稅ヲ收捧セントスル際被告ハ當時海稅查檢官ナリト假稱シ且ツ原告ニ對シ債權アリト爲シ木浦港監理署ニ誣訴シテ原告ヲ拘留シ各客主ヨリ北魚六千五百隻ノ稅錢鄉葉壹千九百五拾兩〈每隻三錢式〉青魚壹千四百同ノ稅錢鄉葉貳千八百兩〈每同二兩式〉合鄉葉四千七百五拾兩ヲ橫取セリ於之乎原告ハ同年三月全羅南道觀察府ニ之ヲ訴ヘ對質裁判ノ後被告ノ敗訴ニ歸シタリ其后被告ハ所在不明ナリシカ昨年十月分京城ニ於キテ其逃走ヲ詰責シ本件損害金ノ辨償ヲ促カシタル

モ應セサルニ付本訴ニ及ヒタル也要之原告カ各客主ヨリ收捧スベキ稅錢ヲ被告ニ於キテ橫取シ原告ヲシテ收捧スル能ハサラシメタルハ即チ被告ノ不法行爲ニ基因スルヲ以テ爲メニ生シタル損害ヲ要償スル次第ナリト云フニアリテ立證トシテ甲第一號證乃至同第三號證ヲ提出セリ

被告訴訟代理人ハ主文記載ノ如ク判決ヲ求ムル旨申立テ其抗辯ノ要旨ハ被告ハ光武六年四月ヨリ全羅南道務安海稅查檢官ニ任命セラレ同八年三月迄就職シ居リシカ其間職權ニ基キ海稅徵收ヲ爲シタリ其年二月原告及訴外人劉載九ヲシテ徵稅方取扱ハシメタル處原告ハ取立テタル稅金ヲ費消シタル事實アル而已ニシテ原告主張ノ如ク原告カ收捧スベキ海稅ヲ橫取シ其權利ヲ侵害シタル事實ナシト云フニアリテ甲各號證ノ成立ヲ認メ乙第一號證ヲ提出シテ其立證ト爲シタリ

理由

原告請求ノ趣旨ハ自己カ海稅官トシテ各客主ヨリ收捧スベキ稅錢ヲ被告カ收稅權アリト假稱シテ徵收シタルハ則チ原告ノ權利ヲ侵害シタルモノニシテ之ニ因リテ原告ニ損害ヲ與ヘタリト云フニアリ

仍而審案スルニ被告カ其官職ヲ詐リテ客主ヨリ稅金ヲ徵收シタルハ則チ客主ヲ欺キテ之ニ損害ヲ與ヘタルモノニシテ原告カ客主ヨリ收捧スベキ權利ニ對シテハ毫モ侵害アルベキ理ナク原告ハ正當ナル權利ニ基キ更ラニ各客主ヨリ徵收シ得ベカリシ也如之ニシテ被告ノ不法行爲ハ原告ノ權利ニ何等ノ侵害ナキ以上ハ本件請求ハ主張事實自體ニ於キテ認容スベキ餘地ナク他點ニ付說明ヲ要セスシテ原告敗訴ヲ判定スベキナリ訴訟費用ノ負擔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一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中村時章

判事 金宜均

隆熙三年四月九日 判決宣告

於同廳
裁判所書記 岩山德兵衛

右依裁判長命懸註喜
隆熙三年四月十五日
於仝廳
裁判所書記通譯兼務 林光宇



1909년 4월 10일 한성-수원

원문

융희3년 민제171호

판결

한성漢城 북부北部 양덕방陽德坊 계동桂洞 13통統 2호戶

원고 현채玄采

위 소송대리인 지상룡池祥龍

한성漢城 서부西部 양생방養生坊 창동倉洞 1통統 가加 2호戶

원고 안중원安鍾遠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내부內部 토목국출장소土木局出張所 기수技手

피고 조덕환曹德煥

위 당사자 간의 지단값[地段價金]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원고들의 소訴는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 현채玄采의 대리인(代人)은 일정(一定)하게 신청(申立)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70환(圓)과 이에 대한 1909년 1월 15일로부터 판결을 집행완(執行完濟)할 때까지 연 1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공동원고(相原告) 안중원安鍾遠과 함께 소유한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 직동直洞의 전답을 내부(內部) 토목국(土木局)에서 도로 수축(修築)을 위하여 올해 1월 15일에 이를 매상(買上)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토목국의 출장원으로 해당 매상대금을 지급하러 왔는데, 해당 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토지 조각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 소송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演述)하였다.

피고는 일정(一定)하게 신청(申立)하여 원고의 소송(訴訟)을 각하하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내부 토목국에서 도로 수축을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를 해당 연월일에 매상한 것은 틀림이 없다. 당시 피고는 장관의 명으로 해당 매상대금을 토목국에서 토지소유자로 인정한 이완영李完泳에게 교부하라고 함에 따라서 원고 대리인으로 출두한 지상룡池祥龍이 와서 자기소유토지니 해당 대금을 교부하라고 신청하므로 소유자 취조를 이장에게 위임한 일이 있다. 상술한 사정에 의하여 본 소송청구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 현채 대리인의 주장사실은, 원고 현채와 원고 안중원이 공유한 토지를 내부에서 매상하고 피고는 내부 출장원으로 해당 대금 570환(圓)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조각인에게 교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대금지급을 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내부 출장원이므로 그 지급이 부당한 때는 원고에 대하여 내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피고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가 부당한 것이 명료하고, 오히려 원고 안중원安鍾遠은 위 심문기일(審問期日)에 출정(出庭)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이 옳은 것이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4월 10일 판결언도

재판소서기 중원무中原茂

원문

隆熙三年 民第一七一號

判決

漢城 北部 陽德坊 桂洞 十三統 二戶

原告 玄采

右訴訟代理人 池祥龍

漢城 西部 養生坊 倉洞 一統 加二戶

原告 安鍾遠

京畿道 水原郡 內部 土木局 出張所 技手

被告 曹德煥

右當事者間 地段價金 請求事件에 對하여 審理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原告等에 訴는 此를 却下함

訴訟費用은 原告에 負擔으로 함

事實及理由



1909년 4월 13일 수원-한성

原告玄采 代人은 一定申立으로 ㅎ야 被告는 原告에 對ㅎ야 金五百七拾圓 及此에 對ㅎ야 隆熙三年 一月十五日로 判決執行完濟까지 年十分二에 利息을 付ㅎ야 支拂함이 可ㅎ고 訴訟費用은 被告에 負擔으로 判決을 求ㅎ고 其事實로 原告는 相原告安鍾遠과 共히 京畿道 龍仁郡 直洞에 所有ㅎ 田畝을 內部土木局에서 道路修築爲ㅎ야 本年 一月十五日 此를 買上ㅎ고 然함에 被告는 土木局에 出張員으로 ㅎ야 該買上代金에 支拂ㅎ러 來ㅎ야스니 該代金을 原告에 交付치 아니ㅎ고 該土地小作人에 交付ㅎ야스니 因ㅎ야 被告에 對ㅎ야 本訴請求를 ㅎ 次第이라 演述함

被告는 一定申立으로 ㅎ야 原告에 訴는 却下判決을 求ㅎ고 其事實로 內部土木局에서 道路修築爲ㅎ야 原告에 主張土地를 同年月日에 買上함은 相違無ㅎ고 當時 被告는 長官에 命으로 該買上代金을 土木局에서 土地所有者로 認ㅎ 李完泳이게 交付ㅎ라함에 原告代人으로 ㅎ야 出頭ㅎ 池祥龍이 來ㅎ야 自己所有土地이니 該代金을 交付ㅎ라 申出함으로 所有者取調를 里長에 委任ㅎ 事가 有ㅎ고 上述次第에 依ㅎ야 本訴請求는 訴自體에 不適法이라 陳述함 依ㅎ야 案함에 原告玄采代理人 主張事實은 原告玄采 原告安鍾遠으로 共有ㅎ 土地를 內部에서 買上ㅎ고 被告는 內部出張員으로 ㅎ야 該代金 五百七拾圓을 支拂에 當ㅎ야 原告等에 交付치 아니ㅎ고 小作人에 交付함은 不當ㅎ 故로 被告에 其代金支拂을 求ㅎ다 云ㅎ나 雖然이나 被告는 內部出張員인 故로 其支拂이 不當ㅎ 時는 原告에 對ㅎ야 內部에서 其責任을 負擔함이 可ㅎ 者로 ㅎ야 被告에 何等責任이 無ㅎ 故로 原告에 主張自體에 不當ㅎ 事가 明瞭ㅎ지라 尙히 原告 安鍾遠은 右審問期日에 出庭치 아니함으로 原告等에 請求를 棄却함이 可ㅎ 者로 ㅎ고 訴訟費用은 民事訴訟費用 規則 第一條에 依ㅎ야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 四月 十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中原茂

역문

융희2년 민제24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매향동梅香洞 거주

원고 이종악李鍾岳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목金正穆

동 변호사 강전영岡田榮

한성漢城 서부西部 장흥방長興坊 장흥동長興洞 거주

피고 강석호姜錫鎬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영정도충永井道忠

위 당사자 간의 사기로 빼앗긴 돈의 반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訴求]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군水原郡 상흥면床笏面 서천鋤川에 소재한 우자답虞字畓 2석石 16두락斗落, 도자답陶字畓 4두락, 당자답唐字畓 2두락, 적자답吊字畓 9두락, 진위군振威郡 이탄면二炭面 안자답安字畓 1석 2두락, 사자답辭字畓 5두락, 한덕현韓德玄이 손수 경작하는 논 7두락, 진위군 울북면栗北面 나자답羅字畓 10두락, 순자답純字畓 10두락 함께 6석 5두락과 진위군 울북면 황구포黃口浦에 소재한 밭 7일경日耕, 시장柴場 1개소, 들개밭[水荏所] 1개소, 황포黃浦 나무의 배 1척, 엽전 50,000냥을 반환하고, 1903년부터 1908년까지 6개년간의 수확물에 대한 전답의 도조賭租 344석 8두<매석 가격 200냥>, 들개[水荏] 3석<매석 500냥>, 땃감[柴] 300태駄<매태 100냥>, 배의 도지賭地 36석<매석 200냥> 및 엽전 50,000냥에 대하여 1903년 3월 1일부터 1908년 12월 1일까지 연 10분의 2로 손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만약 도조, 들개, 땃감, 배의 도지가 없는 때는 위에 기록한 가격에 의하여 적산積算한 대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구하였다. 그 원인으로 제시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903년<계묘癸卯> 2월에 원고는 이남희李南熙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시절에 무고하게 붙잡혀서 엽전 50,000냥 어음於音을 빼앗겼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 당시 법무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씨에게 상신上申하였더니 이재극씨가 즉시 이남희를 범부로 호출하여 해당 어음을 받아냈다. 그 때 피고가 이재극씨에게 전화로 '위 어음을 경선궁慶善宮에 바칠 터이니 나에게 보내라.'고 통지해서 이재극씨는 위 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인척姻戚 홍종환洪鍾煥을 원고에게 보내 말하길, "이남희에게서 받아낸 어음 50,000냥은 경선궁에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옥에 갇힐 것이고, 바친다면 군수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원고는 앞서 붙잡혔을 때의 고통이 두려워 위 홍종환과 함께 피고 집에 가서 위 어음錢 50,000냥을 피고가 이재극씨로부터 수취한 갑제1, 2호증 어음과 교환하였다. 다음날에 홍종환이 원고에게 와서 피고의 말이라며 이르길, "50,000냥을 바치고 붙잡히는 것을 면하였으니, 그 대가로 나 홍종환을 마름[畝誦]으로 삼아서 본 소송의 목적물 논 6석 5두락과 밭 7일경을 교부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옥에 갇힐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수로 추천

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권력을 무서워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좇아서 추수기 및 위 전답을 준다는 뜻으로 수표手標를 교부하였다. 그 후 홍종환은 피고의 소유라 칭하고 본 소송의 목적물인 배 1척, 시장 1개소, 들개밭 1개소를 이유 없이 점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거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경선궁에 위 50,000냥 사건을 탐문하니, 이러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로 추천한 형적도 없어서 위 교부한 어음전과 전답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 불법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위 전답을 매수하였다고 칭하고 위 조 문권을 작성하여 완고하게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소송에 이르렀다고 일정一定한 신청申立을 하고, 갑제1, 2호증을 제출하며 증인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리위임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903년에 원고가 평리원에 붙잡혔으니 원고의 마름 홍종환이 피고에게 와서 피고의 힘으로 원고를 구출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피고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至尊]에게 아뢰었다. 그리하여 그 후 궁내부에서 전화로 당시 평리원 재판장 이남희에게 엽전 50,000냥은 궁[內]에 바쳐야 하고 원고는 방면해야 한다는 뜻으로 조회하였다. 그 후 50,000냥의 어음을 바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원고를 방면하였다. 이에 원고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피고 집에 왔는데, 원고가 그때 피고에게 비용이 들어 곤궁하니 자기의 논밭을 매수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홍종환을 시켜 그 전답을 조사하게 하고 1,000환圓에 논 6석 5두락과 밭 약간을 매수하였는데, 홍종환이 입회하고서 그 대금도 건네었다. 그 후 2년을 거쳐서 해당 전답은 홍종역洪鍾檣에게 매도하고 구문기舊文記도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청구한 전답은 피고의 소유 및 점유가 아니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대리인이 피고 위임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피고의 대리위임장에서 피고 이름 아래 인영印影과 피고의 대리인이 제출한 한성부漢城府의 피고 인감증명서 인영을 서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로써 해당 위임장은 올바른 것으로 인정한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원고대리인은, 피고는 ‘어음전 50,000냥은 경선궁에 바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옥에 갇혀야 한다.’고 강박強迫하여 50,000냥을 편취하였고, 더욱이 피고가 힘을 써서 위해危害를 면하게 됨에 따라 그 보수로 본건의 전답을 피고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압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권력이 두려워 그 뜻을 따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다. 도리어 홍종환 진술[供述]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평리원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소외인訴外人 이취 주사主事란 자가 증인의 손을 빌어 피고에게 간청하고 어음금을 궁에 바침으로써 원고가 방면될 수 있었다. 그 후 원고가 재정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본건의 전답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고 기타 청구에 대한 어떠한 증빙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배척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4월 13일 판결연도
재판소서기 중원무中原茂

원문

隆熙二年 民第二四號
判決

京畿道 水原郡 梅香洞 居
原告 李鍾岳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金正穆

全 辯護士 岡田榮

漢城 西部 長興坊 長興洞 居

被告 姜錫鎬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永井道忠

右當事者間 詐欺冒奪錢 取戻事件에 對하야 審理判決함이 左와 如흠

主文

原告에 訴求는 此를 棄却흠

訴訟費用은 原告에 負擔으로 흠

事實及理由

原告代理人은 被告는 原告에 對하야 水原郡 床笏面 鋤川所在 虞字番貳石拾六斗落 陶字番四斗落 唐字番貳斗落 吊字番九斗落 振威郡 二炭面 安字番壹石二斗落 辭字番五斗落 韓德玄手作 番七斗落 同郡 栗北面 羅字番拾斗落 純字番拾斗落 合六石五斗落과 同郡 同面 黃口浦所在 田七日耕 柴場一個所 水荏所一個所 黃浦津 船一隻 葉錢五萬兩을 返還하고 光武七年부터 隆熙二年에 至하기까지 六個年間に 收穫物된 田番賭租 參百四拾四石八斗<每石價格貳百兩> 水荏參石<每石五百兩> 柴參百馱<每馱百兩> 船賭參拾六石<每石貳百兩> 及葉錢五萬兩에 對하야 光武七年 三月一日로 隆熙二年 十二月一日까지 年十分二에 損害利息을 支拂하되 若賭租水荏柴船賭가 無하 時는 右記價格에 依하야 積算하 代價로 支拂함이 可하고 訴訟費用은 被告에 負擔으로 判決을 求하고 其原因에 事實로 光武七年<癸卯> 二月에 原告는 李南熙 平理院裁判長時에 無故이 被捉되야 葉錢五萬兩於音을 被奪하고 抑冤不堪하야 當時 法部大臣 李載克氏에 上申하야 더니 同氏는 卽李南熙를 法部에 呼出하야 該於音을 取上할 際에 被告處에 送交하라고 通知하야 李載克氏는 右於音을 被告에게 交付하얏고 然而被告는

其姻族되는 洪鍾煥을 原告處에 送하야 曰 李南熙게서 取上흔 於音 五萬兩은 慶善宮에 進納함이 可하고 不然이면 再히 捉囚되겟고 進納할 時는 郡守에 推舉하겟다하는 故로 原告는 先히 捕捉되야슬 時 痛苦를 恐하야 右 洪鍾煥과 共히 被告方에 往하야 右於音錢 五萬兩을 被告가 李載克氏로부터 受取흔 甲第一二號證된 於音을 交換함은 右翌日에 洪鍾煥이가 原告處에 來하야 被告에 言이라하고 曰 五萬을 進納하고 捕捉을 免하야스즉 其報酬로 自己 洪鍾煥에 舍音하는 本訴에 目的된 畚 六石五斗落 田七日耕을 交付함이 可하고 然할 時는 捉囚에 危險이 無홀뿐 아니라 郡守에 推舉하겟다함으로 原告는 被告에 權力을 恐하야 不得已其言을 從하야 秋收記及右 田畚을 與하는 旨로 手標를 交付하고 其後 洪鍾煥은 被告에 所有라 稱하고 本訴에 目的物된 船一隻 柴場一個所 水荏所一個所를 無故히 又占有함 原告는 被告에 舉動을 恠히 思하야 慶善宮에 右五萬兩事를 探問하즉 如此흔 事가 無할 뿐아니라 郡守에 推舉하 形跡이 無함으로 右交付흔 於音錢과 田畚에 返還을 請求하즉 被告는 其不法行爲 隱匿하기 爲하야 右田畚을 買受하앗다稱하고 偽造에 文券을 作成하고 頑然히 原告要求에 應치 아니함으로 本訴에 及함이라 一定申立하고 甲第一二號證을 提出하며 入證을 申立하고 尙히 被告에 代理委任狀을 否認함

被告代理人은 原告에 請求棄却에 判決을 求하고 其事實로 光武七年에 原告는 平理院에 被捉하앗스니 原告에 舍音 洪鍾煥이 被告에게 來하야 被告에 力으로 以하야 原告를 救出하야달나 哀願함으로 被告는 官에 出仕하故로 至尊에 奏上하야스니 然함에 其後 宮內로부터 電話로하야 時平理院 裁判長 李南熙에게 葉錢 五萬兩은 大內에 納上함이 可하고 原告는 放免함이 可흔 旨照會하앗고 其後 五萬兩에 於音을 納上하 話를 聞하야더니 果然 原告는 放免함으로 原告는 感謝에 意를 表하기 爲하야 被告方에 來하앗스니 原告는 其時 被告에 對하야 費用이 入함에 困하故로 自분에 田地를 買受하야 달나함으로 被告는 洪鍾煥으로 其田畚을 取調케하고 千圓에 畚 六石五斗落 田若干을 買受함에 洪立會하 後 其代金도 渡하고 其後二年을 經하야 該田畚은 洪鍾煥에 賣渡하고 舊文記도 引渡하故로 原告請求하 田畚은 被告에 所有及占有로 在치 아니하고 且原告主張事實은 全然否認하

다 陳述함

原告代理人이 被告에 委任狀 非認當否에 對하야 案함에 被告代理委任狀에 被告名下 印影과 被告代理人 提出하 漢城府 被告에 印鑑證明書 印影과 相對照하야 同一로 認함에 足함으로 以하야 該委任狀은 眞正이라 認定함 本案에 付하야 案함에 原告代理人은 被告에 於音錢 五萬兩은 慶善宮에 進納함이 可하고 然치 아니하면 更히 捉囚함이 可하다 強迫으로 五萬兩을 騙取하고 尙히 被告盡力으로 危害를 免함에 依하야 其報酬로하야 本件에 田畚을 被告에 交付함이 可하다 迫함으로 被告權力에 恐怖하야 其意에 從하야다 云하나 何等 此를 認得하기 可한 證憑이 無하고 却히 洪鍾煥 供述에 依하면 當時 原告가 平理院에 捉囚하야 在함에 對하야 訴外人 李主事 이란 者가 證人에 手를 經하야 被告에 懇請하고 於音金을 大內에 供上하고 以하야 原告가 放免함에 至하고 其後 原告가 財政困難함을 爲하야 本件에 田畚을 被告에 賣渡하 者이라 認得함으로 原告代理人에 右主張은 眞實하다 云함을 得지 못하고 其他 請求에 付하 何等에 證憑이 無하故로 原告에 請求는 全部排斥하고 訴訟費用은 民事訴訟費用規則 第一條에 依하야 主文과 如히 判決함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 四月 十三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中原茂



1909년 4월 17일 공주-수원

의문

융희3년 민공제13호

판결 등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주미舟尾

항소인 전성안全聖安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포내면浦內面 운정리雲井里

피항소인 이민성李敏星

위 당사자 사이의 매장 무덤[入塚] 굴이堀移 청구 항소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항소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항소인은 주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항소인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공소인이 진술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주군公州郡 목동면木洞面 영보동永保洞 뒤 기슭 오현梧峴의 산판山坂은 전부 지난 1894년 3월 29일에 이창李倉으로부터 피항소인이 매입한 이래 수호해 온 곳이다. 그런데 항소인은 지난 1900년 무렵에 그 할아버지를 위 산판의 일부에 매장하여 피항소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장할 것을 청구하며 강제1~10호증을 제출하였다.

항소인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소本訴 계쟁 산판 내 일부에 항소인의 할아버지를 매장한 사실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1893년에 그 소유자인 이창으로부터 그 못자리를 빌려서 같은 해에 매장한 것이지 1900년이 아니다. 또한 그 후 김조이金召弼의 무덤도 그 부근에 있었으므로 김조이에게 백미를 주고 그의 승낙을 구하였고, 피항소인이 매입하기 전에 이미 항소인이 정당하게 매장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와서 그 굴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을제1·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이창의 심문을 구하였다.

이유

따라서 살펴보건대, 강제4·5호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1894년 3월에 본안 계쟁 땅을 소외訴外 이창이라는 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당심當審 증인 이창의 진술을 참작하건대 계쟁 산판이 전부 위 피항소인에게 매각되기 전, 곧 1893년에 현재 소송 목적인 항소인이 그 할아버지를 매장한 못자리를 당시 소유자인 이창이 항소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매각 당시에는 이미 본소 계쟁 항소인 할아버지 무덤이 계쟁 산판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항소인은 그 산판 전부에 대해서는 그가 매입한 당시의 현상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이후 설령 피항소인이 계쟁 산판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전에 이미 적합하게 조성한 무덤에 대해 그 굴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라고 본다.

그리고 항소인이 못자리를 빌리기 전인 1892년 10월에 피항소인도 못자리를 매입하여〈갑제2·3호〉 선대를 매장하였는데, 그 무덤과 계쟁 항소인 무덤 간의 거리가 수백 보步라는 사실은 당심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인정할 만하다. 따라서 분묘계한墳墓界限 규정에 의거해도 피항소인은 그 굴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명백하다고 본다.

피항소인은 1900년에 항소인이 암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제6~9호증은 전부 당 재판소는 신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항소인의 입증 방법에 의해서는 위 인정을 충분히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항소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재판소가 항소인을 패소시킨 것은 부당하며 항소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민사부
재판장 판사 울원등태랑栗原藤太郎
판사 죽미의마竹尾義麿
판사 이원국李源國

1909년 4월 17일 선고

재판소 서기 대곡정삼랑大谷正三郎

위는 등본임.

1909년 5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재판소 서기 오희섭吳熙鑷

원문

隆熙三年民控第一三號

判決謄本

忠淸南道 公州郡 南部面 舟尾

控訴人 全聖安

京畿道 水原郡 浦內面 雲井里

被控訴人 李敏星

右當事者間ノ入塚掘移請求控訴事件ニ對シ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繳消ス

被控訴人ノ請求ヲ却下ス

訴訟費用ハ被控訴人ノ負擔トス

事實

控訴人ハ主文ニ記載セルト同一趣旨ノ判決ヲ求ムル旨陳述シ被控訴人ハ控訴棄却ノ判決ヲ求メタリ

被控訴人カ演述シタル事實ノ要旨ハ公州郡木洞面永保洞後麓梧峴ノ山坂全部ハ去甲午三月二十九日李倉ヨリ被控訴人ニ於テ買得シ爾來守護シ居ル者ナリ然ルニ控訴人ハ去庚子年頃其祖父ヲ前山坂ノ一部ニ入葬シ被控訴人ノ所有權ヲ侵害スルヲ以テ此カ掘移ヲ請求スルニ在リト謂フニ在リテ甲第一號乃至第十號證ヲ提出シタリ

控訴人答辯ノ要旨ハ本訴係爭山坂內ノ一部ニ控訴人祖父ヲ入葬シタル事實ニ相違ナキモ右ハ癸巳ノ年所有者李倉ヨリ其一曠ノ地ヲ借得シ其年入葬シタル者ニシテ庚子ノ年ニハ非ス且其後金召史ノ墳墓モ亦其付近ニ在ルヲ以テ金召史ニ白米ヲ給シテ全人ノ承諾ヲ求メタルモノニ係リ被控訴

人カ買得スル以前既ニ控訴人ニ於テ正當ニ入葬シタル者ナレハ今日此カ掘移ヲ請求スルハ不當ナリト謂フニ在リテ乙第一二號證ヲ提出シ證人李倉ノ審問ヲ求メタリ

理由

依テ案スルニ甲第四五號ニ依レハ被控訴人ハ甲午年三月本案係爭ノ土地ヲ訴外李倉ナル者ヨリ買得シタル事實ヲ認ムルニ足ルヘシト雖トモ當審ノ證人李倉ノ供述ヲ參酌スルニ係爭ノ全山坂カ前掲被控訴人ニ放賣セララルル以前即チ癸巳ノ年ニ在リテ現ニ訴訟ノ目的タル控訴人祖父ノ入葬ニ係ルー墳ノ地ヲ當時ノ所有者李倉ヨリ控訴人ニ貸與シタル事實ヲ推認スルニ足ルヘク又證人ノ供述ニ依レハ其放賣ノ當時ニハ既ニ本訴係爭控訴人祖父ノ墳塚カ係爭山坂ニ存在セシ者ナル事ヲ認メ得ヘキヲ以テ被控人ハ其全山坂ニ對シテハ其買得シタル當時ノ現狀ニ於テ該土地ニ對スル權利ヲ取得シタル者ト謂ハサルヘカラサルニ依リ爾後縱令被控訴人カ係爭全山坂ノ所有權ヲ取得シタリトスルモ其取得以前ニ於テ既ニ適當ニ爲シタル墳塚ニ對シ之カ掘移ヲ請求スル權利無キヤ論ヲ竣タサルモノトス而シテ控訴人カー墳之地ヲ借得セル以前壬辰ノ年十月被控訴人モ亦一墳ノ地ヲ買得シク甲第二三號ノ先代ヲ葬シタル墳塚ト係爭控訴人ノ墳塚トノ距離カ數百步ヲ離ルル事ハ當審ノ證人ノ供述ニ照シ認ムヘキニ依リ墳墓界限ノ規定ニ因リテモ被控訴人ハ此カ掘移ヲ求ムルノ權利ナキヤ明白ナリトス被控訴人ハ庚子ノ年ニ於テ控訴人カ偷葬シタルモノナリト主張スレトモ甲第六號乃至第九號證ハ共ニ當裁判所ハ信用セサルヲ以テ此ヲ採用セス此他被控訴人ノ證據方法ニ因リテハ前認定ヲ覆スニ足ラサルヲ以テ被控訴人ノ主張ハ此ヲ認容スルヲ得ス然ルニ原裁判所カ控訴人ヲ落科ニ置キタルハ失當ニシテ控訴ハ其理由アルモノトス
仍テ主文ノ如ク判決ス

* 문맥상 '被控訴人'의 오기로 보인다.

公州地方裁判所民事部
裁判長 判事 栗原藤太郎
判事 竹尾義麿
判事 李源國
隆熙三年四月十七日 言渡
裁判所書記 大谷正三郎

右謄本也
隆熙三年五月一日
公州地方裁判所
裁判所書記 吳熙鑷





대여금 및 손해금에 관한 건

1909년 4월 29일 덕산-수원

역문

융희3년 민제223호

판결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내야면內也面 시묘동侍墓洞

원고 최연구崔淵九

위 소송 대리인 정명섭丁明燮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숙성면宿城面 대조두리大潮頭里

피고 김태연金台淵

위 소송 대리인 이건호李建鎬

위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및 손해금 청구 사건에 관해 1909년 4월 6일 당 재판소가 선고한 결석 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故障]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357원 20전 및 그 가운데 74원 65전에 대해서는 1908년 5월 21일부터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연 10분의 4의 이자, 252원 5전에 대해서는 그해 5월 21일부터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연 10분의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그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1907년 음력 5월에 방리중邦利重·노성규盧性奎 2인은 원고에게 피고 김태연金台淵과 공동으로 원고의 집 부근의 산림을 매수하여 벌목에 종사하므로 당분간 그 비용과 숙박료를 해당當舖해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믿고 이를 승낙하여 그들에게 110원을 해당하고 또 242원 5전어치 음식을 공급하였으며, 위 2명의 요구에 따라 그해 10월에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방리중의 손을 거쳐 1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벌목을 경성京城에 운반한 뒤 그 운송 비용과 함께 경성에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

이에 원고는 방리중과 함께 벌목을 경성에 운반하고 그 비용 74원 65전 및 위 해당當舖金 숙박비 잔금을 합쳐 326원 80전의 증서를 피고 대리인 노성규로부터 수취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목재 운반을 위해 경성을 왕복한 여비·식비 등 30원 50전의 비용을 요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목재를 매각할 수 없었음을 구실로 삼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소本訴 해당금 숙박비 및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이자를 붙인다는 약속이 있었고, 특히 위 운송비는 원고가 시장 이자로 5일마다 2푼으로 정하여 빌렸으며 피고도 같은 이율로 이를 변제할 것을 승낙한 상태이므로 이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 그리고 입증 방법으로 강제 1~3호증을 제출한다.

피고 대리인은 위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07년에 노성규·방리중과 공동으로 직산군稷山郡의 금광 회사에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원군水原郡의 윤가尹哥의 산림을 매수하여 이를 벌목한다는 계약을 맺은 적은 있다. 하지만 그 후 위 계약은 3인이 합의하여 이를 해약하였고 방리중으로부터 아직 위 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이 동 계약서를 이용해 원고를 속였을지도 모르지만, 본소 원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피고가 전혀 관여하여 이는 바가 아니기에 원고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입증 방법으로 을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유

따라서 살펴보면, 갑제1호증에는 비용, 벌목 당시 술값과 밥값 및 고용 임금을 합쳐 326원 70전<그 중 74원 65전은 운송비>를 1908년 6월 20일을 기한으로 갚을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김태연의 대리인 노성규의 서명 날인이 있다. 하지만 동호증은 피고 대리인이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곧바로 채택하여 원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노성규는 소재 불명이므로 그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본소 갑제1호증을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할 근거가 없다. 또한 갑제2·3호증은 아직 이것을 가지고 본소 원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기에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 규칙 제1조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 제2부

재판장 판사 경장삼랑境長三郎

판사 김철현金喆鉉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4월 29일 판결 선고

재판소 서기 중원무中原茂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190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판소

재판소 서기 김기정金淇正

원문

隆熙三年民第二二三號

判決

忠淸南道 德山郡 內也面 侍墓洞

原告 崔淵九

右訴訟代理人 丁明燮

京畿道 水原郡 宿城面 大潮頭里

被告 金台淵

右訴訟代理人 李建鎬

右當事者間ノ貸金及損害金請求事件ニ付隆熙三年四月六日當裁判所カ言渡シタル關席判決ニ對スル原告ノ故障ヲ受理シ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テ

主文

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原告ノ負擔トス

事實

原告代理人ハ被告ハ原告ニ對シ金三百五十七圓二十錢及內金七十四圓六十五錢ニ對シテハ隆熙二年五月二十一日ヨリ完濟迄年十分ノ四ノ利息內金二百五十二圓五錢ニ對シテハ同年五月二十一日ヨリ完濟迄年十分ノ二ノ利息ヲ支拂フ可シ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トノ判決ヲ求メ其事實關係ニ付原告ハ宿屋業ヲ營ミ居ルモノナル處隆熙元年陰五月中邦利重慮性奎兩名ハ原告ニ對シ被告金台淵ト共同ニテ原告宅附近ノ山林ヲ買受ケ伐木ニ從事スルニ付當分其費用及宿料ヲ立替ヘ吳レトノコトニテ原告ハ被告ヲ信用シ之ヲ承諾シ同人等ニ金百十圓ノ立替及金二百四十二圓五錢ノ飲食物ヲ供給シ右兩名ノ求メニヨリ同年十月被告ニ對シ之レカ請求ヲ

爲シタルニ被告ハ邦利重ノ手ヲ經テ金百圓ヲ支拂ヒ殘金ハ伐木ヲ京城ニ運搬シタル上其運送費用ト共ニ京城ニ於テ之レカ支拂ヲ爲ス可キ旨申向ケタルヲ以テ原告ハ邦利重ト共ニ伐木ヲ京城ニ運搬シ其費用金七十四圓六十五錢及前記立替金宿料殘金ヲ合セ金三百二十六圓七十錢ノ證書ヲ被告代理人盧性奎ヨリ受取り且原告カ右木材運搬ノ爲メ京城ニ往復シタル旅費食料等三十圓五十錢ノ入費ヲ要シタレバ之レカ支拂ヲ請求スレトモ被告ハ木材ノ賣却出來サルヲ口實トシ之ニ應セス而シテ本訴立替金宿料及運送費用ニ對シテハ何レモ利子ヲ付スル約束アリテ殊ニ前記運送費用ハ原告カ市場利子每五日二分ノ定メニテ借り受ケ被告モ同利率ニテ之ヲ返濟スルコトヲ承諾シ居リタレバ茲ニ本訴請求ニ及ヒタル旨演述シ立證方法トシテ甲第一號證乃至第三號證ヲ提出シタリ

被告代理人ハ前記主文ノ如キ判決ヲ求メ其答辯トシテ被告ハ丁未年中盧性奎邦利重ト共同ニテ稷山郡ノ金鑛會社ニ木材供給ノ爲メ水原郡尹哥ノ山林ヲ買受ケ之レヲ伐木スル契約ヲ爲シタルコトアルモ其後右契約ハ三名合意ノ上之ヲ解約シ邦利重ヨリハ未タ右契約書ヲ取り戻シ居ラサリシヲ以テ同人等カ同契約書ヲ利用シ原告ヲ欺ギタルヤモ知レサレトモ本訴原告代理人主張事實ハ被告ノ全然關知セサル所ナルヲ以テ原告ノ請求ニ應シ難キ旨演述シ立證方法トシテ乙第一號證ヲ提出シタリ

理由

依テ案スルニ甲第一號證ニハ浮費伐木時酒食費及雇價ヲ合セ金三百二十六圓七十錢<内七十四圓六十五錢運送費>ヲ隆熙二年六月二十日限り備報ス可キ旨ノ記載及金台淵代辦盧性奎ノ署名捺印アルモ同號證ハ被告代理人ニ於テ不知ノ陳述ヲ爲スニヨリ直ニ採テ以テ原告代理人ノ主張事實ヲ認ムル證憑ト爲スヲ得ス而シテ盧性奎ハ其所在不明ナルヲ以テ同人カ被告ヨリ適法ノ委任ヲ受ケ本訴甲第一號證ヲ作成シタルモノナルヤ否ヤヲ明確ニスル由ナシ尙甲第二三號證ハ未タ之ヲ以テ本訴原告代理人ノ主張事實ヲ認ムル直接ノ資料ト爲スニ足ラサルニヨリ原告ノ請求ハ之ヲ認容スルニ由ナシ依テ訴訟費用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

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民事第二部

裁判長 判事 境長三郎

判事 金喆鉉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四月二十九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中原茂

裁判長의命으로 卹懸註喜

隆熙三年五月十二日

於全廳에서

裁判所書記 金淇正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6월 4일 수원-진위

역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문南門 안

원고 홍건섭洪健燮

경성京城 중부中部 수진동壽進洞 24동統 1호戶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용상李容相

경기도京畿道 진위군振威郡 일북면一北面 동천동東泉洞

피고 홍성천洪性天

위 당사자 사이의 융희3년 민제21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결석한 채 심문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원금 600원圓 및 이자 잔액 100원 합계 700원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는 주문에 기재된 취지의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1906년 음력 2월 3일에 30,000냥兩<신 화폐 600원>을 월 5푼分 이자에 기한은 같은 해 윤4월 말일 이내로 정하고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자는 몇 차례에 걸쳐 25,000냥<신 화폐 500원>을 주었지만 원금 및 이자 잔액은 갚으라고 청구해도 갚지 않았다. 이에 이자는 연 10분의 4로 제한한 뒤 계산하고 또 원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여 본소本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강제1호증을 제출하여 그 주장을 입증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호출을 받았음에도 1909년 6월 4일 오전 10시의 심문 기일에 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 사실은 강제1호증에 비추어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심문 기일에 출정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6월 4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법정

재판장 판사 총원우태랑塚原友太郎

판사 박용태朴瑢台

판사 근동수수近東壽穗

1909년 6월 4일 선고

경성지방재판소

재판소 서기 본전영本田榮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미전만尾田滿

원문

判決

京畿道 水原郡 南門內

原告 洪健燮

京城 中部 壽進洞 二十四統 一戶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李容相

京畿道 振威郡 一北面 東泉洞

被告 洪性天

右當事者間隆熙三年民第二十一號貸金請求事件ニ付キ被告缺席ノ儘審問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原本金六百圓ト利息殘額金壹百圓合計金七百圓ヲ報給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原告ハ主文記載ノ趣旨ノ判決ヲ求ムル旨ノ申立ヲ爲シ其事實トシテ原告ハ被告ニ光武十年丙午陰二月三日ニ金參萬兩<新貨六百圓>ヲ月五分ノ利息ニテ期限ハ全年閏四月晦內ト定メテ貸與シタルニ利息ハ數度ニテ二萬五千兩<新貨五百圓>ヲ差入レタルモ原本金ト利息殘額ハ返濟方ヲ請求スルモ辨濟ヲ爲ササルニヨリ利息ハ年十分ノ四ニ制限ノ上計算シ且元本額ニ超過スル部分ヲ控除シ本訴ニ及ヒタリト主張シ甲第一號證ヲ提出シ其ノ主張ヲ立證シタリ

被告ハ合式ノ呼出ヲ受ケナガラ隆熙三年六月四日午前十時ノ審問期日ニ

出廷セス

依テ案スルニ原告主張ノ事實ハ甲第一號證ニ照シ明確ナルノミナラス被告カ審問期日ニ出廷抗爭ヲ爲ササルヲ以テ見ルモ原告ノ主張ハ理由アルモノト認ム依テ訴訟費用ニ付キ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シタリ

隆熙三年六月四日

於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法廷

裁判長 判事 塚原友太郎

判事 朴塔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六月四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本田榮

裁判長의 命을 依하야 懸註함

繙譯官補 尾田滿



1909년 6월 10일 인천-남양

역문

판결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부내면府內面 내동內洞 7통統 8호戶

원고 김여장金汝章

위 소송 대리인 손응준孫應駿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읍중동邑中洞

피고 홍서구洪敘九

위 당사자 사이의 용희3년 민제1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심문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금 480원圓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인천부仁川府 부내면府內面 내동內洞의 여관인 한우근韓禹根

의 집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1908년 4월 20일에 피고는 위 한우근의 집에 숙박하였는데, 그때 1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분실하자 이를 원고가 훔쳤다고 칭하면서 인천경찰서仁川警察署에 무고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동 경찰서에 인도되어 3달 동안 구류되어 무수한 악형惡刑을 받았으나 원래 원고는 훔친 사실이 없기에 취조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아 출감하였다. 그러나 위 악형을 받았기에 오른쪽 다리의 근대筋帶가 끊어져서 불구의 몸이 되었고 출감한 뒤 치료비로 337원 37전을 요하였다.

또한 원고는 한우근 집의 사용인으로서 매월 급료 12원씩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구류 중 및 출감 후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즉 올해 4월까지는 그 급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그 손해금은 44원이 되어 함께 481원 37전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무고라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에 본소本訴를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강제1~3호증으로 그 주장을 입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바란다는 신청을 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가운데 피고가 여관인 한우근의 집에 숙박하였다는 것, 그 숙박 중에 금품을 분실하였다는 것은 인정한다. 또한 그 분실에 관해 원고에게 이는 원고의 소행일 것이므로 속히 돌려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를 절도범으로 고소한 사실은 없다. 원고가 인천경찰서에 인도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훔친 것은 원고의 소행일 것이니 속히 돌려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을 때(원고가) 피고에게 구타 등의 폭행을 가하였기에 여관 주인 한우근이 순사를 불러와서 결국 원피고 쌍방이 모두 경찰서에 인도된 사정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행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항변하고 강제1·2호증은 부인하되 강제3호증의 성립은 인정한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강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절도범이라고 칭하면서 고소를 하였기에 원고는 인천경찰서에 인도·구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도·구류는 해당 관헌의 행동에 속하고 피고가 고의로 부실한 고소를 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원고는 그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에 관

해 입증을 하지 않았기에 본소는 손해 청구의 원인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청구의 원인이 없다고 한다면 금액에 관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재판장 관사 충원우태랑塚原友太郎

관사 박용태朴瑢台

관사 근동수수近東壽穗

1909년 6월 10일 선고

경성지방법재판소 인천 지부

재판소 서기 본전영本田榮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미전만尾田滿

원문

判決

京畿道 仁川府 府內面 內洞 七統 八戶

原告 金汝章

右訴訟代理人 孫應駿

同道 南陽郡 邑中洞

被告 洪紱九

右當事者間隆ノ熙三年民第一九號損害賠償請求事件ニ付審問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原告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原告ハ被告ハ原告ニ對シ損害金四百八十圓ヲ支拂フ可シ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トノ判決ヲ求ムル旨ノ申立ヲ爲シ其事實トシテ原告ハ仁川府府內面內洞旅館韓禹根方ニ雇ハレ中隆熙二年四月二十日被告ハ右韓禹根方ニ宿泊シタルガ其際百圓相當ノ金品ヲ紛失シ之ヲ原告カ竊取シタリト稱シ仁川警察署ニ誣告シタル爲メ原告ハ同署ニ引渡セラレ三個月間拘留セラレ無數ノ惡刑ヲ受ケタルモ元來原告ハ竊取ノ事實ナキモノナレバ取調ノ結果不起訴ノ處分ヲ受ケ出監シタルガ右惡刑ヲ受ケタル爲メ右脚ノ筋帶ヲ切斷シ不具ノ身トナリ出監後其治療費ニ三百三十七圓三十七錢ヲ要シ又原告ハ韓禹根方ノ雇人トシテ毎月給料金十二圓宛ヲ受ケ居リタルニ其拘留中及出監後疾病全治迄則本年四月迄ハ其給料ヲ受クル能ハサルニヨリ其損害金百四十四圓トナリ合計四百八十一圓三十七錢ノ損害ヲ受ケタルカ右ハ全ク原告ノ誣告ナル不法行爲ニヨリ生シタル損害ナルニヨリ本訴ヲ以テ請求シタル次第ナリト主張シ甲第一號證乃至甲第三號證ヲ以テ其主張ヲ立證シタリ

被告ハ原告ノ請求ヲ棄却セラレタシトノ申立ヲ爲シ其事實トシテ原告主張ノ事實中被告カ旅館韓禹根方ニ宿泊シタルコト其宿泊中金品ノ紛失シタルコトヲ認メ且其紛失ニ付キ原告ニ對シ右ハ原告ノ處爲ナランニヨリ速ニ返却ス可キ旨ノ請求ヲ爲シタル事實アルモ原告ヲ竊盜犯人トシテ告訴ヲ爲シタル事實ナク原告ノ仁川警察署ニ引渡セラレタルハ被告カ原告ニ對シ物品竊取ハ原告ノ處爲ナラン依テ速ニ返却ス可キ旨請求シタル際被告ニ對シ毆打其他ノ暴行ヲ加ヘタルヨリ宿主韓禹根カ巡查ヲ呼ヒ來り

タル爲メ結局原被雙方共ニ警察署ニ引渡セラレタル筋合ニシテ被告ノ處爲ニ非ラサルニヨリ原告ノ請求ニ應スル能ハサル旨抗辯シ甲第一號證甲第二號證ヲ否認シ甲第三號證ノ成立ヲ認メタリ

依テ案スルニ被告ノ成立ヲ認ムル甲第三號證ニ依レバ被告カ原告ヲ竊盜犯人ナリト稱シ告訴ヲ爲シタルニヨリ原告ハ仁川警察署ニ引渡セラレ拘留セラレタル事實ヲ認メ得可キモ其引渡拘留タル當該官憲ノ行動ニ屬シ被告カ故意ヲ以テ不實ノ告訴ヲ爲シタル結果ニ出テタルモノト認ムルコト難ク其他原告ハ其損害ヲ生シタル原因ニ付キ立證ヲ爲ササルニヨリ本訴ハ損害請求ノ原因ナシト認定ス可キモノトス既ニ請求ノ原因ナシトセバ數額ノ點ニ付テハ證明ノ必要ナク原告ノ請求ハ排斥ス可キモノトス依テ主文ノ如ク判決シタリ

隆熙三年六月十日
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
裁判長 判事 塚原友太郎
判事 朴瑤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六月十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本田榮

裁判長의命을依히야懸註함
繙譯官補 尾田滿



1909년 6월 23일 인천-수원

역문

명치42년 <통>제60호

결석판결

인천항仁川港 산수정山手町 2정목丁目 임대업 賃國人

원고 오예당吳禮堂

대리인 석흑행 평石黑行平 · 석총가일石塚嘉弌

수원水原 남문南門 안 남부南部 남창동南昌洞 평민 소목장

피고 구분학송欸本鶴松

위 당사자 사이의 가옥 임대료 사건에 관하여 1909년 6월 23일 오전 10시의 구두 변론 기일에 피고는 적법한 호출을 받았음에도 출두하지 않았다. 원고는 출두하여 주문과 같은 결석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그 청구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08년 9월에 인천항仁川港 신정新町 3정목丁目 6번지番地에 소재한 집을 1개월 임대료로 12원圓을 매달 5일에 지급한다고 약속받고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올해 2월분 및 3월분 <15일분>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본소本訴에 이르렀다면 서가집행 선언을 구한다고 하였다.

당 이사청은 민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8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사실상의 진술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청구를 지당하다고 보며,

가집행 선언에 관해서는 동 제502조 제5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18월에 1909년 3월 6일부터 본건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푼分の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인천이사청 仁川理事廳

부이사관 고목안태랑 高木安太郎

1909년 6월 23일 선고

1909년 6월 23일 원본 영수

이사청 속屬 고교길삼랑 高橋吉三郎



원문

明治四十二年<通>第六〇號

關席判決

仁川港 山手町 二丁目 貸家業 清國人

原告 吳禮堂

代理人 石黒行平

石塚嘉弍

水原 南門內 南部 南昌洞 平民 指物職

被告 杵本鶴松

右當事者間ノ家賃事件ニ付明治四十二年六月二十三日午前十時ノ口頭辯

論期日ニ被告ハ合式ノ呼出ヲ受ケナカラ出頭セス原告ハ出頭シテ主文ノ如キ關席判決ヲ求ムル旨申立テ其請求ノ原因トシテ原告ハ明治四十一年九月仁川巷新町三丁目六番地所在ノ家屋ヲ一ヶ月賃料十二圓毎月五日支拂ノ約ニテ被告ニ貸與シタルニ被告ハ本年二月分及三月分<十五日分>ノ支拂ヲ爲サス依テ本訴ニ及ヒタル旨及假執行ノ宣言ヲ求ムト供述シタリ當理事廳ハ民事訴訟法第二百四十六條及第二百四十八條ニ依リ原告カ事實上ノ供述ハ被告ノ自白シタルモノト看做シ其請求ヲ至當ナリト爲シ假執行ノ宣言ニ付テハ全第五百二條第五號ニ依リ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金拾八圓ニ明治四十二年三月六日ヨリ本件執行濟迄年五分ノ利息ヲ加算シ辨濟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此判決ハ假ニ執行スルコトヲ得

仁川理事廳

副理事官 高木安太郎

明治四十二年六月二十三日 言渡 全日 原本領收

理事廳屬 高橋吉三郎





가옥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6월 30일 한성-수원

역문

융희3년 민제5호

판결

한성漢城 중부中部 수동壽洞 1통統 7호戶

원고 김태진金泰鎭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장도張燾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피고 주식회사 한성은행漢城銀行 지점

위 대표자 위 총무 한상봉韓相鳳

위 소송 대리인 강전영岡田榮

위 당사자 사이의 가옥 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가옥 대금 680원圓에 1908년 4월 22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 100원에 대해 일수(日邊) 4전錢 5리釐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08년 4월 무렵에 소외인(訴外人) 이종한(李鍾漢)의 요청에 의해 경기도京畿道 진위군振威郡 병과면丙坡面 평택역平澤驛에 소재한 최응규(崔應奎) 명의의 집을 위 중한(鍾漢) 명의로 680원에 피고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선 60원을 내주면서 중한(鍾漢) 명의의 가옥 소유권 이전 증명권(證明券)을 교부하지 않으면 대금의 반환과 은행이 정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약속을 맺은 뒤 잔금 620원을 피고의 본점인 한성은(漢城銀行)에 주었다. 그 후 증명권을 교부하라고 누차 청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반환 등을 독촉한 뒤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 강제1~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김계희(金繼禧)의 증언을 원용하였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일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집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차용인이 갚지 않았으므로 전당집행규칙에 의거하여 경매를 신청한 뒤 1908년 4월 6일에 680원으로 소외(訴外) 이종한(李鍾漢)에게 경락(競落)하고 대금을 수령한 뒤 증명을 완료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을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유

따라서 살펴보건대, 원래 취득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 취득 증명권을 교부 받으려면 그 근거가 되는 바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본건 집의 경락인(競落人)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訴外) 이종한(李鍾漢)이라는 점은 을제2호증 및 을제3호증의 2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증명 절차 이행을 약속한 상대방도 역시 그였다는 점은 강제4호증에 의해 인정할 만하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증명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증인 김계희(金繼禧)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증언을 하고 또 강제2호증의

대금 수령증에는 원고의 명의를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위 증언은 충분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대금 수령증은 원고가 이 종환을 대신하여 대금을 주었으므로 그의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충분히 뒤집을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증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금 반환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송 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박용태朴瑑台

판사 근동수수近東壽德

1909년 6월 30일 선고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본전영本田榮

원문

隆熙三年民第五號

判決

漢城 中部 壽洞 一統 七戶

原告 金泰鎭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張燾

京畿道 水原郡

被告 株式會社漢城銀行支店

右代表者 右總務 韓相鳳

右訴訟代理人 岡田榮

右當事者間家舍代金返還請求事件ニ付當裁判所ハ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原告ノ負擔トス

事實

原告代理人ハ被告ハ原告ニ對シ家舍代金六百八十圓ニ隆熙二年四月二十二日ヨリ判決執行濟迄每百圓ニ對スル日歩四錢五釐ノ利息ヲ附シ辨償ス可シトノ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主張ノ要領ハ原告ハ隆熙二年四月頃訴外人李鍾漢ノ要請ニ因リ京畿道振威郡丙坡面平澤驛所在崔應奎名義ノ家舍ヲ右鍾漢名義ヲ以テ代金六百八十圓ニ被告ヨリ買入ルルコトト爲シ先ツ六十圓ヲ出給シ鍾漢名義ノ家舍所有權移轉證明券ヲ交付セサレハ代金返還及之ニ對スル銀行所定ノ利息ヲ請求スヘシトノ約束ヲ締結シタル後殘金六百二十圓ヲ被告ノ本店タル漢城銀行ニ交付シ證明券ノ交付ヲ屢次請求スルモ應セサルニ付代金返還等督促ノ末出訴ニ及ヒタル次第ナリト云フニ在リテ甲第一號證乃至第四號證ヲ提出シ證人金繼禧ノ證言ヲ採用シタリ

被告代理人ハ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トノ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抗辯ノ要領ハ被告ハ曩キニ原告主張ノ家舍ヲ典執シ金圓ヲ貸付ケタル處借用人ニ於テ辨濟ヲ爲ササルニヨリ典當執行規則ニ基キ競賣申請ノ末隆熙二年四月六日代金六百八十圓ニテ訴外人李鍾漢ニ競落シ代金受領後證明ヲ完了シタルモノニシテ之ニ付原告トハ何等干係ナキモノナルヲ以テ請求ニ應スルノ理ナシト云フニ在リテ乙第一號證乃至第三號證ヲ提出シタリ

理由

仍テ案スルニ元來取得者ニ非サルモノカ所有權取得證明券ノ交付ヲ受ケ

ンニハ其據テ來ル所ヲ舉證セサルヘカラサルニ本件家舍競落人カ原告ニ非スシテ訴外李鍾漢ナルコトハ乙第二號證及全第三號證ノニニ徴シ明瞭ナルノミナラス被告カ證明手續履行ヲ約シタル對手者モ亦全人ナルコトハ甲第四號證ニ據リ認ムヘキヲ以テ原告ニ於テ該證明券ノ交付ヲ請求シ得ヘキ權利アルコトハ之ヲ認ムヘカラス尤證人金繼禧ハ原告利益ノ證言ヲ爲シ又甲第二號證ノ代金受領證ニ原告ノ名義記載シアルモ右證言ハ信ヲ措クニ足ラサルヲ以テ之ヲ採用セス又代金受領證ハ原告カ鍾漢ニ代リテ代金ヲ交付シタルカ爲メ其名義ニ作成セラレタリト認メ得ヘキヲ以テ之ノミニ因リ右認定ヲ齎ヘスニ足ラス果シテ然リトセハ證明書ヲ交付セサル場合ニ代金返還等ヲ求ムル權利アリトノ原告ノ主張ハ失當ニシテ從テ之ニ基ク請求ハ其當ヲ得サルモノト認ム尙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朴瑢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六月三十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本田榮



1909년 7월 8일 수원-남양

역문

융희3년 민제23호

결석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현암면玄岩面 유산리柳山里

원고 이선호李宣浩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종성李鍾聲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팔탄면八灘面 독곡리篤谷里

피고 김덕보金德甫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문南門 밖

피고 방재천方在天

위 당사자 사이의 채무 이행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240원圓 및 이에 대한 1908년 12월 23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0분의 2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2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 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訴外 김중엽金中燁에게 묘목墓木값을 받을 것이 있었다. 그런데 김중엽은 피고 2인으로부터 논값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채무에 충당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1908년 11월 8일에 피고 2인은 해당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고, 다시 김덕보金德甫는 주 채무자, 방재천方在天은 보증인이 되어 그해 음력 11월 30일에 240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증서를 주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았기에 위 금액 및 변제기 일 후의 법정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강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 2인은 적법한 호출을 받았음에도 심문 기일인 1909년 7월 8일 오전 9시에 당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았다.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강제1호증의 기재 내용 및 피고 2인이 호출을 받았음에도 출두 및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료하고 또 그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박용태朴瑢台

판사 근동수수近東壽穗

1909년 7월 8일 선고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본전영本田榮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재판소 서기 김창근金彰根

원문

隆熙三年民第二三號

闕席判決

京畿道 水原郡 玄岩面 柳山里

原告 李宣浩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李鍾聲

全道 南陽郡 八灘面 篤谷里

被告 金德甫

全道 水原郡 南門外

全 方在天

右當事者間債務履行請求事件ニ付當裁判所ハ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被告等ハ原告ニ對シ金貳百四拾圓及之ニ對スル隆熙二年十二月二十三日ヨリ判決執行濟迄元本額ヲ超過セサル範圍内ノ年十分ノ二ノ利子ヲ辨償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兩名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原告代理人ハ主文ノ如キ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事實トシテ原告ハ訴外金中燁ニ對シ丘木代金ノ受領スヘキモノアリシカ中燁ニ於テ被告兩名ヨリ番價ノ受領スヘキモノアリトテ債務ニ充當ヲ申入レ隆熙二年十一月八日被告兩名ニ於テ該債權讓渡ヲ承諾シ更ニ德甫カ主債務者在天カ保證人ト爲リ全年陰十一月三十日ニ金貳百四拾圓ヲ辨濟スヘキ旨ノ證書ヲ交付シナカラ期限ヲ經過スルモ辨濟セサルヲ以テ右金額并辨濟期日後ノ法定利

子ヲ請求スル次第ナリト供述シ甲第一號證ヲ提出シタリ
被告兩名ハ適式ノ呼出ヲ受ケナカラ審問期日タル隆熙三年七月八日午前
第九時當所ニ出頭セス
案スルニ原告ノ主張事實ハ甲第一號證ノ記載及被告兩名カ呼出ヲ受ケナカ
ラ出頭且抗辯ヲ爲ササル事蹟ニ徴シ明瞭ニシテ且ツ其請求ハ至當ト認メ尙
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朴瑢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七月八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本田榮
才判長의命으로懸註함
才判所書記 金彰根



1909년 인천-수원

역문

명치42년 민제189호

결석 판결

인천仁川 도산정桃山町 15번호番戶 어물상

원고 송촌송차량松村松次郎

수원水原 정거장동停車場通 <경찰제7호號> 잡화상

피고 궁기만태랑宮崎萬太郎

위 당사자 사이의 외상대금 사건에 관하여 1909년 7월 13일 오전 9시의
구두 변론 기일에 피고는 적법한 호출을 받았음에도 출두하지 않았다.
원고는 출두하여 주문과 같은 결석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
으며, 그 청구 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1909년 1월부터 5월
9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생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월말을 기한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약속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일부는 납부하였지만
결국 일정한 신청 중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기에 본소本訴에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 이사청은 민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8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사실상
의 진술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청구를 지당하다고 보기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120원圓 82전錢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부이사관 하촌상덕河村尙德

원문

明治四十二年民第一八九號

關席判決

仁川 桃山町 十五番戶 魚商

原告 松村松次郎

水原 停車場通<警第七號> 雜貨商

被告 宮崎萬太郎

右當事者間ノ賣掛金請求事件ニ付明治四十二年七月十三日午前九時ノ口頭辯論期日ニ被告ハ合式ノ呼出ヲ受ケナカラ出頭セス原告ハ出頭シテ主文ノ如キ關席判決ヲ求ムル旨申立テ其請求ノ原因トシテ原告ハ被告ニ對シ明治四十二年一月ヨリ同年五月九日迄ノ間ニ數十回ニ魚類ヲ賣渡シ其代金ハ月末限り支拂ノ約ナリシニ被告ハ內幾分ノ拂入ヲ爲シ結局一定ノ申立ノ金額ノ支拂ヲ爲サザルヲ以テ本訴ニ請求スル次第ナリトノ旨ヲ供述シタリ

當理事廳ハ民事訴訟法第二百四十六條及第二百四十八條ニ依リ原告カ事實上ノ供述ハ被告ノ自白シタルモノト看做シ其請求ヲ至當ナリト爲シ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金壹百貳拾圓八拾貳錢ヲ支拂フヘ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京城理事廳

副理事官 河村尙德





1909년 7월 14일 인천-수원

역문

융희3년 민제10호

판결

인천항仁川港 사정寺町 2정목丁目

원고 굴력태랑堀力太郎

위 소송 대리인 대기웅지승大崎熊之丞

경성京城 미동美洞 제1통統 1호戶

피고 김익준金益俊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문南門 밖 장전동場前洞

피고 신태희申泰熙

위 2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진崔鎭

위 당사자 사이의 약정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2인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해 4,261원圓 14전錢 5리釐 및 이에 대한 1909년 4월 2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의 연 2할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2인이 부담한다.

사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2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1원 14전 5리 및 이에 대한 1907년 9월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할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진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07년 5월에 원고는 피고 김익준金益俊이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청호면淸湖面 마산촌馬山村 외 20개 촌의 경부철도 부설지 수용 대금의 채권액 5,554원 1전 5리어치에 대하여, 각기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양도 받은 채권을 피고 신태희申泰熙의 보증으로 3,550원에 양도받았다. 또한 해당 토지 관계 문기文記와, 수용당한 지주가 대금상환[代金引換]으로 탁지부度支部에 상납할 영수증 수신통을 받았다. 그리고 만약 탁지부가 해당 양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수 없을 때는 피고 2인이 해당 채권액 전부를 갚겠다고 약속받았다. 그런데 탁지부는 해당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각기 수용당한 지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약속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하였더니 1,292원 87전을 지급하였을 뿐 잔액은 누차 청구해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잔금 및 이에 대한 지급 불능이 되었을 때부터의 법정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갑제1~3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이규선李奎善·이운경李雲卿·유영실劉永實의 증언을 원용하였다.

피고 2인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진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김익준은 원고가 주장하는 철도부지 수용 대금 채권 중 4,450원 1전 5리를 2할 깎아서 3,550원에 매각하였다는 점과, 탁지부가 위 원피고 사이의 채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각기 수용당한 지주에게 직접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서에 “수용 대금 지급에 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권리 양도자는 책임을 지고 이를 부담하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용 대금 지급에 관하여 문권文券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보정 등을 하겠다는 약속 취지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 4,450원 1전 5리 외에 조성삼趙聖三·김태현金台鉉·강재원姜在元·김창식金昌植·김순필金順必·박윤식朴允植·이치홍李致弘·이치덕李致德·이삼렬李三列·이천복李天卜·유원신劉元臣·이경래李京來·예성유禮性有·공산삼孔散三·유치호劉致鎬·염치언廉致彦·박문실朴文實·정명순鄭明順·정명현鄭明玄·정성집鄭性集·김응칠金應七·윤덕보尹德甫의 묵 및 공은복孔銀卜의 묵 중 1원 32전어치 2건의 권리도 피고가 양도한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원고로부터 매입 위임을 받아 수령증을 수용당한 지주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칭하는 1,292원 87전은 원고가 직접 수용당한 자로부터 받은 것이겠지만 피고는 이에 관련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 신태희는, 피고 김익준이 위에서 주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단지 이것이 확실함을 보증하였을 뿐 내용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을제1·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김윤구金倫求의 증언을 원용하였다.

이유

따라서 살펴보면 첫째, 피고 김익준은 수용 대금 수령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갑제1호증을 주었다는 사실 및 탁지부가 원고에게 해당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단지 해당 증거 중에 “수용 대금 지급에 관하여 운운.”이라는 기재 내용은, 교부한 문권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정 등을 하겠다는 취지에 기초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해당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수용 대금 지급에 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을 지고 부담하겠다.”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항변 취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수용 대금 지급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피고가 동일한 금액을 변상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물며 탁지부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었음은 갑제1호증의 전신前身인 을제1호증 가운데 제5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고, 예상해야 할 문제는 정정할 수 있는 문권의 불비不備보다 오히려 당사자가 좌우할 수 없는 탁지부의 미지급에 있다. 따라서 글자는 조금 다르더라도 의의에서 다른 점이 없고, 이러한 경우에서의 과는 사람의 책임을 명기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로 하여금 매대 대금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원래 일정한 이익을 싼값에 사고파는 당사자의 의사는 해당 이익을 주고받는 데에 있다고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금 액수에 상당하는 책임은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 해제에 의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서 보자면, 피고의 책임은 양도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그 양도액수를 살펴보면, 피고는 그가 인정하는 4,450원 1전 5리 외에는 부탁을 받아 수용당한 지주로부터 수령증을 받아서 원고에게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해당 수령증을 다른 부분과 함께 원고에게 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점, 갑제1호증 제4호의 기재 내용 및 증인 이운경·유영실의 “저희들이 관계한 채권은 피고 김익준이 매입한 것이지 원고가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종합할 때는, 피고가 준 수령증만큼의 권리는 전부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변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요컨대 피고는 위 양도한 권리액과 동일한 금액을 원고에게 변상할 책임을 부담하였고, 여기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 곧 4,261원 14전 5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지당하다고 본다. 또한 원고는 이에 대해 지급 불능이 된 당시부터의 이자를 청구하지만, 채무자가 지체하였음이 명백한 시기 곧 본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를 붙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둘째, 피고 신태희는 피고 김익준의 주장과 같은 계약이 존재함을 보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에 비추

어 볼 때는 김익준과 연대 채무를 부담한 것은 명확하다. 김익준이 부담한 채무는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신태희도 해당 금액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박용태朴瑢台

판사 근동수수近東壽穗

1909년 7월 14일 선고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본전영本田榮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재판소 서기 김창근金彰根

원문

隆熙三年民第一〇號

判決

仁川港 寺町 二丁目

原告 堀力太郎

右訴訟代理人 大崎熊之丞

京城 美洞 第一統 一戶

被告 金益俊

京畿道 水原郡 南門外 場前洞

被告 申泰熙

右兩名訴訟代理人 辯護士 崔鎮

右當事者間約定金請求事件ニ付當裁判所ハ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被告兩名ハ連帶ニテ原告ニ對シ金四千貳百六拾壹圓拾四錢五釐及之ニ對スル隆熙三年四月二日ヨリ判決執行濟迄原本ヲ超過セサル範圍内ニ於ケル年二割ノ利子ヲ辨償ス可シ

其他ノ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被告兩名ノ負擔トス

事實

原告代理人ハ被告兩名ハ連帶ニテ原告ニ對シ金四千二百六十一圓十四錢五釐及之ニ對スル光武十一年九月ヨリ判決執行濟迄年二割ノ利子ヲ辨償スヘシトノ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演述ノ要領ハ光武十一年五月中原告ハ被告金益俊カ京畿道水原郡晴湖面馬山村外二十個村ニ於ケル京釜鐵道敷設地收用代金ノ債權額五千五百五十四圓一錢五釐分ヲ各被收用土地所有者ヨリ讓受ケタル債權ヲ被告申泰熙ノ保證ヲ以テ代金三千五百五十圓ニ讓受ケ該地干係ノ文記及被收用地主カ代金引換ニ度支部ニ上納スヘキ領收證數十通ヲ受領シタリ而シテ若シ度支部ニ於テ該讓渡ヲ認メス又ハ其支拂ニ關シ故障ヲ生シ原告カ直接ニ支拂ヲ受クル能ハサル時ハ被告兩名ニテ該債權額ノ全部ヲ辨償スル約束ナリシニ度支部ハ該讓渡ヲ認メス直接各被收用地主ニ代金ヲ出給シタルヲ以テ前約ニ基キ支拂ヲ請求セシ處千二百九十二圓八十七錢ヲ支拂ヒタルノミニシテ殘額ハ屢次請求スルモ應セサルニ付右殘金并之ニ對スル支拂不能ト爲リタル時ヨリノ法定利子ヲ請求スル次第ナリト云フニ在リテ甲第一號證乃至第三號證ヲ提出シ證人李奎善李雲卿劉永實ノ證言ヲ援用シタリ

被告兩名代理人ハ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トノ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演述ノ要領ハ被告金益俊ハ原告主張ノ鐵道敷地收用代金ノ債權中四千四百五十圓一錢五釐ヲ二割引ニテ三千五百五十圓ニ賣却セシコト及度支部カ右原告間ノ債權讓渡ヲ認メス各被收用地主ニ直接該代金ヲ支拂ヒタルコトハ之ヲ爭ハサルモ契約書中收用代金支撥ニ干シ萬一故障ヲ生シタル時ハ權利讓渡者ハ責任ヲ以テ之ヲ負擔スヘキ旨ノ記載アルハ原告主張ノ如キ趣旨ニ出テタルニ非スシテ收用代金支撥ニ干シ文券其他ニ故障ヲ生シタル時ハ責任ヲ以テ補正等ヲ爲ス約旨ニ基キタルモノナリ又原告ハ前記四千四百五十圓一錢五釐以外ニ趙聖三金台鉉姜在元金昌植金順必朴允植李致弘李致德李三列李天ト劉元臣李京來禮性有孔散三劉致鎬廉致彥朴文實鄭明順鄭明玄鄭性集金應七尹德甫分并孔銀ト分中一圓三十二錢二口ノ權利ヲモ被告カ讓渡シタル如ク主張スルモ此ハ唯原告ヨリ買受方ノ委任ヲ受ケ受領證ヲ被收用地主ヨリ受取り原告ニ交付シタルニ過キス又原告カ支拂ヲ受ケタリト稱スル千二百九十二圓八十七錢ハ原告カ直接ニ被收用者ヨリ受取りタルモノナランモ被告ニ於テ之ニ干係シタルコトナシト云ヒ被告申泰熙ハ被告金益俊カ右主張ノ契約ヲ締結スルニ方リ單ニ其確實ナルコトヲ保證シタルノミニシテ内容ニ干係シタルモノニ非サルニ付原告ノ請求ニ應スルヲ得スト云フニ在リテ乙第一二號證ヲ提出シ證人金倫求ノ證言ヲ援用シタリ

理由

仍テ審按スルニ

第一被告金益俊ハ收用代金受領權ノ讓渡甲第一號證ノ交付并度支部カ原告ニ對シ該金支拂ヲ爲ササリシ事實ヲ認メ唯該證中收用代金支撥ニ干シ云云ノ記載ハ交付シタル文券其他ニ故障アル時ハ補正等ヲ爲ス趣旨ニ基キタルモノナリト抗辯スルモ果シテ然リトセンカ該趣旨ヲ明確ニ記載ス可キ筋合ナルニ收用代金支撥ニ干シ萬一故障ヲ生シタル時ハ責任ヲ以テ負擔スル事ノ明記アリ抗辯ノ趣旨ヲ認メ得サル而已ナラス却テ原告主張ノ如ク收用代金ノ支撥カ豫期ノ如クナラサル時ハ被告ニ於テ全一金額ノ

辨償ヲ明約シタルモノナル事ヲ認ムヘシ況ンヤ度支部カ支撥ヲ爲ササル場合ヲ豫想シ居タルコトハ甲第一號證ノ前身タル乙第一號證中第五號ノ記載ニ徴シ明瞭ニシテ豫想スヘキ故障ハ訂正シ得ヘキ文券ノ不備ヨリモ寧ロ當事者ノ左右シ得ヘカラサル度支部ノ不支撥ニ在リ隨テ文字稍異ナルモ意義ニ於テ異ナルコトナク如斯場合ニ於ケル賣主ノ責任ヲ明記シタルモノト認ムルヲ至當トスルニ於テヲヤ但被告ヲシテ賣買代金以上ノ責任ヲ負ハシムルハ稍酷ナルノ觀ナキニ非サルモ元來一定シタル利益ヲ廉價ニ賣買スル當事者ノ意思ハ該利益ヲ授受スルニ在リト認ムヘキ而已ナラス代金額相當ノ責任ハ何等ノ特約ナキモ契約ノ解除ニ由リテ當然負擔スヘキモノナルニ特ニ前記ノ契約ヲ爲シタル事蹟ヨリ之ヲ觀レハ被告ノ責任ハ讓渡シタル金額ト同一ナリト認ムルヲ至當トスルニ其讓渡額ヲ案スルニ被告ハ其認ムル四千四百五十圓一錢五釐以外ハ依囑ヲ受ケ被收用地主ヨリ受領證ヲ受取り原告ニ交付シタルニ過キスト抗辯スルモ之ヲ認ムヘキ何等ノ證據ヲ提出セサルノミナラス被告カ該受領證ヲ他ノ分ト共ニ原告ニ交付シタリトノ自認甲第一號證第四號ノ記載并證人李雲卿劉永實ノ自己等干係ノ債權ハ被告金益俊カ買受ケタルモノニシテ原告カ買受ケタルモノニ非サル旨ノ證言ヲ綜合スル時ハ被告カ交付シタル受領證分ノ權利ハ全部被告ニ於テ原告ニ讓渡シタルモノニシテ隨テ此部分ニ付キ亦辨償ノ責任ヲ追レ得サルモノナルコトヲ認ムヘシ要之被告ハ右讓渡シタル權利額ト同一ノ金額ヲ原告ニ辨償スヘキ責任ヲ負擔シタルモノニシテ之ヨリ原告カ支拂ヲ受ケタルコトヲ認ムル部分ヲ控除シタル額即四千二百六十一圓十四錢五釐ニ對スル原告ノ請求ハ至當ナルモノトス尙原告ハ之ニ對シ支拂不能ト爲リタル當時ヨリノ利子ヲ請求スルモ債務者カ遲滞ニ付セラレタルコトノ明瞭ナル時期即本件訴狀送達ノ翌日ヨリ法定利子ヲ付スルヲ適當ト認ム

第二被告申泰熙ハ被告金益俊カ主張スルカ如キ契約ノ存在ヲ保證シタルニ過キスト辨疏スルモ其成立ヲ認ムル甲第一號證ニ徴スル時ハ金益俊ト連帶債務ヲ負擔シタルコト明確ニシテ金益俊カ負擔シタル債務ハ前判示ノ如クナルヲ以テ被告申泰熙モ該金額ヲ辨償スルノ義務アルモノト認ム

尙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朴瑢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七月十四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本田榮

裁判長の命에依히야懸註喜

裁判所書記 金彰根



취하금取下金 계산 잔금 청구에 관한 건

193



1909년 7월 14일 수원-인천

역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부水原府 성내城內 거주 평민 공사 도급업

원고 봉강장작峯岡長作

소송 대리인 석총가일石塚嘉式 · 암본영부岩本英夫

인천仁川 빈정濱町 3정목丁目 평민平民 재목상

피고 추전인지보秋田寅之輔

소송 대리인 변호사 진시본환辰市本丸

위 당사자 사이의 명치41년 통제133호 취하금取下金 계산 잔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대리인의 지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406원圓 62전錢에 대하여 1908년 6월 14

일부터 본건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6푼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다. 그 원인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08년 3월 중에 수원재무소水原財務所 관사 건축 공사를 도급 받을 당시에 피고로부터 위 건축용 목재를 공급받는다라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해 4월 21일에 그 대금 및 채당蓄當 운임 등을 정산하는 편의상 피고의 요청대로 원고가 지급받을 도급금 9,250원의 채권을 일시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동시에 목재 대금 및 기타 채당금을 공제한 잔액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해당 도급금 전부를 지급 받은 뒤 거기에서 목재 대금, 채당금, 할인금, 과하게 계산한 차감금 등을 공제한 잔액 406원 62전은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본소本訴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갑1~3·5호증을 제출하고 인증人證을 신청하였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수원재무서 건축을 도급 받았기에 그 재료인 목재를 피고가 공급하였고 그 운임을 채당하였다라는 점 및 도급금 9,25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그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전부 인정한다. 하지만 목재 대금, 채당금, 목재 대금을 약속어음[約束手形]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원고가 기일에 지급하지 않았기에 월 3푼 이자를 붙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9월 중에 본건에 관한 일체의 정산을 할 당시에 피고는 이미 거둔 이자의 약 3분의 1 및 재료에 대한 일수[日邊] 7전의 이자 45원을 포기하여, 결국 84원 62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결산이 끝난 것으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을 1·2호증을 제출하고 인증人證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약속어음[約束手形金], 재목 대금, 운임 채당금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로부터 9,25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 대리인의 결산이 끝났다는 항변은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 상업 장부에 의하면 본건

당사자 사이의 거래는 작년 9월 3일에 84원 62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결산이 끝나게 되었다는 피고 대리인의 항변을 계산상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용하기에 충분한 증인 전변도지보田邊鳴之輔·도변 육대랑渡邊六太郎의 각각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소유한 채권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 대리인의 주장처럼 이자를 붙일 것을 약속하여 지급을 유예 받았다는 점과 작년 9월 중에 전부 결산한 뒤 84원 62전을 피고가 원고에게 주고 거래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 이사청은 피고 대리인의 항변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제7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부이사관 고목안대랑高木安太郎

1909년 7월 14일 선고

1909년 7월 17일 원본 영수

이사청 소속 고교길삼랑高橋吉三郎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문

判決

京畿道 水原府 城內居住 平民 工事受負業

原告 峯岡長作

訴訟代理人 石塚嘉弼

岩本英夫

仁川 濱町 三丁目 平民 材木商

被告 秋田寅之輔

訴訟代理人 辯護士 辰市本丸

右當事者間ノ明治四十壹年通第一三三號取下金計算殘金請求事件ノ判決左ノ如シ

主文

原告ノ請求ヲ棄却ス

訴訟費用ハ被告代理人ノ支障ノ爲ニ生シタル分ヲ被告ノ負擔トシ其他ヲ原告ノ負擔トス

事實理由

原告代理人ハ被告ハ原告ニ對シ金四百六圓六十二錢ニ明治四十一年六月十四日ヨリ本件執行濟迄年六分ノ利息ヲ加算シ支拂フ可シ訴訟費用ハ被告負擔トノ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原因タル事實トシテ原告ハ明治四十一年三月中水原財務所官舎建築工事ヲ受負フニ際シ被告ヨリ右建築用ノ木材ノ供給ヲ受クルノ契約ヲ爲シ全年四月二十一日其代金及立替運賃等ノ精算ヲ爲ス便宜上被告ノ請ニ任セ原告カ受負ノ爲ニ拂渡ヲ受クヘキ金九千二百五十圓ノ債權ヲ一時被告ニ讓渡シ全時ニ木材代金其他ノ立替金ヲ控除シタル殘額ハ原告ニ拂渡ス可キ約定ヲ爲シタルニ被告ハ該受負金全部ノ支拂ヲ受ケ之ヨリ材木代金立替金値引金計算ノ過設ニ依ル差引金等ヲ控除シタル殘額金四百六圓六十二錢ハ被告ヨリ原告ニ返還スヘキモノナルニ被告ハ其義務ヲ履行セサルニ付本訴ニ及ヒタル旨供述シ甲一號乃至三號全五號證ヲ提出シ人證ノ申出ヲ爲シタリ

被告代理人ハ原告請求棄却ノ判決ヲ求メ其事實トシテ原告カ水原財務署ノ建築ヲ受負ヒタルニ付其材料タル木材ヲ被告カ供給シ其運賃ヲ立替ヘタルコト及受負代金九千二百五十圓ノ債權ヲ讓受ケ其全部ヲ受領シタルコトハ凡テ之ヲ認ムルモ材木代金立替金材木代金ヲ約束手形ト爲シタルモノニ付テハ何レモ原告カ期日ニ支拂ハサル爲メ月三分ノ利息ヲ付スルコトニ當事者間ニ合意成立シ昨年九月中本件ニ關スル一切ノ清算ヲ爲スニ際シ被告ハ已收利息ノ約三分ノ一ト材料ニ對スル日歩七錢ノ利息金四十五圓トヲ拋棄シ結局金八十四圓六十二錢ヲ被告ヨリ原告ニ支拂ヒ決

算濟ト爲レルモノナレハ原告ノ請求ハ失當ナリト供述シ乙一二號證ヲ提出シ人證ノ申出ヲ爲シタリ

被告カ原告ニ對シ約束手形材木代金運賃立替金ノ債權ヲ有シタルコト及原告ヨリ金九千二百五十圓ノ債權ヲ讓受ケ該金額ヲ受領シタルコトハ共ニ當事者間ニ爭ヒナキヲ以テ爭點ハ被告代理人ノ決算濟ナリトノ抗辯ハ理由アルカ否ヤニ存ス依テ審按スルニ成立ニ爭ヒナキ乙一號ノ商業帳簿ニ依レハ本件當事者間ノ取引ハ昨年九月三日金八十四圓六十二錢ヲ被告ヨリ原告ニ支拂ヒ決算濟ニ成レリトノ被告代理人ノ抗辯ヲ算數上説明シ得ヘク又措信スルニ足ル證人田邊鳴之輔渡邊六太郎ノ各供述ヲ綜合考覆スレハ被告カ原告ニ對シテ有シタル債權ニ付テハ原告カ被告代理人ノ主張スルカ如キ利息ヲ付スルコトヲ約シテ支拂ノ猶豫ヲ得タルコト及昨年九月中全部決算ノ上金八十四圓六十二錢ヲ被告ヨリ原告ニ交付シ取引完了シタルコトヲ認定スルニ足ルヲ以テ當理事廳ハ被告代理人ノ抗辯ヲ理由アリトシ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法第七十二條第一項第七十五條ヲ各適用シ主文ノ判決ヲ爲シタリ

仁川理事廳

副理事官 高木安太郎

明治四十二年七月十四日 言渡 全月十七日 原本領收

理事廳屬 高橋吉三郎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7월 27일 수원-경성

요지

융희3년 민제255호

결석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외야곶면外也串面 재촌梓村 재적
 현재 경성京城 북부北部 원동苑洞 13통統 1호戶 이민호李敏浩 집 거주 TUTE
 원고 최한상崔漢相

경성京城 중부中部 건평방壑坪坊 이문里門 내 13통統 9호戶 변호사
 위 소송 대리인 이종성李鍾聲

경성京城 남부南部 저동亭洞 66통統 6호戶
 피고 윤세풍尹世豊

위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결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33원圓 및 이에 대한 1909년 3월 13일부터 변제를 완
 료할 때까지 연 10분의 2의 손해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자는 원금에 달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소장 및 기일 호출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1909년 7월 27일의 심문
 기일에 출두하지 않았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동 기일에 출두한 뒤 주문과 동일한 취지의 일정한 신
 청을 하였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수상공업소水商共業所를 설
 립하고 고급高給 사무원으로 원고를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 50원
 을 공탁하라. 그 돈은 훗날 해임되거나 혹은 스스로 물러날 때 돌려주겠
 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말을 믿고 올해 1월 7일에 타인으로부터 고리
 로 돈을 빌려서 35원을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공탁하였다. 하지만 위 말
 은 전부 거짓으로 월급을 주지 않았고 또 올해 3월 13일에 이르러 동 공업
 소 내에 크게 분란을 일으켜서 공업소는 파괴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단호히 사무원이 될 것을 사절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다그
 쳤지만 피고는 질질 끌면서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에 송구訟求한다고 하
 며, 그리고 피고에 대한 결석 판결을 구하였다.

본 재판소는 피고가 기일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본소本訴에 대해 다들 의
 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또
 그 청구를 지당하다고 보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7월 27일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판사 화전은태량花田銀太郎

1909년 7월 27일 선고

재판소 서기 임금오林金吾

위는 판사의 명을 받들어 현주懸註함.

1909년 10월 30일

원문

隆熙三年民第二五五號

關席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外也申面 梓村在籍

現留 京城 北部 苑洞 十三統 一戶 李敏浩家

原告 崔漢相

京城 中部 堅坪坊 里門內 十三統 九戶 辯護士

右訴訟代理人 李鍾聲

京城 南部 苧洞 六十六統 六戶

被告 尹世豐

右當事者間ノ貸金請求訴訟事件ニ對シ被告ノ關席ニ於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金三十三圓ト此ニ對スル隆熙三年三月十三日ヨリ完濟ニ至ル迄年十分ノ二ノ損害利息ヲ加計シタル金額ヲ支拂フ可シ但シ利息ハ元本ニ達スルヲ限度トス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理由

被告ハ訴狀及期日出頭ノ送達ヲ受ケナガラ隆熙三年七月二十七日ノ審問期日ニ出頭セズ
原告訴訟代理人ハ同期日出頭ノ上主文ト同一旨趣ノ一定申提ヲ爲シ其事

由ハ被告ガ水商共業所ヲ設立シ高給ノ事務員ニ原告ヲ採用スルニツキ保證金五十圓ヲ供托セヨ該金ハ後日解任或ハ自退ノ時還給セント云ヒタルヲ以テ其言ヲ信シ本年一月七日他ヨリ高利ノ金ヲ僱用シテ三十五圓ヲ保證金トシテ被告ニ供托シタルニ前言ハ總テ僞ニシテ月給ヲ給セズ且本年三月十三日ニ至リ同所內ニ大ニ紛亂ヲ生シ共業所破毀ノ境遇ニ至リタルヲ以テ原告ハ斷然事務員タル事ヲ辭絶シ該金ノ還給ヲ迫ルト雖モ被告ガ延施還給セザルヲ以テ茲ニ訟求スト云ヒ被告ノ關席判決ヲ求メタリ
本裁判所ハ被告ガ期日出頭セザルハ本訴ニ對シ抗爭ノ意ナキニ因ルモノト看做シ原告ノ主張ヲ事實ト認メ且其請求ヲ至當トスルヲ以テ主文ノ如ク判決ス

隆熙三年七月二十七日

京城區裁判所

判事 花田銀太郎

隆熙三年七月二十七日 宣告

裁判所書記 林金吾

右承判事命而懸註事

隆熙三年十月三十日

裁判所繙譯官補 三浦末喜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8월 28일 수원-수원

요지

융희3년 민제34호

결석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수원郡 북부北部 신흥동新豐洞

원고 이재홍李在弘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심중대沈鍾大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공향면貢鄉面 발안장터[發安場基]

피고 최정준崔正俊

위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330원圓 및 1906년 음력 2월 1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연 4할의 이자에서 49원을 공제한 금액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원고 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그 아들 최순명崔順明을 원고의 집에 보내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1905년 음력 3월 17일에 이자는 월 4푼分으로 약정하고 400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매달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1907년 음력 1월 19일에 이르러 이자로 16원, 원금으로 70원을 갚았으며 또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자로 49원을 갚은 것에 불과하므로 독촉한 끝에 소구訴求에 이른 것이고 하면서, 강제1~6호증을 제출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피고의 아들 최순명이 부담한 것이지만 자신이 떠맡았다. 또한 이를 갚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옥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기에 채무는 소멸되었던 것이다. 다만 그 후 피고는 위 토지·가옥을 빌렸으므로 그 임대료 잔액인 콩 60두斗는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나머지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는 심문 기일인 1909년 8월 28일 오전 9시에 당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유

살피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인정하면서 단지 토지·가옥을 원고에게 주어서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항변을 채용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채권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액은 피고가 갚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박용태朴瑢台

판사 근동수수近東壽穗

1909년 8월 28일 선고
경성지방법관소
재판소 서기 목등진무木藤眞武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하서직길河西直吉

원문

隆熙三年民第三四號
闕席判決

京畿道 水原郡邑 北部 新豊洞
原告 李在弘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沈鍾大

全道 全郡 貢郷面 發安場基
被告 崔正俊

右當事者間貸金請求事件ニ付當裁判所ハ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金參百參拾圓及光武十年陰二月一日ヨリ判決執行濟迄
元本額ヲ超過セサル範圍内ニ於ケル年四割ノ利子ヨリ金四十九圓ヲ控除
シタル額ヲ辨償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事實

原告代理人ハ主文ノ如キ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演述ノ要領ハ被告ハ其子崔順
明ヲ原告方ニ遣ハシ金員ノ借入ヲ要請シタルヲ以テ光武九年陰三月十七日每

月四分ノ利子ノ約定ニテ金四百圓ヲ貸付ケタル處毎月利子ヲ納付シ來リ全十
年陰正月十九日ニ至リ金十六圓ヲ利子ニ七十圓ヲ元本ニ辨濟シ尙爾來三回ニ
利子ニ充テ金四十九圓ヲ辨濟シタルニ過キササルヲ以テ督促ノ末訴求ニ及ヒタ
ル次第ナリト云フニ在リテ甲第一號證乃至第六號證ヲ提出シタリ

被告ハ原告ノ請求ハ之ヲ棄却ストノ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抗辯ノ要領ハ
原告主張ノ債務ハ被告ノ子順明ニ於テ負擔シタルモノナルモ自分ニ於テ
引受ケ且ツ辨償ニ充テ所有ノ土地家屋ヲ原告ニ給付シ原告ハ之ヲ承諾シ
タル爲メ債務ハ消滅ニ歸シタルモノナリ尤モ其後被告カ右土地家屋ヲ賃
借シタルヲ以テ借貸ノ殘額太六十斗ハ之ヲ支拂フ義務アルモ其他ニ辨償
スヘキ義務ナシト云フニ在リ

尙被告ハ審問期日タル隆熙三年八月二十八日午前第九時當所ニ出頭セス

理由

按スルニ被告ハ原告主張ノ債權ハ之ヲ認メナカラ唯土地家屋ヲ原告ニ給
付シ辨濟ヲ了シタリト抗辯スルモ何等之ヲ認ムヘキ立證ナキヲ以テ該抗
辯ヲ採用スルニ由ナク從テ該債權ヨリ原告ガ辨濟ヲ受ケタルコトヲ認ム
ル部分ヲ控除シタル殘額ハ被告ニ於テ辨償スヘキモノト認ム尙訴訟費用
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朴塔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八月二十八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木藤眞武

裁判長의命으로現懸註함

繙譯官補 河西直吉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8월 31일 남양-남양

역문

융희3년 민제38호

판결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수산면水山面 영포리靈浦里

원고 이에현李禮賢

위 소송 대리인 윤기성尹耆成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수산면水山面 삼존동三尊洞

피고 홍주범洪周範

위 소송 대리인 홍설후洪說厚

위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325원圓 20전錢 및 이에 대한 1909년 음력 6월 1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4할의 이자를 변상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원고 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1908년 음력 12월 28일에 이자는 월 4푼[步]에 기한은 1909년 음력 4월 이내로 정하고 690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1909년 음력 5월까지 이자 138원 및 원금 중 286원 52전 8리를 갚았을 뿐이다. 이에 잔금 중 325원 20전 및 위 변제 후의 법정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강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 중 103원 3전 7리는 인정하지만 그 외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1907년 음력 12월 28일부터 1909년 3월 21일까지 금전 및 물품 대금 합계 527원 56전 5리를 빌린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1909년 5월 15일까지 424원 52전 8리를 갚았으므로 위 잔금 외에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만 강제1호증의 성립은 인정하지만, 이는 원고가 1908년 음력 12월 28일에 피고의 집에 와서 온갖 위협을 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하여, 을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유

따라서 살펴보건대, 피고는 강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단지 이는 원고의 위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아무런 입증하는 바가 없으므로 임의로 발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호증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가 690원을 빌렸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자 138원 및 원금 중 286원 52전 8리를 갚았다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것과 을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은 피고가 갚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일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재판장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 박용태 朴瑑台
판사 근동수 近東壽穗
1909년 8월 31일 선고
경성지방법관소
재판소 서기 본전영 本田榮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 懸註함.
번역관보 하서직길 河西直吉

원문

隆熙三年民第三八號

判決

京畿道 南陽郡 水山面 靈浦里
原告 李禮賢
右訴訟代理人 尹耆成

全道 全郡 水山面 三尊洞
被告 洪周範
右訴訟代理人 洪說厚

右當事者間貸金請求事件ニ付當裁判所ハ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金參百貳拾五圓貳拾錢及之ニ對スル隆熙三年陰六月一日ヨリ判決執行濟迄元本ヲ超過セサル範圍內ニ於テ年四割ノ利子ヲ辨償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事實

原告代理人ハ主文ノ如キ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演述ノ要領ハ原告ハ被告ニ對シ隆熙二年陰十二月二十八日月四步ノ利子及全三年陰四月內ノ期限ヲ以テ金六百九十圓ヲ貸付ケタル處全三年陰五月迄ニ利金百三十八圓及元本中二百八十六圓五十二錢八リヲ辨償シタルニ過キササルヲ以テ殘金中三百二十五圓二十錢及右辨濟後ノ法定利子ヲ請求スル次第ナリト云フニ在リテ甲第一號證ヲ提出シタリ

被告代理人ハ原告ノ請求中百三圓三錢七釐ハ之ヲ認ムルモ其以外ハ請求ヲ棄却スル旨ノ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抗辯ノ要領ハ被告ハ原告ヨリ隆熙元年陰十二月二十八日ヨリ全三年陰三月二十一日迄ノ間金圓及物品代金合計五百二十七圓五十六錢五釐ヲ借受ケタルコトハ相違ナキモ全三年五月十五日迄ニ四百二十四圓五十二錢八釐ヲ辨濟シタルヲ以テ右殘金以外ハ請求ニ應スル能ハサル次第ナリ尤モ甲第一號證成立ハ之ヲ認ムルモ此ハ原告カ隆熙二年陰十二月二十八日被告方ニ來リ威脅至ラサルナキヲ以テ已ムナク成給シタルモノナリト云フニ在リテ乙第一號證ヲ提出シタリ

理由

仍テ按スルニ被告ハ甲第一號證ノ成立ヲ認メ唯此ハ原告ノ威脅ニ因リ已ムナク成給シタルモノナリト抗辯スルモ何等立證スル所ナキヲ以テ任意ニ出給シタルモノト認ムルノ外ナク從テ該證記載ノ如ク被告ニ於テ金六百九十圓ヲ借受ケタルモノナルコトヲ認ムヘシ而シテ之ニ對シ利金百三十八圓及元本中二百八十六圓五十二錢八釐ヲ辨濟シタルコトハ原告ノ自認并乙第一號證ノ記載ニ徵シ明瞭ナルヲ以テ之ヲ控除シタル殘額ハ被告ニ於テ辨償スヘキ義務アリ從テ其一部ニ對スル原告ノ請求ハ理由アルモノト認ム尙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朴瑢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八月三十一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本田榮

裁判長의命으로懸註喜
繙譯官補 河西直吉



1909년 9월 1일 수원-수원

역문

42 민183호

융희3년 민제40호

결석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초평면楚坪面 권리촌闕里村
원고 공석진孔錫辰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택金澤 · 이용상李容相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북부北部 신흥동新豐洞

피고 박재덕朴在德

위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259원 및 이에 대한 1907년 음력 11월 19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위 원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연 2할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 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의 간청에 의해 1907년 음력 11월 10일 무렵에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 시장에서 시변市邊 이자는 2푼分으로 한다는 약속으로 당오전 12,950냥<259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달 13일 및 18일의 2차례에 걸쳐 갚아야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도 갚지 않았다. 이에 이듬해인 1908년 음력 1월 9일에 다시 기한을 그해 2월 10일로 정하고 증서[票]를 받았지만 역시 갚지 않았다.

그래서 원피고가 협의한 끝에 원고의 채권자인 이명화李明化·홍광심洪光心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명화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한 것에 대해 부당한 항변을 하여 그들을 패소시켰기에 원고가 갚아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를 갚은 뒤 다시 독촉한 끝에 소구訴求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강제1호 1·2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호출을 받았음에도 심문 기일인 1909년 9월 1일 오전 9시에 당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았다.

따라서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 사실은 강제1호 1·2의 기재 내용과, 피고가 호출을 받았음에도 출두하여 항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그 청구는 지당하기에 피고가 이를 갚아야 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법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

재판장 관사 대곡신부大谷信夫

관사 박용태朴瑢台

관사 근동수수近東壽德

1909년 9월 1일 선고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소 서기 본전영本田榮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전영택全英澤

원문

四二民一八三號

隆熙三年民第四〇號

關席判決

京畿道 水原郡 楚坪面 關里村

原告 孔錫辰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金澤 李容相

全郡 北部 新豐洞

被告 朴在德

右當事者間貸金請求事件ニ付當裁判所ハ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金貳百五拾九圓及之ニ對スル隆熙元年陰十一月十九日ヨリ判決執行濟ニ至ル迄右原本額ヲ超過セサル範圍内ノ年二割ノ利子ヲ辨償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原告代理人ハ主文ノ如キ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事實トシテ原告ハ被告ノ懇請ニ依リ隆熙元年陰十一月十日頃水原郡烏山市ニ於テ月六回ノ市每ニ二分ノ利子ノ約束ヲ以テ當五錢一萬二千九百五十兩<二百五十九圓>ヲ貸付ケ全月十三日及十八日ノ兩次ニ辨濟スヘキ筈ナリシニ期限ヲ過クル



1909년 9월 15일 남양-양성

モ辨濟セサルニヨリ翌二年陰正月九日更ニ期限ヲ全年二月十日ト定メ票ヲ受取りタルニ尙辨濟セサル爲メ原告協議ノ末原告ノ債權者タル李明化及洪光心ニ該債務ヲ辨濟スヘキコトト爲シタルニ被告ハ其約束ヲ履行セス剩サヘ李明化等ヨリノ訟求ニ對シ不當ノ抗辯ヲ爲シ全人等ヲ敗訴セシメタルヨリ原告ニ於テ辨濟セサルヘカラサルニ至リ辨濟ヲ爲シ更ニ督促ヲ爲シタル末訴求ニ及ヒタリト供述シ甲第一號ノ一ニヲ提出シタリ被告ハ適法ノ呼出ヲ受ケナカラ審問期日タル隆熙三年九月一日午前九時當所ニ出頭セス

仍テ按スルニ原告主張ノ事實ハ甲第一號ノ一ニ記載及被告カ呼出ヲ受ケナカラ出頭且抗辯ヲ爲ササル事蹟ニ徵シ之ヲ認ムルニ足リ且其請求ハ至當ナルヲ以テ被告ニ於テ之ヲ辨償スヘキモノト認ム尙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

裁判長 判事 大谷信夫

判事 朴瑢台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九月一日 言渡

於同廳

裁判所書記 本田榮

裁判長의命에依ᄃᆞ야懸註喜

繙譯官補 全英澤

역문

융희3년 민상제98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수산면水山面 삼촌동三尊洞

상고인 민서호閔胥鎬

경기도京畿道 양성군陽城郡 죽양원면竹良院面 하리산대下里山堡

피상고인 정재학鄭在學

위 당사자 간의 분묘 굴이掘移 청구 사건에 대하여 1909년 7월 8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에서 선고한 판결을 불복하여 같은 해 8월 4일에 상고인이 상고를 신청[申提]하였기에 본원本院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취지 제1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인의 선영先塋 국내局內를 피

상고인이 1876년에 상고인의 5촌속 민치권閔致權에게 매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치권은 1866년에 사망한 자인데도 1876년에 민치권에게서 산을 구입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말이다. 피상고인은 산을 구입한 후 지금 30여 년에 이르도록 민가閔家의 허다한 입장入葬을 어찌 금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꺼리어 새벽 밤[築夜]에 투장偷葬하였는가? 이것에서 거짓으로 속인 정적情跡을 덮기 어려웠으므로 금년 1월 처음 투장은 관굴官掘하였다. 그런데도 금년 4월경에 피상고인이 파낸 땅에 두 무덤을 또 투장하였고, 그 뒤에 본 군수郡守가 피고의 거짓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고인을 패소[落科]시키고 재심에서도 패소시킨 것은 억울[冤屈]하다고 하였다.

상고취지 제3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판결 내에 강제1호증甲第一號證을 제출하였으나 동호증同號證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고 기타 어떠한 입증立證이 없는 바이므로 해당 산관山坂은 공소인<상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강제1호증은 무엇을 지목하여 말하는 것인지 재심판결이 문의[辭意]가 모호함을 생각하지 않고 피상고인을 편드는 것에 불과하여 상고인이 복종할만한 논리論理가 없는 판결로 패소시킨 것은 억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릇 상고는 법령에 위배된 판결한 것을 이유로 할 때에 한限하여 이를 허하는 것이고, 사실승심관事實承審官의 원심原審 직권職權에 속한 사실인정事實認定과 증거취사證據取捨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不服이 있을지라도 이로써 상고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지論旨의 제1점은 원심이 직권에 기초하여 행한 사실인정에 대하여 불복을 헛되이 주창함에 지나지 않고, 제3점은 원심의 자유판단에 속한 증거취사에 대하여 이유 없이 비난함에 불과하므로 모두 상고적법上告適法한 이유가 없다.

상고취지 제2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인의 6대조는 일찍이 정3품승지承旨를 지냈으니 신법률新法律 제32조 분묘계한墳墓界限에 비추어도 70보步 이내에는 마땅히 금지해야 하는 무덤인데도 서로 떨어진 거리가 50보가 되지 않는 땅에 피상고인이 부친과 형의 두 무덤을 투장한 관官의

도형圖形이 분명하므로 초심과 재심의 판결은 해당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을 자세히 살펴 생각하니, 상고인이 일찍이 논한 바와 같이 분묘계한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說示가 역시 없었다. 그러므로 본 논지는 원판결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역시 상고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 제42조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9월 15일

대심원大審院 민사부

재판장 판사 중산승지조中山勝之助

판사 홍우석洪祐哲

판사 함대영咸台永

판사 목산영수牧山榮樹

판사 석천정石川正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문

隆熙三年 民上第九八號

判決書

京畿道 南陽郡 水山面 三尊洞

上告人 閔胥鎬

京畿道 陽城郡 竹良院面 下里山堡

被上告人 鄭在學

右當事者間の 墳墓掘移請求事件에 對하야 隆熙三年七月八日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에서 宣告한 判決를 不服하야 同年八月四日에 上告人으로

부터 上告를 申提하였기 本院에서 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本件 上告는 此를 棄却함

訴訟費用은 上告人의 負擔으로함

理由

上告趣旨第一點의 要領은 上告人의 先塋局內를 被上告人이 丙子年에 上告人의 五寸叔 閔致權에게 買得하였다 云하나 閔致權은 丙寅年에 死한 者 이어늘 丙子年에 閔致權에게서 買山하였다는 거시 誣說이오 買山後 至今 三十餘年間に 閔家許多番入葬을 何不禁之며 渠는 何를 憚야 架夜偷葬 하였는지 於此其詐誣情跡을 難掩인 故로 今年一月初 次偷葬은 官掘하였 거늘 今年四月分에 被上告人이 其被掘地에 兩塚을 又偷葬한 後는 本郡守 가 被告의 誣供을 認真하여 上告人을 落科에 置하여 再審에서도 落訟케 함은 冤屈하다하고

同第三點의 要領은 原判決內에 甲第一號證을 提出하나 同號證으로는 其主張을 認함이 不可하고 其他何等立證이 所無함으로써 該山坂은 控訴人 <上告人>의 所有됨으로 認함을 得치 못함이라 하였스나 其主張을 認함이 不可하다는 甲第一號證은 何를 指謂하심인지 再審判決이 辭意模糊함을 不願하고 被上告人을 偏護한디 不過하여 上告人으로 服從할만한 論理處가 無한 決案으로써 落訟케 함은 冤屈하다 云함에 在하나 凡上告는 法令에 違背한 判決됨으로써 理由로 하는 時에 限하여 此를 許하는 者이오 事實 承審官된 原審職權에 屬한 事實認定 證據取捨 判斷에 對하여는 何等의 不服이 有할지라도 此로써 上告의 理由로 함을 得치 못할지라 然而本論旨의 第一點은 原審이 職權에 基하여 行한 事實認定에 對하여 不服을 徒唱함에 不外하고 第三點은 原審의 自由判斷에 屬한 證據取捨에 對하여 無故히 批難함에 不過함으로써 何者던지 上告適法한 理由가 無다함

同第二點의 要領은 上告人의 六代祖는 曾經正三品承旨이온즉 新法律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에 照하와도 七十步를 當禁할 其塚의 相距不滿五十步

地에 被上告人이 其親其兄兩塚을 偷葬한 官圖形이 分明하온디 初審再審의 判決은 該法律에 違背되었다 云함에 在하나 原判決을 審按한즉 上告人이 曾히 所論과 如히 墳墓界限에 關하여 何等의 主張을 申하이 無하고 原審이 此에 對하여 何等의 說示가 亦無하였스즉 本論旨는 原判旨에 副치 아니한 者이 됨으로써 亦上告의 理由가 無한 者이라 依하여 民刑訴訟規則 第四十二條 第三十三條에 則하여 主文과 如히 判決함

隆熙三年 九月 十五日

大審院 民事部

裁判長 判事 中山勝之助

判事 洪祐皙

判事 咸台永

判事 牧山榮樹

判事 石川正





1909년 9월 16일 수원-인천

요문

융희3년 민제73호

결석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송동면松洞面 병실丙室 1통統

원고 이명구李鳴九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다소면多所面 평동平洞 38통統 10호戶

피고 편석주片石柱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송동면松洞面 병실丙室

피고 조홍재趙弘載

위 당사자 사이의 토지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해 피고들이 결석한 채 다 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원圓에 대하여 1903년 음력 10월 7일부터 판결 집행 완료일까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 부담한다.

사실

원고는 주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03년 음력 10월 7일에 피고 조홍재趙弘載 소유의 수원군水原郡 송동면松洞面 도마천島馬川의 논 8두락斗落을 90원에 매입하고 신문권新文券 1장을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 편석주片石柱는 해당 문권이 진정한 것임을 확실히 보증하고, 만일 훗날 해당 문권에 의해 해당 토지를 원고가 취득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피고 2인은 연대 책임으로 토지대금을 반환할 것이라 계약하였다.

그런데 그 후 조홍재는 해당 토지를 구문익具文益이라는 자에게 구문권舊文券으로 매도하였기에 그와 원고 사이에 해당 토지 소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그가 수원관찰부水原觀察府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구문 권은 신문권보다 우월한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패소하였다. 이에 처음 계약에 근거해 대금 반환을 피고에게 재촉하였더니 피고 편석주片石柱는 도망가서 소재 불명이기에 오늘날까지 그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의 주소를 알았기에 본소本訴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강제1호증을 제출하여 그 주장을 입증하였다.

피고 2인은 적법한 호출을 받았으나 심문 기일인 1909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당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유

원고의 신청은 강제1호증에 기재된 취지와, 심문 기일에 양 피고인이 출 정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점에 의해 진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 규칙 제1조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판사 근동수수近東壽穗

1909년 9월 16일 선고

재판소 서기 김창식金彰植

판사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전영택全英澤

원문

隆熙三年民第七三號

缺席判決

京畿道 水原郡 松洞面 丙室 一統

原告 李鳴九

全道 仁川府 多所面 平洞 三十八統 十戶

被告 片石柱

全道 水原郡 松洞面 丙室

被告 趙弘載

右當事者間土地代金返還請求事件被告等缺席ノ儘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被告等ハ連帶シテ原告ニ對シ金九拾圓ニ光武七年陰十月七日ヨリ判決執行完了日迄元本ニ超過セサル範圍内ニ於テ年十分二ノ利息ヲ附シテ辨償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等ノ連帶負擔トス

事實

原告ハ主文記載ノ如ク判決アリタキ旨ノ申立ヲ爲シ其事實トシテ原告ハ

光武七年陰十月七日被告趙弘載所有水原郡松洞面島馬川番八斗落ヲ金九拾圓ニテ買得シ新文券一度ヲ受領シタリ當時被告片石柱ハ該文券ノ眞正ナルコトヲ確保シ若シ後日該文券ニ依リ該土地ヲ原告ニ於テ取得スル能ハサル様ノコト出來スルトキハ被告兩名ハ連帶ノ責任ヲ以テ土地代金ヲ返還スヘキコトヲ契約シタリ然ルニ其後趙弘載ハ該土地ヲ具文益ナル者ニ舊文券ヲ以テ賣渡シタル爲メ全人ト原告トノ間ニ該土地所有ニ關シ爭ヲ生シ遂ニ全人ヨリ水原觀察府ニ出訴シ其結果舊文券ハ新文券ニ勝ル效力アリトノ理由ニテ原告ハ敗訴シタリ依テ最初ノ契約ニ基キ代金返還方ヲ被告ニ迫リシ處被告片石柱ハ逃亡シ所在不明ナリシ爲メ今日迄其儘ニナリ居リシガ今回全人ノ住所相分リタルヲ以テ本訴ニ及ヒタリト陳述シ甲第一號證ヲ提出シテ其主張ヲ立證シタリ

被告兩名ハ合式ノ呼出ヲ受ケナガラ審問期日ナル隆熙三年九月十六日午前十時當所ニ出頭セス

理由

原告ノ申立ハ甲第一號證記載ノ趣旨ト審問期日ニ兩被告人カ出廷抗爭セサルトニ依リ眞實ト認メタリ依テ原告ノ請求ハ理由アリトス尙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仁川區裁判所

判事 近東壽穗

隆熙三年九月十六日 言渡

裁判所書記 金彰植

判事의 命에 依하야 懸註함

繙譯官補 全英澤



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및 손해 배상에 관한 건

1909년 9월 21일 수원-수원

역문

융희3년 민상제102호
판결서

상고인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면南面 하수직동下水直
김정태金鼎泰
위 소송 대리인 등정태郎藤井太郎

피상고인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홀면笏面 창동倉洞
정동명鄭東明

위 당사자 사이의 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1909년 7월 31일에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仁川 지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해 그해 8월 30일에 상고인이 상고를 신청하였다. 이에 당 대심
원大審院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취지 첫 번째 점은 다음과 같다. 원심에서 상고인이 주장한 요지는
피상고인에게 수원군水原郡 남면南面 사미성蛇尾城에 소재한 산판은 상고
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고인은 이에 대
해 해당 산판 일부의 길이·너비 70보步는 소외訴外 최성열崔性烈로부터
정당히 매입한 것이고 결코 상고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
였음은 소송 기록에 의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상고인은 상고인이
주장한 산판 가운데 일부만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상고인의 주장 전부를 배척한 것은 위법
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원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따르면, 상고인은
피상고인이 상고인 소유의 경계를 침해하여 소나무를 베고 또 그 어머니를
선영先螢의 섬돌 아래서 5보 내에 암장하였기에, 계쟁係爭 산판은 상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또 벌목 손해 배상금 2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피상고인은 상고인 소유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고 소나무를 베었으며 또
어머니를 매장한 것은 소외 최성열로부터 매입한 산판이라는 취지로 다투
며 상고인 소유의 경계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흔적이 없다. 그래서 원심
은 증거에 의해 계쟁 산판은 상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피상고인의 소유
에 속함을 인정한 것이므로 상고인의 청구는 결국 그 전부를 배척해야 함은
애초에 당연하다. 때문에 원판결은 아무런 위법한 점이 없기에 본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 취지 두 번째 점은 다음과 같다. 원심에서 상고인은 피상고인이 선
영의 아래 5보 이내에 암장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피상고인은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서인庶人의 분묘 경계는 10보를 최소한도로 한다는
것은 형법대전刑法大套에 규정된 바이다. 따라서 5보 내에 매장하였는지
의 여부는 반드시 심사를 요하는데, 원판결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이
유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가 그 소유지 내에 매장할 때는 애초에 분묘 경계에 관한 보
수步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에서 계쟁 산판이
상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피상고인의 소유에 속함을 인정할 이상, 피

상고인이 그 소유지 내에 매장한 분묘의 보수 여하는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본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 제42조, 제33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9월 21일

대심원 민사부

재판장 판사 증산승지조中山勝之助

판사 홍우석洪祐皙

판사 함태영咸台永

판사 목산영수牧山榮樹

판사 석천정石川正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번역관 고도오팔高島五八

원문

隆熙三年民上第一〇二號

判決書

上告人 京畿道 水原郡 南面 下水直洞

金鼎泰

右訴訟代理人 藤井太郎

被上告人 京畿道 水原郡 笏面 倉洞

鄭東明

右當事者間ノ山坂所有權確認及損害賠償請求事件ニ付隆熙三年七月

三十一日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カ宣告シタル判決ニ對シテ同年八月三十日上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上告人ノ負擔トス

理由

上告趣旨第一點ハ原審ニ於テ上告人カ主張シタル要旨ハ被上告人ニ對シテ水原郡南面蛇尾城所在山坂ハ上告人ノ所有タルヲ確認センコトヲ求ムルニ在リ而シテ被上告人ハ此ニ對シテ該山坂ノ一部長廣七十步ハ訴外崔性烈ヨリ正當ニ買得シタルモノニシテ決シテ上告人ノ所有權ヲ侵シタルモノニアラスト云フニ在ルコトハ訴訟記錄ニ依リ明ナリ果シテ然ラハ被上告人ハ上告人ノ主張シタル山坂中一部ノミヲ爭フニ過キスシテ其殘部ハ此ヲ認容シタルモノトス然ルニ原審カ上告人ノ主張全部ヲ排斥シタルハ違法ナリト云フニ在レトモ原判決摘示ノ事實ニ依レハ上告人ハ被上告人カ上告人ノ所有境界ヲ侵シテ松木ヲ伐採シ且其母ヲ先塋陸下五步內ニ暗葬シタルヲ以テ係爭山坂ハ上告人ノ所有タルヲ確認シ且伐木損害金貳圓ヲ辨償スヘシト主張シ被上告人ハ上告人ノ所有境界ヲ侵シタルモノニアラス松木ヲ伐採シ且母ヲ入葬シタルハ訴外崔性烈ヨリ買受ケタル山坂ナル旨ヲ以テ抗爭シ上告人ノ所有境界ヲ侵シタル事實ヲ認メタル形跡アルコトナシ而シテ原審ハ證據ニ依リ係爭山坂ハ上告人ノ所有ニ屬セスシテ被上告人ノ所有ニ屬スルコトヲ認定シタルモノナレハ上告人ノ請求ハ結局其全部ヲ排斥スヘキハ固ヨリ當然ナルヲ以テ原判決ハ何等違法ノ點ナシ依テ本論旨ハ其理由ナシ

同第二點ハ原審ニ於テ上告人ハ被上告人カ先塋陸下五步內ニ暗葬シタルコトヲ主張シ被上告人ハ此事實ヲ否認シタルモ庶人ノ墳墓界限ハ十步ヲ以テ最小限度トスルコトハ刑法大全ニ規定スル所ナレハ五步內ニ埋葬シタルモノニアラサルヤ否ヤハ必ス審査ヲ要スルニ原判決ニ何等ノ説明ナ

キハ理由不備ナリト云フニ在レトモ所有者カ其所有地内ニ埋葬スルニ當
リテハ固ヨリ墳墓界限ニ關スル步數ノ規定ヲ遵守スルヲ要スルモノニア
ラサルヲ以テ原審ニ於テ係爭山坂カ上告人ノ所有ニ屬セスシテ被上告人
ノ所有ニ屬スルコトヲ認定シタル以上ハ被上告人カ其所有地内ニ埋葬シ
タル墳墓ノ步數如何ハ之ヲ審査スルノ要ナキニ付本論旨モ其理由ナシ
以上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其理由ナキニ付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
三十三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ルモノナリ

隆熙三年九月二十一日

大審院民事部

裁判長 判事 中山勝之助

判事 洪祐哲

判事 咸台永

判事 牧山榮樹

判事 石川正

裁判長의命으로 懸註喜

繙譯官 高島五八



1909년 9월 27일 수원-인천

역문

판결

경성京城 미동美洞 제1동統 1호戶

항소인 김익준金益俊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남문南門 밖 성전동城前洞

항소인 신태희申泰熙

위 소송대리인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崔鎭

인천항仁川港 사정寺町 2정목丁目

피항소인 굴력태랑堀力太郎

소송대리인 대기웅지승大崎熊之丞

위 당사자 사이의 약정금 청구 항소 사건에 관해 당 공소원控訴院은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인은 연대하여 2,257원圓 13전錢을 1909년 4월 1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10분의 2의 이자<단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를 붙여서 피항소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외의 피항소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사실

피항소 대리인은 항소 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원인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항소인은 1907년 5월에 항소인* 김익준金益俊으로부터 강제 1호증 증서書票와 같이 그가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청호면淸湖面 오산동烏山洞 외 20개 동의 각 지주로부터 양도받아 소유하는 경부철도京釜鐵道 부지 피수용지의 토지 대금 액면가 5,554원 1전 5리의 채권을 대가 3,550원에 매입하였다. 그때 항소인 신태희申泰熙는 판매자의 보증인이 되어 김익준의 책임에 속하는 의무를 그와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는 제3의 채무자인 한국 탁지부度支部로부터 피항소인이 그 변제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만일의 손실을 우려하여 만약 탁지부가 피항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로 항소인 2인은 연대하여 양도 채권 금액 및 이자<곧 수용지 대금 금액>를 변제한다는 특약을 체결해 두었다.

그런데 탁지부는 1907년 9월에 해당 대금을 지급할 당시 위 양도를 승인하지 않고 직접 각 지주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본소本訴를 제기하여 채권 총액에서 일전에 우선 지급받은 1,292원 87전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1907년 9월 이후의 이자를 합쳐서 소송을 구하였는데, 원심에서 이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청구가 인정된 것은 타당하다. 강제1호증와 을1호증의 관계는 실로 항소인이 말하는 바와 같더라도, 이는 을1호증의 제5항 본문에 '채권 금액 5,554원 1전 5리'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대상금代償金 3,550원'이라 기재하였기에 피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개서

* 원문은 '被控訴人'으로 되어 있으나 '控訴人'의 오기로 판단하여 '항소인'으로 번역하였다.

改書하기 위해 갑1호증을 작성한 것이다. 두 증거의 문장에는 다소 자세하거나 거칠고 번거롭거나 간단한 차이는 있어도, 그 계약 취지에서는 앞뒤가 모두 동일하고, 피항소인의 주장 사실은 을1호증 제5항 본문 중의 대상금 금액을 채권 총액으로 바꾸어 읽어 내려간다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항소 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바란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항변은 다음과 같다. 항소인들이 피항소인에게 강제1호에 의해 경부철도 부지 피수용 대금 채권 5,554원 1전 5리를 매각하여 양도하고 또 연대 보증을 한 것은 전부 그 주장과 틀림없다. 하지만 해당 증거 제5항 약관은 피항소인이 말하는 바와 같지 않다. 즉 항소인들은 첫째, 단지 탁지부가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책임을 진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항소인에 대한 지급에 지장이 없을 것임을 담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탁지부가 각기 수용당한 지주에게 이를 교부한 이상에는 이른바 이는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므로 항소인들의 책임이 발생할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는 양도의 결과 탁지부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 지급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지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예상하지도 않은 바이다. 따라서 애초에 그 구제 수단에 생각이 미칠 이유가 없었고 제5항은 그러한 의사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 또한 둘째, "양도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는 지급에 장애가 있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1호증 제4항에서 제시하는 문권文券 기타 서류 절차 등의 결함·하자를 보정補正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 그친다. 따라서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본건 청구에 응할 까닭이 없다. 원래 본안 양도 계약에 관해서는 처음에 피항소인 측에서 을제1호증을 지참하여 해당 증거에 기재된 계약을 할 것을 신청하였지만, 항소인은 그 제5항 본문에 대해 이를 제기하고 재산상의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양도를 승낙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기에 이를 수용하여 부전附箋<강제1호증 제5항과 같음>과 같이 전적으로 문장을 수정해 취지를 고친 것이라고 하였다.

당사자 쌍방은 본건 쟁점을 갑1호증 제5항 계약 취지의 해석 여하로 제한하기로 협정하였다.

이유

을1호 제5항 본문이 그 부전 및 갑1호 제5항의 원안이었다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않는 바이다. 피항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원안에는 변상금의 액수를 오기하였기에 이를 개서할 때 다소 글자에 수정을 가하여 부전을 작성한 것이고 항소인이 채권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 취지는 전후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위 본문 가운데 항소인의 변상 책임액을 “대상금 금액 곧 3,500원”이라고 하는 명확한 문장은 그 뒤 단락의 이자에 관한 기사와 앞뒤가 서로 대응하고 문장의 조리가 일관되어 결코 오류가 있는 기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만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서의 취지가 단순히 오기를 정정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모름지기 그 목적에 따라 잘못된 곳을 바로잡는 데에 그쳐야 할 터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원안과 무관한 부분까지 수정·삭제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문구를 문장의 뜻이 어렵고 불분명한 부전으로 대신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이 거짓을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증인 김윤구金倫求는 “항소인은 원안 규정을 비난하고 책임을 경감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그 말을 받아들여 부전과 같이 협정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믿을 만하다. 따라서 원안과 부전이 각각 문구를 달리 함에 따라 계약 취지도 얼마간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항소인의 변명에 이르러서도 억지로 책임을 호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생각건대 본건 계약은 항소인이 탁지부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을 피항소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피항소인으로 하여금 탁지부로부터 해당 수용 대금을 수령하도록 할 것을 기약하는 것은 필연이고, 또 갑·을1호증은 위 채권 매매에 관한 쌍방의 권리·의무를 확정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를 매매 목적을 고려하고 1호증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5항의 이른바 “탁지부의 지급 장애[拘礙]라는 글자는 탁지부의 피항소인에 대한 지급에 관해 지장이 발생할 경우를 지칭한다고 해석해야 함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본다. 하물며 그 원안<을1호 본문>에는 “피항소인이 탁지부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항소인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어서 ‘지급 장애’가 피항소인 대 탁지부의 관계라는 뜻을 암시함에 있어서라.

그리고 당사자는 설령 위와 같이 피항소인에 대한 지급을 희망하고 또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대금을 지급할지의 여부는 전부 탁지부의 권한 내에 있기에 그 재량에 따라 혹은 이것이 거절될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위험의 발생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고 지식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항소인 및 피항소인이 전혀 이에 대한 예견이 결여되고 이에 대한 구체 조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5항 중에도 “만일 지급 운운”이라고 기재하여 충분히 예견한 것이라는 의미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항소인은 부전의 계약은 원안과 취지를 달리 하여 판매자에게 서류 기타의 보정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금전상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증인 김윤구의 이 첨에 관한 진술은 신용하기 어렵고, 문장의 조리에서 논하건대 위 제5항에는 이와 같은 서류 등의 보정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탁지부의 피항소인에 대한 지급에의 장애는 항소인의 책임으로 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의미는 광범위하여 지장[拘礙]의 종류 및 책임의 범위에 이르러서는 조금도 제한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지장에 따라서는 단지 서류를 보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혹은 그 성질·종류에 따라 단지 해당 보정뿐만 아니라 추후 금전상의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모두 극단으로 치우쳐져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당 공소원은 각 갑·을호증을 대조하고 변론의 모든 취지를 참작하여 계쟁[係爭] 약관의 진의[眞意] 여하를 살펴보건대, 위 제5항이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담보 의무에 관해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은 해당 증거 전문을 읽어 내려가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처음에 피항소인이 을1호 제5항 본문을 기초[起草]하고 항소인의 부주의로 인

해 결국 부전의 조항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때문에 항소인이 전혀 재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문구가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반드시 절차의 보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추탈^{**} 및 하자의 담보 책임을 지고 매각한 권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을 때나 그 외의 경우에 관하여 대금 반환 또는 손해 배상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리상 당연한 사항이다. 그 원안에는 이러한 취지로 항소인이 부담할 금액 등 엄중한 규정을 마련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안의 작성에 따라 조리에서 기정 판매자의 해당 책임을 특별히 면제했다라도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명쾌한 원안을 버리고 난해한 확정안<부전>을 취했는가. 생각건대 위 원안에는 1907년도에 탁지부가 수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곧바로 항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변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있었고, 또 지급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항소인에게 금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과 같이 가혹한 약관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 대금의 지급 청구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권·서류 등의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보정 의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는 바가 없었다. 따라서 삭제해야 할 전자는 삭제하고 더해야 할 후자는 이를 보충하였다. 또한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는 반드시 금전상의 변상을 요하지 않고 설령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에 이르거나 혹은 그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등 계약 취지가 대단히 번거롭고 까다로웠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일정 금액을 게재하는 것을 피하고 간소한 문장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연 그렇다면 쌍방에 다툼이 없는 것처럼 탁지부가 항소인 및 피항소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 대금을 원 권리자인 지주에게 지급한 이상, 이른바 탁지부로부터 피항소인에 대한 지급에 장애가 있는 중요한 경우이므로 항소인은 제5항 약관을 이행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

** 추탈 담보는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에 파는 사람이 지는 담보 책임을 가리킨다.

지만 그 배상 금액이 피항소인의 말처럼 채권 전부 및 1907년 이후의 이자가 아니라는 것은, 위 을1호 본문 가운데 항소인의 책임 한도를 대상금 3,550원<해당 증거에는 '3,5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제3항과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3,550원'의 오기라 인정됨>이라고 한 것을 항소인의 이익을 위해 확정안에서 수정하였다는 점과, 앞에서 제시한 김윤구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따라서 확정안에서 항소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늘릴 이유가 없고 그 부담은 많아도 원안의 3,55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구매자가 매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 대금의 최고 금액을 변상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해당 금액에서 피항소인이 이미 수취를 완료한 1,292원 87전을 공제한 잔금과 항소인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의무 이행을 요구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기록 9번째 장에 의해 이를 인정함>로부터 기산한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이유에 따라 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 제33조, 민사소송비용규칙^{民事 소송費用規則} 제1조에 의거하여 주문의 판결을 내린다.

1909년 9월 27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재판장 판사 산구정창^{山口貞昌}
 판사 신재영^{申載永}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1909년 9월 27일
 재판소 서기 흑암각일^{黑岩覺一}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경성공소원 번역관 촌상유길^{村上唯吉}

위는 등본임.
1909년 10월 11일
경성공소원
재판소 서기 이선경李善暻

원문

判決

京城 美洞 第一統 一戶
控訴人 金益俊

京畿道 水原郡 南門外 城前洞
控訴人 申泰熙
右訴訟代理人 高橋章之助
全 辯護士 崔鎭

仁川港 寺町 二丁目
被控訴人 堀力太郎
訴訟代理人 大崎熊之丞

右當事者間ノ約定金請求控訴事件ニ付當院ハ判決スルコト如左

主文

原判決ヲ取消ス

控訴人ハ連帶シテ金二千二百五十七圓十三錢ニ隆熙三年四月一日ヨリ判決執行濟ニ至ルマテ年十分ノ二ノ利息<但シ元本ヲ超過セサル限度>ヲ附シ被控訴人ニ支拂フヘシ

此餘ノ被控訴人請求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當事者ノ各自辨トス

事實

被控訴代理人ハ控訴棄却ノ判決ヲ求メ其原因事實トシテ被控訴人ハ光武十一年五月中被控訴人^{***}金益俊ヨリ甲第一號書票ノ如ク同人カ京畿道水原郡晴湖面烏山洞外二十ヶ洞ノ各地主ニ讓受ケ所有スル京釜鐵道敷地被收用地ノ土地代金額面五千五百五十四圓一錢五釐ノ債權ヲ代價三千五百五十圓ニ買得シ其際控訴人申泰熙ハ賣主ノ保證人トナリ金益俊ノ責任ニ屬スル義務ハ之ト連帶シテ負擔スル旨ヲ契約セリ而シテ當事者ハ第三債務者韓國度支部ヨリ被控訴人ニ於テ其辨濟ヲ得ルコトヲ豫期シタリト雖ヘトモ猶滿一ノ失ヲ虞レ若シ度支部カ被控訴人ニ支拂ヲナササル場合ニハ因テ生ス可キ損害填補ノ趣旨ヲ以テ控訴人兩名ハ連帶シテ讓渡債權ノ金額ト利子ト<即チ收用地代金額>ヲ辨濟スル特約ヲ締結シ置キタルニ度支部ハ光武十一年九月該代金ノ支拂ヲナスニ當リ右讓渡ヲ承認セス直接各地主ニ對出給シタルカ故ニ茲ニ本訴ヲ提起シ債權總額ヨリ先ニ內拂ヲ受ケタル千二百九十二圓八十七錢ヲ控除シ其殘額ニ光武十一年九月以降ノ利子ヲ并セ訴求シタル處原審ニ於テ利子ノ一部ヲ除キ此餘ノ請求ヲ認容セラレタルハ相當ナリ甲第一號證乙一號證ノ干係ハ洵ニ控訴人云フカ如シト雖ヘトモ這ハ乙一號證第五項本文ニ債權金額五千五百五十四圓一錢五釐トナスヘキヲ誤テ代價金三千五百五十圓ト記載シタルヲ以テ被控訴人ノ申立ニヨリ之ヲ改書センカ爲メ甲一號證ヲ作成シタルモノニシテ兩證ノ文章ニハ多少精粗繁簡ノ差アルモ其約旨ニ至テハ前後全ク同一ニシテ被控訴人ノ主張事實ハ乙一號證第五項本文中代價金ノ金額ヲ債權總額ニ改メ讀下セハ明瞭ニ會得ス可シト陳述シ控訴代理人ハ原判決ヲ取消シ被控訴人ノ請求ヲ棄却ストノ判決アリタシト申立其抗辯ハ控訴人等ニ於テ被控訴人ニ對シ甲第一號ニヨリ京釜鐵道敷地被收用代金ノ債權五千五百五十四圓一錢五釐ヲ賣却讓渡シ且ツ連帶

*** 문맥상 '控訴人'의 오기로 보인다.

保證ヲナシタルコト一ニ其主張ニ相違ナシ然レトモ該證第五項ノ約款ハ被控訴人ノ云フカ如クニアラスシテ控訴人等ハ<一>唯度支部カ該代金ノ支拂ヲナスヤ否ニ關シ責ヲ負ヒタルニ過キス必シモ被控訴人ニ對スル支拂ニ故障ナキコトヲ擔保セルモノニアラス從テ同部カ各被收用地主ニ之ヲ交付シタル以上ハ所謂是レ支拂ニ拘碍ナキ場合ナルヲ以テ控訴人等責任發生ノ原因存在セス且ツ當事者ハ讓渡ノ結果度支部ハ當然讓受人ニ其支拂ヲナスモノト豫期シ地主ニ出給セララルル如キ不祥ノ出來事ハ豫想タニセサリシ所ナルモ故ニ素ヨリ其救濟手段ニ想到スルノ理ナク第五項ハ斯ル意思ニテ契約シタルモノニアラス又<二>「讓渡者其責任ヲ以テ負擔ス」トノ趣旨ハ支拂ノ拘碍ニヨリ生スル財産上ノ損害ヲ賠償スルノ謂ヒニアラス甲第一號證第四項ニ示ス文券其他書類手續等ノ欠缺瑕瑾ヲ補正スル義務ヲ負擔スル意ニ止マルヲ以テ控訴人ハ被控訴人ノ本件請求ニ應スヘキ筋合ナシ元來本案ノ讓渡契約ニ就テハ最初被控訴人方ヨリ乙第一號證ヲ持參シ該證所載ノ契約ヲナサンコトノ申込アリタルモ控訴人ハ其第五項本文ニ對シ異議ヲ唱ヘ財産上ノ擔保責任ヲ負擔セサル可カラサルニ於テハ讓渡ヲ承諾セスト主張シタル爲メ之ヲ容レ附籤<甲第一號第五項ト同シ>ノ如ク全ク文章ヲ修正シ趣旨ヲ更メタルモノナリト云フニアリ

當事者雙方ハ本件ノ爭點ヲ甲第一號證第五項約旨ノ解釋如何ニ制限協定シタリ

理由

乙一號第五項本文カ其附籤及甲一號第五項ノ原案タリシコトハ當事者雙方ノ爭ナキ所ナリ被控訴人ノ主張ニヨレハ右原案ニハ辨償金ノ數額ヲ誤記シタル爲メ此レカ改書ニ際シ多少文字ニ修訂ヲ加ヘ附籤ヲ作成セルモノニシテ控訴人カ債權額全部ヲ賠償スヘキ約旨ハ前後同一ナリト云フニアレトモ斯ル主張ヲ認メ得ヘキ何等ノ證蹟存セサルノミナラス前記本文中控訴人ノ辨償責任額ヲ「代償金ノ金額即チ金三千五百圓」ナリトスル明文ハ其後段利息ニ關スル記事ト前後照應文理一貫決シテ誤謬ノ記載ニ

係ルモノト認メ難シ若シ所說ノ如ク改書ノ趣旨ニシテ單ニ誤記訂正ノミニアリトセハ宜カラク其目的ニ遵ヒ誤謬ノ箇所ヲ正スニ止ムヘキ筈ナリ何カ故ニ乎原案ノ無干係ナル部分迄ヲ修削シ明確精細ノ文詞ニ代ユルニ文義晦澁ナル附籤ヲ以テセルヤ之ヲ解スルニ由ナク其誣妄知ルヘキノミ加之證人金倫求ハ控訴人カ原案規程ヲ難シ責任ノ輕減ヲ求メタルニヨリ其言ヲ容レ附籤ノ協定ヲ見タルノ旨ヲ證言シ措信ノ得ヘキヲ以テ原案附籤各文詞ヲ異ニスルニ伴ヒ契約趣旨モ幾許ノ扞格ヲ生セルコト炳然タリト云フヘシ然レトモ是ニ對スル控訴人ノ辨明ニ至テモ強テ責任ヲ糊塗セントスルノ嫌アリ輒ク認容スルコト能ハス蓋シ本件ノ契約ハ控訴人カ度支部ニ對シ有スル債權ヲ被控訴人ヘ讓渡セルモノナレハ當事者ハ被控訴人ヲシテ度支部ヨリ該收用代金ヲ受領セシメント期約セルヤ必然ニシテ又甲乙一號證ハ右債權ノ賣買ニ關スル雙方ノ權利義務ヲ確定スルノ趣旨ナルカ故ニ此ヲ賣買ノ目的ニ攷ヘ一號證ノ全趣旨ニ照シ其第五項ニ所謂度支部ノ支拂拘礙ナル文字ハ同部カ被控訴人ニ對スル支拂ニ付故障ヲ生シタル場合ヲ指稱スト解スヘキ事一點ノ疑ナシトス況ヤ之カ原案<乙一號本文>ニハ「被控訴人カ度支部ヨリ支撥ヲ受クル迄ノ期間控訴人ハ利子ヲ出給スヘキ旨」ヲ掲ケテ支拂拘礙カ被控訴人對度支部干係ナルコトノ意ヲ暗示セルニ於テオヤ然リ而シテ當事者ハ設令右ノ如ク被控訴人ニ對スル支拂ヲ希望シ且ツ豫期セルモノトスルモ地代金支拂ノ爲不爲ハ擧ケテ度支部ノ權内ニ存スル所ナルカ故ニ其裁量ニ依リテハ或ハ此ヲ拒絕セラルル虞ナシトセスシテ此ノ如キ危險ノ發生ハ何人モ之ヲ豫想シ得ヘク知者ヲ俟テ后ニ知ルヘキ事項ニアラサルカ故ニ控訴人并被控訴人カ全然其豫見ヲ缺キ是ニ對スル救濟ノ處置ヲ念頭ニ上セサリシモノト認ムルヲ得ス之ヲ以テ第五項中ニモ「萬一支拂云云」ト掲ケテ十分豫見アルコトノ意味ヲ表明シタリ次ニ控訴人ハ附籤ノ契約ハ原案ト趣旨ヲ異ニシ賣主ニ對シ書類其他ノ補正責任ヲ負擔セシムルニ止マリ金錢上ノ賠償義務アルコトヲ定メタルモノニアラスト抗辯スレトモ證人金倫求カ此點ニ關スル供述ハ信用シ難ク文理上ヨリ論スルニ右第五項ニハ此ノ如キ書類等ノ補正ニ限ルノ文詞ナク却テ度支部カ被控訴人ニ對スル支拂ノ拘礙ハ控訴人

責任ヲ以テ之ヲ負擔トスアリ其意廣汎ニシテ故障ノ種類責任ノ範圍ニ至リテハ毫モ制限セラルル所ナキモノトス從テ故障ニヨリテハ單ニ書類ノ補正ヲ以テ足ルモノナルヘク或ハ又其ノ性質種類ニ應シテ當ニ該補正ノミナラス追テ金錢上ノ賠償ヲナスニアラスンハ所謂責任之ヲ負擔シタルモノトナシ難キ場合アリト云ハサルヘカラス敍上ノ如ク當事者雙方ノ主張ハ何レモ極端ニ走セテ採ルヲ得サルモノカ故ニ當院ハ甲乙各號證ヲ對照シ辯論ノ全趣旨ヲ參的シ以テ係争約款ノ眞意義如何ヲ審案スルニ右第五項カ買主ニ對スル賣主ノ擔保義務ニ就キ其範圍ヲ定メントスルニアルコトハ該證全文ヲ讀下シ更ニ疑ヲ容ルルノ餘地ナキモノト認ム而シテ最初被控訴人乙一號第五項本文ヲ起草シ控訴人ノ不用意ニヨリ遂ニ附籤ノ條項ヲ約スルニ至リタルモ之カ爲メ控訴人カ全然財産上ノ責任ヲ負擔セサルノ意ニアラサルコトハ既ニ説明セルカ如ク文字汎博必シモ手續ノ補正ニ限ラサルト賣買契約ニ於テ賣主カ追奪及瑕疵ノ擔保責任ヲ負擔シ賣却セル權利ヲ自己ニ屬セサルトキ其他ノ場合ニ就キ代金返還又ハ損害賠償ノ義務アルコトハ當事者間ノ特約ヲ俟タス法理上當然ノ事項ニシテ其原案ニハ此趣旨ヲ以テ控訴人ノ負擔スヘキ金額等嚴重ノ規定ヲ設ケタル形跡アルニ拘ラス確定案ノ製作ニ依リ條理ニ於テ既定ナル賣主ノ該責任ヲ特ニ免除シタリトスルモ事情ノ存セサルニ徴シテ之ヲ認定シ得ヘシ然ラハ何故ニ明快ナル原案ヲ捨テ難解ノ確定案〈附籤〉ヲ採リタル乎唯フニ右原案ニハ光武十一年度二度支部カ收用代金ノ支拂ヲナササルトキハ直ニ控訴人ヲシテ金圓ノ辨償ヲナサシムヘキコト及一定ノ利息ヲ出給セシムヘキ事項存シ又支拂故障ノ種類ヲ問ハス渾テ控訴人ニ金錢賠償ノ責任アルカ如キ苛酷ノ約款アリ一面ニハ收用代金ノ支拂請求ニ要用ナリトセラルル文券書類等ノ瑕疵ニ對スル賣主ノ補正義務ニ關シ片言ノ及フ所ナカリシヲ以テ其削ルヘキ前者ハ之ヲ除キ加フヘキ后者ハ此ヲ補ヒ且ツ拘礙ノ種類ニヨリテハ必スシモ金錢上ノ辨償ノ要ナク又設令賠償スヘキモノトスルモ場合ニヨツテハ金額ニ達スルコトアリ或ハ其一部ニ止マルコトアリ約旨頗ル繁褥ニ亘ルカ故ニ原案ノ如キ一定ノ金額ヲ掲ケルコトヲ避ケ簡朴ナル文章トナシタルモノト解スルヲ允當トス果シテ然ラハ雙

方ニ争ヒナキカ如ク度支部カ控訴人及被控訴人ノ權利ヲ認メス收用代金ヲ原權利者タル地土ニ出給セル以上所謂度支部ヨリ被控訴人ニ對スル支拂ニ拘礙アル重要ノ場合ナルカ故ニ控訴人ハ第五項約款ノ履行ヲナスヘキ責任發生セルモノト云フヘシ然レトモ其賠償金額ハ被控訴人ノ云フカ如ク債權全部及光武十一年以後ノ利息ニアラサルハ右乙一號本文中控訴人ノ責任限度ヲ代償金三千五百五十圓〈該證ニハ三千五百圓トアレトモ其第三項ト當事者主張ニヨリ三千五百五十圓ノ誤記ト認ム〉トナセルヲ控訴人利益ノ爲メ確定案ニ修正セラレタルコト前掲出金倫求ノ證言ニ徴シ明カナレハ確定案カ控訴人ノ支拂フヘキ金額ヲ増加スルノ理ナク其負擔ハ多クナレトモ原案ノ三千五百五十圓ヲ超過セサルモノトスルヲ當レリトス仍テ本件ノ如ク買主カ賣買ノ目的ヲ達セサル場合ハ賣買代金タル最高額ヲ辨償スルノ趣旨ナリト解シ該金ヨリ被控訴人カ既ニ受取濟ナル千二百九十二圓八十七錢ヲ控除シタル殘金并控訴人ニ對シ契約ヲ解除シ其義務履行ヲ要求セル訴狀送達ノ翌日〈記錄九丁ニヨリ之ヲ認ム〉ヨリ起算スル法定ノ利息ヲ支拂フヘキモノトス

右理由ニヨリ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ニ則リ正文ノ判決ヲナス

隆熙三年九月二十七日

京城控訴院民事部

裁判長 判事 山口貞昌

判事 申載永

判事 水野正之丞

隆熙三年九月二十七日

裁判所書記 黑岩覺一

裁判長의命으로 卹懸註喜

京城控訴院繙譯官 村上唯吉

右膳本也
隆熙三年十月十一日
京城控訴院
裁判所書記 李善暻



1909년 10월 23일 수원-통진

역문

융희3년 민제60호

결석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신평동新豊洞

원고 송건호宋建浩

위 소송 대리인 김정목金正穆

위 복대리인復代理人 정우흥鄭雨興

경기도京畿道 통진군通津郡 마근동麻近洞

피고 이학천李學天

위 당사자 사이의 어선 등 인도 청구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쌀 300석石, 짐배 1척 및 부속품인 지루표持縷瓢 2개, 장죽櫓竹 2개, 뜸[草蓆] 4개, 깃발 1개, 돛 만드는 돛자리[風席] 1개를 인도해야 한다. 만일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 200원을 변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원고 대리인은 주문과 같이 판결을 구한다고 신청하였으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선박 및 부속품을 1908년 12월 12일에 소외張漢相으로부터 대금 40원圓에 매입하고 문권文券 1장 및 피고가 그에게 제출한 상태였던 임치표任置票 1장을 수령하였다. 그 후 누차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그와 거래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에 응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며, 갑제1·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장한상의 증언을 원용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호출을 받았으나 심문 기일인 1909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당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았다.

살피보건대, 원고의 주장 사실은 갑제1·2호증의 기재 내용 및 증인 장한상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그 청구는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판사 대곡신부大谷信夫

판사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하서직길河西直吉

1909년 10월 23일 선고

통감부統監府 재판소 서기 김창근金彰根

원문

隆熙三年民第六〇號

闕席判決

京畿道 水原郡 新豊洞

原告 宋建浩

右訴訟代理人 金正穆

右復代理人 鄭雨興

全道 通津郡 麻近洞

被告 李學天

右當事者間漁船等引渡請求事件ニ付審理判決スル如左

主文

被告ハ原告ニ對シ米三百石積船一艘及附屬品タル持縷瓢二個櫓竹二個草菴四介旗一介風席一介ヲ引渡スヘシ若シ引渡スコト能ハサル時ハ時價金貳百圓ヲ辨濟ス可シ
訴訟費用ハ被告ノ負擔トス

事實及理由

原告代理人ハ主文ノ如キ判決ヲ求ムト申立テ其事實トシテ原告ハ右船并附屬品ヲ隆熙二年十二月十二日訴外張漢相ヨリ代金四十圓ニ買受ケ文券一張并被告ヨリ全人ニ差入レアリタル任置票一張ヲ受領シ其後屢次引渡ヲ求メタルモ全人ト取引アリ等ノ事由ヲ以テ請求ニ應セサルニ付訴シタル次第ナリト供述シ甲第一二號證ヲ提出シ證人張漢相ノ證言ヲ援用シタリ被告ハ適式ノ呼出ヲ受ケナカラ審問期日タル隆熙三年十月二十三日午前十時當所ニ出頭セス

按スルニ原告主張ノ事實ハ甲第一二號證ノ記載及證人張漢相ノ證言ニ徴シ之ヲ認ムルニ足り且ツ其請求ハ適當ナルモノト認メ尙訴訟費用ニ付テハ民事訴訟費用規則第一條ヲ適用シ主文ノ如ク判決ス

仁川區裁判所

判事 大谷信夫

判事命으로며懸註
繙譯官補 河西直吉

隆熙三年十月二十三日 言渡
統監府裁判所書記 金彰根

203



가옥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1909년 12월 3일 한성-수원

역문

명치42년 민공제45호

판결서

한성漢城 중부中部 수동壽洞 1통統 7호戶

항소인 김태진金泰鎭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장도張燾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성은행漢城銀行<수원水原 지점>

위 대표자 이운용李允用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강전영岡田榮

위 당사자 사이의 가옥[家舍] 대금代金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항소에 대하여 당원은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본건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항소 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가옥 대금 680원에 대하여 1908년 4월 23일부터 본 판결 집행 완료에 이르기까지 100원당 일변日邊 4전錢 5리厘씩 피항소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그 청구 원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항소인은 1908년 4월경에 소외인訴外人 이중한李鍾漢의 요청으로 경기도京畿道 진위군振威郡 병과면丙坡面 평택역平澤驛에 소재한 최응규崔應奎 명의의 가옥을 680원에 피항소인에게서 매입하였는데, 먼저 60원을 지급하고 가옥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증명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대금반환 및 이에 대한 은행 소정의 이자를 청구한다는 약속을 체결한 뒤, 잔금 620원을 피항소인의 지점인 한성은행漢城銀行에 교부하였다. 하지만 증명권의 교부를 누차 청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아 대금반환 등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원심이 본건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입증 방법으로 갑제1호~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 증인 김계희金繼禧의 증언을 인용하였다.

피항소 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며, 그 사실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항소인은 본건 가옥을 소유자인 최응규로부터 담보말야 금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전당집행규칙典當執行規則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1908년 4월 6일에 168원에 해당 가옥은 소외인 이중한李鍾漢에게 낙찰되어, 대금을 수령 받고 증명까지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입증 방법으로 을제1호~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하여 살펴보면, 항소인은 본건 가옥을 매입함에 있어 가옥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증명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대금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 김계희의 증언은 믿을 만한 점이 없기에 채용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 가옥의 낙찰인은 이중한李鍾漢이고 피항소인이 아닌 사실은 을제2호증 및 을제3호증의 2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피항소인에게 증명 수속 이행을 약속한 자도 또한 이중한이라는 사실은 갑제3호증에 의해 명백하다. 갑제2호증에 항소인 명의의 기재가 있는 것

은, 항소인이 위 이중한의 대리로서 해당 금액을 교부 때문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인 명의의 기재가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항소인은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증빙이 없으므로 해당 증명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인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합당한 조치임을 인정한다.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여 본건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12월 3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 제1부

재판장 통감부 판사 삼택장책三宅長策

통감부 판사 함대영咸台永

통감부 판사 산구정창山口貞昌

1909년 12월 3일 판결 선고

경성공소원 민사 제1부

통감부 재판소 서기 중촌순中村順

위는 등본임.

1909년 12월 26일

경성공소원

서기 김익희金翼熙

원문

明治四十二年民控第四五號

判決書

漢城 中部 壽洞 一統 七戶

控訴人 金泰鎮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張燾

京畿道 水原郡

被控訴人 株式會社漢城銀行〈水原支店〉

右代表者 李允用

右訴訟代理人 辯護士 岡田榮

右當事者間の 家舍代金返還請求事件에 關한 控訴에 對하야 當院에서 審理判決함이 左와 如함

主文

本件控訴는 此를 棄却함

控訴費用은 控訴人의 負擔으로 함

事實及理由

控訴代理人은 原判決은 取消하고 被控訴人은 控訴人에 對하야 家舍代金 六百八十圓에 隆熙二年 四月二十三日로부터 本判決執行濟에 至하기까지 每百圓에 對하야 日步四錢五厘의 通하야 被控訴人의 負擔으로 하는 判決을 求하되 其請求의 原因된 事實은 控訴人은 隆熙二年 四月頃에 訴外人 李鍾漢의 要請에 因하야 京畿道 振威郡 丙坡面 平澤驛 所在 崔應奎名義의 家舍를 代金六百八十圓에 被控訴人으로부터 買入하얏는되 先히 六十圓을 出給하고 家舍 所有權移轉의 證明券을 交付치 아니면 代金返還及此에 對하야 銀行所定의 利息을 請求함이 可하는 約束을 締結하 後 殘金 六百二十圓을 被控訴人의 支店되는 漢城銀行에 交付하고 證明券의 交付를 屢次請求하야도 應치 아니하기로 代金 返還等 督促의 結果出訴함에 及하얏는되 原審이 本件請求을 棄却함은 不當이라 演述하고 立證方法으로 甲第一號 乃至 第四號證을 提出하고 且原審證人 金繼禧의 證言을 引用함

被控訴代理人은 主文과 如하 判決을 求하대 被控訴人은 本件 家舍를 所有者 崔應奎가 典執하요 金員을 貸與하바 借用人이 辨濟치 아니하기로 典當執行規則에 係하야 競賣申請의 結果로 隆熙二年 四月六日에 代金 六百八十圓에 訴外人 李鍾漢에게 競落하야 代金을 受領後證明을 完了한 者인즉 此에 對하야 控訴人과는 何等 干係가 無하으므로 請求에 應할 理由가 無하디 陳述하고 立證方法으로 乙第一號 乃至 第三號證을 提出함 依하야 審按함에 控訴人은 本件 家舍를 買入함에 當하야 家舍 所有權移轉 證明券을 交付치 아니하면 代金返還을 請求함이 可하는 約束이 有하얏다 主張하나 然而 證人金繼禧의 證言은 可信할 點이 無하야 採用키 難하바 本件 家舍 競落人은 李鍾漢이고 控訴人이 아닌 事는 乙第二號證 及 同第三號證의 二에 徵하야 明白하며 被控訴人에 對하야 證明手續履행을 約束한 者도 亦是 李鍾漢인 事는 甲第三號證에 依하야 明白하고 甲第二號證에 控訴人 名義의 記載가 有함은 控訴人이 右 李鍾漢의 代로 該金額의 交付를 因하야 作成한 者이 됨으로써 控訴人 名義의 記載가 有함에 不外한 者이라 然則 控訴人은 本件 家舍의 所有權을 取得한 證憑이 無하으므로 該證明券의 交付를 請求함은 不能의 事이라 謂함이 可하고 從하야 證明書를 交付치 아니하는 境遇에 代金返還을 請求할 마하 權利가 有하認키 不可한 즉 控訴人의 本件請求를 排斥한 原審判決은 相當한 措置라 認함 以上 說明하 바에 依하야 本件 控所는 其理由가 無하으므로 主文과 如하 判決함

明治四十二年十二月三日

京城控訴院民事第一部

裁判長統監府判事 三宅長策

統監府判事 咸台永

統監府判事 山口貞昌

明治四十二年十二月三日 判決宣告

京城控訴院民事第一部

統監府裁判所書記 中村順

右臚本也

明治四十二年十二月二十六日

京城控訴院

書記 金翼熙



취하금取下金 계산 잔금 청구에 관한 건

204



1910년 1월 26일 수원-인천

역문

판결

경기도京畿道 수원부水原府 성내城內 평민 공사 도급업

항소인 봉강장작峯岡長作

소송 대리인 석총가일石塚嘉弼

경기도京畿道 인천항仁川港 민정濱町 3정목丁目

당시 하관시下關市 동남부정東南部町 평민 재목상

피항소인 추진인지보秋田寅之輔

소송 대리인 변호사 진시본환辰市本丸

위 당사자 사이의 명치42년 민공제95호 취하금取下金 계산 잔금 청구 항소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항소 대리인의 일정한 신청은 원판결을 폐기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계 406원圓 62錢에 대하여 1908년 6월 14일부터 판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6分의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는 것이다. 피항소 대리인은 주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판을 구하였다.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은 쌍방 모두 원판결의 적시와 동일하기에 이를 인용한다. 항소 대리인은 갑1~5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편촌심구랑片村甚九郎·수영기길守永磯吉의 진술을 원용하였다. 피항소인은 을제1·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하전정차랑河田貞次郎·도변육태랑渡邊六太郎·전변도지보田邊嶋之輔의 증언 및 갑제2호증을 원용하였다.

이유

본건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이자를 붙이겠다는 추가 계약이 성립했는가, 또 그 거래는 결산이 완료되었는가의 여부에 있다.

살펴보건대, 1908년 9월에 피항소인이 계산한 잔금 84원 62전을 지급한 것은 항소인이 인정하는 바이다. 또한 갑제2호증에 의하면 피항소인이 그해 6월 7일에 제1항의 감정 당시에 이미 이자를 요구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증인 하전정차랑河田貞次郎·전변도지보田邊嶋之輔의 “항소인은 1908년 3월 말일을 기한으로 변제할 목재 대금 1,000원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계쟁係爭 채권을 피항소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목재 대금에 는 매입 당시부터 일변日邊 7전을 붙이고 체당금替當金 외 현금에 대해서는 월 3分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를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에 그의 요청에 따라 이율을 줄이고 총 거래에 관하여 청산을 마친 결과, 피항소인이 84원 62전을 반환하여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 <2인의 진술을 종합함>을 참작하여, 쟁점은 피항소인의 항변과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 증인은 일찍이 피항소인에게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 관계에 있는 자일지라도 그 말이 정확하여 당 공소원控訴院은 이를 신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항소인은 증인 수영기길守永磯吉 및 갑제5호증을 원용하여 이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아직 전술한 인정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 갑제1호증 이하 및 편촌심구랑片村甚九郎의 증언은 쟁점에

적절하지 않다.

이상의 이유에 의해 항소는 부당하다고 보고, 바로 주문의 판결을 내린다.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 제1부
재판장 통감부統監府 판사 삼택장책三宅長策
통감부 판사 산구정창山口貞昌
통감부 판사 하촌상덕河村尙德

위는 등본임.

1910년 1월 26일

경성공소원

통감부 재판소 서기 이흥수李興洙

원문
判決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京畿道 水原府 城內 平民 工事受負業
控訴人 峯岡長作
訴訟代理人 石塚嘉弼

同道 仁川港 濱町 三丁目
當時 下關市 東南部町 平民 材木商
被控訴人 秋田寅之輔
訴訟代理人 辯護士 辰市本丸

右當事者間ノ明治四十二年民控第九十五號取下金計算殘金請求控訴事件
ニ付判決スル如左

主文

本件控訴ヲ棄却ス
控訴訴訟費用ハ控訴人ノ負擔トス

事實

控訴代理人一定ノ申立ハ原判決ヲ廢棄ス被控訴人ハ控訴人ニ對シ金四百六圓六十二錢ニ明治四十一年六月十四日ヨリ判決執行濟ニ至ル迄年六分ノ利息ヲ附シテ支拂フベシトノ判決アリタシト云フニアリ被控訴代理人ハ主文記載ノ如キ裁判ヲ求メタリ當事者事實上ノ供述ハ雙方共原判決摘示ト同一ナルヲ以テ茲ニ之ヲ引用ス

控訴代理人ハ甲一號證乃至第五號證ヲ提出シ證人片村甚九郎守永磯吉ノ供述ヲ援用シ被控訴人ハ乙第一二號證ヲ提出シ證人河田貞次郎渡邊六太郎田邊鳴之輔ノ證言及甲第二號證ヲ援用シタリ

理由

本件ノ爭點ハ當事者間ニ利息ヲ附スヘキ追加契約成立シタルヤ及其取引ハ決算濟ナリヤ否ニアリ按スルニ明治四十一年九月中被控訴人ヨリ計算殘金八十四圓六十二錢ノ支拂ヲナシタルコトハ控訴人ノ認ムル所ニシテ又甲第二號證ニヨレバ被控訴人カ同年六月七日第一項勘定ノ際既ニ利息ヲ要求シタルコト明白ナルヲ以テ之ヲ證人河田貞次郎田邊鳴之輔ガ「控訴人ハ明治四十一年三月末日限辨濟スヘキ材木代金千圓ノ支拂ヲナス能ハサリシガ爲メ係爭ノ債權ヲ被控訴人ヘ讓渡シ且ツ木材代金ニハ買入當時ヨリ日歩七錢ヲ附シ立替金其他ノ現金ニ對シテハ月三分ノ利息ヲ支拂フヘキ旨ヲ約諾シタルモ同年九月其請ヒニヨリ利子ノ歩合ヲ減シ總取引ニ就キ清算ヲ遂ケ結果被控訴人ヨリ八十四圓六十二錢ヲ返還シテ一切事濟トナセル趣旨」ノ證言ク兩人ノ供述ヲ綜合スニ參酌シ爭點ハ被控訴人ノ抗辯ノ如ク認定スルヲ相當トス右證人ハ會前被控訴人ニ雇ハレタルモノ若クハ現ニ雇傭干係アル者ナリト雖モ其言確ニシテ當院ハ之ヲ信據スルニ足ルモノト認メタリ控訴人ハ證人守永磯吉及甲第五號證ヲ援キ利

息契約ノ不存在ヲ證明セントスルモ是等ハ未タ以テ前記認定ヲ覆スニ足ラズ甲第一號證以下并片村甚九郎ノ證言ハ爭點ニ適切ナラズ以上ノ理由ニヨリ控訴ハ失當ナリトシ乃チ主文ノ判決ヲナシタリ

京城控訴院民事第一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三宅長策
統監府判事 山口貞昌
統監府判事 河村尙德

右謄本也
明治四十三年一月二十六日
京城控訴院
統監府裁判所書記 李興洙



번역(가나다순)

이승일(李昇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 한국의 재판과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근·현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및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중(李命鍾)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병무(田炳武)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백경(金白曠)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한국법제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식민지기 민사소송법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기 획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교 정 이재운(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수원학자료총서 6

한말 수원 민사판결문 II 1908~1910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T. 031-220-8058 H. <http://www.suwon.re.kr>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발간등록번호 11-B552980-000010-01

ISBN 979-11-90343-96-1 94910

ISBN 979-11-90343-95-4 세트

